

헤이그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국제출원 길라잡이

2023. 10.



헤이그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국제출원 길라잡이

2023. 10.





1. 이 가이드는 국제출원서 및 국제등록과 관련된 각종 변경 신청서의 제출과 이에 관한 국제사무국의 방식심사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가이드 주요 내용은 헤이그 협정 및 공통규칙과 WIPO에서 발간한 「헤이그 사용자 가이드」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제사무국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3. 이 가이드에서 사용한 약어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G.A.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
 - C.R. → 헤이그협정의 공통규칙
 - A.I. → 헤이그협정에 따른 출원을 위한 시행세칙
 - 수수료표 → 헤이그협정의 공통규칙의 수수료표
 - 법 → 디자인보호법
 - 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 규칙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징수규칙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I.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 / 1

1.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 소개 3
2. 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 국제출원 7
3.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의 장단점 9

II.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국제절차) / 11

1. 헤이그 국제출원의 개요 13
2.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간접출원) 21
3. 국제사무국을 통한 국제출원(직접출원) 27
4. 국제출원서(DM/1) 작성 방법 29
5. 디자인의 도면 및 견본 51
6. 국제사무국 방식심사 및 하자통지 55
7. 국제등록 및 국제등록의 공개 58
8.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 63
9.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국제등록의 변경신청) 67
10. 국제등록의 갱신 74

III.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국내절차, 지정관청) / 79

1. 국제등록의 효과 81
2. 거절 통지(Notification of Refusal) 84
3. 보호부여(Grant of Protection) 89
4. 주요국 국내 절차 등 91

IV. 참고자료 / 95

1. 특허청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97
2. WIPO 전자출원 (eHague) 사용 방법	106
3. 로카르노 국제분류	128
4. 헤이그 국제출원제도 FAQ	150
5. 헤이그협정 가입국 목록	161

V. 헤이그협정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관련 서식 / 167

1. 국제출원서(DM/1)	169
2.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신청(DM/2)	215
3. 국제등록의 감축 신청(DM/3)	225
4. 국제등록의 갱신 신청(DM/4)	233
5. 국제등록의 포기 신청(DM/5)	243
6. 국제등록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신청(DM/6)	251
7. 대리인 선임 신청(DM/7)	259
8. 대리인의 성명/주소 변경 신청(DM/8)	265
9. 대리인 선임의 취소(DM/9)	271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

1.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 소개
2. 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 국제출원
3.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의 장단점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 Section

Hague guide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 소개

1.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1)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복수의 국가를 지정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사무국 또는 국제출원인의 계약당사자 관청(특허청, 이하 “수리관청”이라 함)에 제출하면 한번에 해당 복수의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이하 양자를 “계약당사자”라 함)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고 국제출원에서 지정한 계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 2) 따라서 헤이그 협정에 따른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지역)의 관청(특허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러한 효과는 특허협력 조약에 따른 특허의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에 상응하는 것으로써 디자인에 관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헤이그 협정의 구성

- 1) 최초 헤이그 협정(1925. 11. 6. 체결, 1928. 6. 1. 발효)은 신규성 등 실체심사를 하지 않는 국가 등이 중심이 되어 체결한 협정으로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왔다. 이 중 중요한 개정조약이 아래 3가지 조약이다.
 - ① 1999. 7. 2. 채택, 2003. 12. 23. 발효된 제네바 개정협정(1999년 개정협정)
 - ② 1960. 11. 28. 채택, 1984. 8. 1. 발효된 헤이그 개정협정(1960년 개정협정)
 - ③ 1934. 6. 2. 채택, 1939. 6. 발효된 런던 개정협정(1934년 개정협정)

2) 1934년 개정협정

디자인 보호에 대한 저작권적 접근방식으로 권리자가 국제사무국에 디자인을 기탁하면 즉시 지정국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 지정국 관청의 독자적인 심사는 없다. 다만, 런던 개정협정은 2010. 1. 1. 동결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는 조약이다.

3) 1960년 개정협정

- ① 디자인 보호를 저작권적 접근방식에서 특허적 접근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그 내용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을 국제사무국에 기탁하면 지정국에 출원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효과가 있지만 이후 절차는 지정국의 국내법을 따른다.
- ② 지정국 관청은 국제등록 공보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에 대한 보호의 거부를 선언할 수 있다.

4) 1999년 개정협정

- ① 2003년 12월 23일 발효되어 2023년 8월 현재 71개 계약당사자(96개 국)가 가입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2015년 5월 가입하였고, 중국은 2022년 5월에 1999년 개정협정에 가입하였다.
- ② 제네바 개정협정은 심사주의 국가의 제도와 조화를 추구한 점이 특징이다. 디자인권자는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국제사무국은 그 국제출원을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공개한다. 국제사무국이 공개하면 지정계약 당사자 관청(이하 “지정관청”이라 함)에 국제출원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③ 지정계약당사자가 무심사주의 국가라면 6개월, 심사주의 국가라면 12개월 이내에 거절통지를 할 수 있으며 거절통지 없이 거절통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디자인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5) 우리나라는 1999년 제네바 개정협정의 가입국이며 1999년 개정협정의 공식 명칭은 「산업디자인의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이다.

3. 각 개정협정 간의 관계

- 1) 1934년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동결되었으며, 현재는 1960년 개정협정 또는 1999년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출원만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개정협정의 계약당사자로서 2014년 7월 1일부터 해당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2) 1999년 개정협정과 1960년 개정협정은 서로 독립적이고 완전한 개별 협정이기 때문에 각 국가(기구)는 하나 또는 둘 모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WIPO 웹사이트와 국제출원서 서식의 가입국 목록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국가(기구)가 어느 협정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4. 국제출원인의 자격

- 1)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자연인, 법인)는 아래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G.A. Article 3).
- ① 계약당사자(또는 계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의 국민
 - ② 계약당사자 영역에 주소가 있는 자
 - ③ 계약당사자 영역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 영업소가 있는 자
- 2) 추가로, 1999년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이면 계약당사자 영역에 거주지가 있는 자
- 3) 위 1)과 2)에 따른 자격이 없는 자는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반드시 각 국가(지역)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직접 출원해야 한다. 이러한 출원을 일반적으로 파리협약에 기초한 개별국 직접출원(Paris Route)이라고 한다.

5. 헤이그 협정의 주요 용어

- 1) 국제출원(International application) :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을 위해 정해진 공식 서식으로 제출하는 출원이며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수리관청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2) 국제등록(International registration) :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인이 제출한 국제출원이 요건에 맞으면 출원된 디자인을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권리자에게 증명서를 보낸다. 명칭과 달리 그 실질은 국제출원이다.
- 3) 국제등록부(International Register) : 국제사무국이 보유한 국제등록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로 그 저장매체에 관계없이 협정 또는 공통규칙에 따라 기록해야 하거나 기록을 허용하는 자료의 집합이다.

- 4) 국제출원인(applicant)과 권리자(holder) : 국제출원인은 그 명의로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자이다. 권리자는 그 명의로 국제등록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자이다.
- 5) 계약당사자(Contracting Party) : 계약당사자란 헤이그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이다. 현재 계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로는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OAPI)가 있다.
- 6) 출원인의 계약당사자(Applicant's Contracting Party) : 헤이그협정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 중 국제출원인이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헤이그 협정 제3조)을 가지는 계약당사자이다. 자격을 가지는 계약당사자가 둘 이상이면 국제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서 국제출원인의 계약당사자로 표시한 하나의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 7) 지정(Designation) : 국제등록이 헤이그협정 계약당사자 영역에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신청을 말한다. 이 신청을 위해 국제출원인은 국제출원서에 지정계약당사자를 표시해야 한다.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을 공개하고 각 지정계약당사자(국가 및 기구)에 국제등록부 사본을 보낸다.
- 8) 지정계약당사자 및 지정관청(Designated Contracting Party, Designated Office) :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지정이 적용되는 계약당사자를 지정계약당사자라 하고 그 지정계약당사자의 관청이 지정관청이다.

2 Section

Hague guide

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 국제출원

1. 해외출원 방법

디자인을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에는 개별국 직접출원(Paris route)과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개별국 직접출원은 디자인권의 보호를 구하는 각 나라에 파리협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이다. 헤이그 국제출원은 헤이그 협정에 따라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복수의 협정 가입국에 일원적으로 출원하는 방법이다.

2.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 개요(헤이그 시스템)

1) 국제출원서의 제출 : 수리관청(특허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

*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때는 WIPO웹사이트에서 전자출원 가능

2) 국제사무국의 방식심사 : 협정에 규정된 형식요건에 대한 심사

* 형식요건(수수료 등) 결여 시 하자 통지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 이내에 하자보정 가능

3) 국제출원의 국제등록 : 국제등록부에 국제출원의 내용을 기록

4) 국제등록의 공개 : 국제디자인공보(WIPO 웹사이트 : International Designs Bulletin)에 공개

* 공개는 지정관청에 국제등록 사본(국제출원서)을 통지한 효과가 있음

5) 지정관청의 심사 및 거절이유 통지

* 거절통지가 없이 거절통지기간(6개월, 12개월)이 지나면 보호부여 효과 있음

* 거절통지는 지정관청에서 국제사무국으로 통보하고 국제등록부에 기록

6) 거절통지가 있을 때 이에 대한 국제출원인의 대응

*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은 지정국가의 국내 법령에 따라 절차 진행

* 보호거절의 확정(거절결정), 보호부여의 결정(등록결정) 등 지정관청의 심사절차에 따른 통지사항은 지정국가의 국내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제등록의 보호 및 거절과 관련된 사항은 국제출원인이 지정국가 법령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3. 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 국제출원 비교



3 Section

Hague guide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의 장단점

1. 헤이그 국제출원제도의 장점

1) 간편한 출원절차

- ① 헤이그 국제출원제도는 단순성과 경제성의 필요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헤이그 국제출원을 통해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는 국제출원인은 개별 국가 별로 출원할 필요가 없어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절차에서 발생하는 복잡성을 피할 수 있다.
- ② 국제출원은 하나의 언어로 작성한 하나의 출원서를 하나의 관청(국제사무국)에 제출하고 하나의 통화로 수수료를 내는 절차를 통해 여러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다.
- ③ 또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로카르노 분류에서 같은 분류에 속할 것을 전제로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100개까지 복수의 디자인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다(복수디자인 출원).

2) 비용절감 효과

해외에 직접 출원하려면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식을 사용한 각각의 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번역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절차를 진행할 때 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면 대리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그러나 헤이그 국제출원은 지정계약당사자 법령에 따른 거절이유가 없으면 번역 등의 비용이나 별도의 대리인 선임비용이 들지 않는다.

3) 국내 선출원 또는 선등록이 필요 없음

헤이그 국제출원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출원과 달리 국내 선출원 또는 선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출원인은 디자인권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국제적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헤이그 국제출원은 계약당사자가 선언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면 국제출원인의 계약당사자를 지정

(자기지정)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자기지정이 가능하므로 우리나라에서 국제출원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국제출원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보호대상 국가로 지정할 수 있음).

4) 권리취득 여부 파악 용이

헤이그 국제출원에서는 지정관청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일정한 기간 이내에 (국제등록의 공개일로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 국제사무국에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위 기간 이내에 거절이유의 통지가 없으면 그 출원은 해당 지정관청에 등록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권리취득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다.

5) 사후관리의 편리성

헤이그 국제출원은 하나의 국제등록을 유지하므로 발생한 권리에 대한 사후관리가 간편하다. 권리자는 소유권의 변경,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권리의 포기 및 감축과 디자인권의 갱신을 한 번의 신청으로 국제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고 그 기록은 지정계약당사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2. 헤이그 국제출원시 주의할 점

1) 거절이유 통지시 대리인 선임 필요

지정관청의 심사에서 헤이그 국제출원의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지정관청은 국제사무국을 통해 국제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국제출원인이 이러한 거절이유 통지에 대응(의견서 또는 보정서 등을 제출 등)이 필요하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 지정의 제한

헤이그 국제출원에서 지정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는 공통의 조약에 기속되는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개정협정에만 기속되는 국가이므로 1960년 개정협정 계약당사자에도 출원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우리나라 국민은 헤이그 협정의 1960년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국가를 지정할 수 없다.

II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 (국제절차)

1. 헤이그 국제출원의 개요
2.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간접출원)
3. 국제사무국을 통한 국제출원(직접출원)
4. 국제출원서(DM/1) 작성 방법
5. 디자인의 도면 및 견본
6. 국제사무국 방식심사 및 하자통지
7. 국제등록 및 국제등록의 공개
8.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
9.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국제등록의 변경신청)
10. 국제등록의 갱신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 Section

Hague guide

헤이그 국제출원의 개요

1. 국제출원의 이용자(국제출원인 자격)

1) 국제출원인 자격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국제출원인 자격이라 하며 모든 자가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를 국제출원인의 계약당사자로 할 수 있는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999년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계약당사자를 지정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 ①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자연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② 대한민국 영역에 주소를 둔 자
- ③ 대한민국 영역에 거주지가 있는 자
- ④ 대한민국 영역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진 자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특허청 출원〉

대한민국에 거주지를 가진 외국(법)인이면 국제출원서 2번, 3번 항목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대한민국 특허청을 거쳐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Entitlement to File]

a) Nationality : France

b) Domicile : France

c)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 None

d) Habitual residence : Republic of Korea

[3. Applicant's Contracting Party(Where the 1999 Act applies)]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 Republic of Korea

〈국내 거주지의 개념〉

[규칙 제87조]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법 제 174조 제3호에서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장소가 있는 자를 말한다.

- * 외국인의 주소(거주지) 또는 진정하고 실효적인 영업소의 확인이 필요하면 특허청 방식심사 담당자는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복수(공동) 국제출원인의 자격

- ① 국제출원인이 둘 이상이면 이들 각자는 위 1)에 언급한 국제출원인 자격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에서는 국제출원인의 계약당사자가 같을 것만을 요구하고 각각의 성질(국적, 주소, 영업소, 거주지)까지 같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②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A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가지는 외국 법인 B, 또는 대한민국 국민인 A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는 외국인 B는 하나의 국제출원에서 복수(공동) 국제출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국적이 다른 복수 국제출원인이 있을 때 기재 예시〉

[2.Applicant]

a) Name : A

[3.Entitlement to File]

a) Nationality : Republic of Korea

b) Domicile : Republic of Korea

c)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 공란 또는 None

d) Habitual residence : Republic of Korea

[4. Applicant's Contracting Party(Where the 1999 Act applies)]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 Republic of Korea

[2.Applicant]

a) Name : B

[3.Entitlement to File]

a) Nationality : France

b) Domicile : France

c)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 None

d) Habitual residence : Republic of Korea

[4. Applicant's Contracting Party(Where the 1999 Act applies)]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 Republic of Korea

2. 국제출원의 내용

국제출원의 내용, 즉 국제출원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 특정 계약당사자가 선언한 추가적인 필수 기재사항과 선택적인 기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필수 기재사항(G.A. Article 5(1), C.R. Rule 7(3)).

- ① 모든 국제출원에 반드시 포함되거나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i) 국제등록의 신청이라는 표시(공식서식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ii) 국제출원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이메일)
 - iii) 디자인의 도면 또는 견본(2차원 디자인의 공개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
 - iv)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의 표시
 - v) 지정계약당사자 표시
 - vi) 규정된 수수료 및 기타 협정 등에서 정한 사항

- ② i), ii), iii), v)가 없으면 출원일의 연기를 가져오는 하자를 구성한다.
 이때 국제출원의 출원일은 국제사무국이 그 하자의 보정을 접수한 날이 된다(C.R. Rule 14(2)). 이외에 출원일의 연기를 가져오는 하자는 국제출원 언어 중 하나의 언어로 국제출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이다.

2) 추가적인 필수 기재사항(C.R. Rule 7(4))

필수 기재사항인 지정계약당사자의 표시에 더하여, 출원인의 계약당사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심사관청인 계약당사자는 국제출원이 자국 법령에 따른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기재(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국제사무국에 선언으로 통지할 수 있다(G.A. Article 5(2)). 이러한 선언을 한 계약당사자를 지정한 국제출원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기재(포함)해야 한다.

- i) 디자인 창작자의 신원에 관한 표시(루마니아)
- ii) 도면 또는 디자인의 특색에 대한 설명(중국, 루마니아, 시리아, 베트남)
- iii) 청구범위(미국, 베트남)

출원인과 창작자에 관한 특별요건(규칙 8)이 적용되는 경우, 국제 출원은 창작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서류 및 국제출원이 창작자로부터 출원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 및 증명서류가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 i) 출원인에 관한 특별한 요건이 있는 계약당사자 (Rule 8(1)(a)(i))
: 브라질, 핀란드, 가나, 헝가리, 아이슬란드, 모리셔스, 멕시코
- ii) 창작자에 관한 특별한 요건이 있는 계약당사자 (Rule 8(1)(a)(ii))
: 미국

3) 선택적인 사항(C.R. Rule 7(5))

- ① 국제출원인은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 협정 또는 규칙에 명시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포함할 수 있다. 즉, i)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ii) 선출원의 우선권 주장 등이며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국제출원의 하자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다만, 국제출원의 추가적인 필수사항과 관련하여 창작자의 신원 또는 디자인에 대한 설명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 나라를 지정하더라도 국제출원인이 원하면 그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범위는 자국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나라(예, 미국) 이외에는 기재할 수 없다(Guide B. II.03.04).

3. 국제출원의 언어

- 1) WIPO 직접 출원 :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하나(C.R. Rule 6(1)).
- 2) 특허청을 통한 간접 출원 : 영어(규칙 90(2)).
- 3) 국제출원서가 규정된 언어로 제출되지 않으면 이는 출원일의 연기를 수반하는 하자를 구성한다(C.R. Rule 14(2)).

4. 국제출원서 등의 제출

1) 국제출원서의 제출

- ① 국제출원인은 국제출원서를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수리관청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G.A. Article 4(1)).

- ②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직접 제출할 때는 WIPO 웹사이트의 전자출원 인터페이스(이하 “eHague”라 함)를 이용하거나 국제출원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A.I. Section 201, 203).
- ③ 특허청을 통해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는 특허청에서 정한 방식(전자출원 또는 서면출원)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특허청을 통해 제출한 국제출원서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원본이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최초의 제출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C.R. Rule 13(3)).

2) 변경기록의 신청 등

국제등록의 갱신 및 국제등록에 관한 각종 기록의 변경신청은 국제사무국으로만 제출할 수 있다. 갱신은 WIPO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자갱신 인터페이스(이하 “E-renewal”이라 함)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 서식은 WIPO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5. 국제사무국과의 통보

1) 통보의 양식

국제사무국과의 연락은 인쇄되거나 타자된 문서로 해야 했으나, 전자출원(eHague)이 도입되면서 이를 통해 출원한 출원인들에게는 도면 및 서류상의 하자에 대한 보정이 전자적으로 가능해졌다. 또한 전자출원인에 한해서 국제출원에 관련한 통지들을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국제출원의 현재 상태를 실시간 조회할 수도 있다.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통보는 제출인이 서명해야 하고 서명은 필기, 인쇄, 입력, 날인(인장)이 가능하다(A.I. Section 202).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은 WIPO 웹사이트(www.wipo.int/hague/en/forms)에서 구할 수 있다.

2) 통보의 방법

국제사무국과의 연락은 인편, 우편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국제출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은 WIPO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eHague(국제출원서 제출)와 E-Renewal(국제등록 갱신)로 제한되며, 이외 국제등록에 관한 기록의 변경신청은 서면이나 Contact Hague를 통해 할 수 있다.

3) 팩스로 보내는 통보

팩스로 보내는 통보는 2019년 1월 1일자로 중지되었다.

〈국제사무국 연락처〉

[주소]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P.O.Box 18, CH-1211 Geneva 20, Switzerland

[Tel] +41 22 338 7575

[고객센터] (출원, 등록 관련 문의) WIPO 홈페이지내 Contact Hague 메뉴에서 질문 가능
(수수료 관련 문의) WIPO 홈페이지내 Contact Us : Finance 메뉴에서 질문 가능

6. 국제사무국에 대한 수수료 납부

1) 수수료 금액

- ①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는 공통규칙에 첨부된 수수료표에 규정된 금액이다. 수수료 표는 WIPO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제출원 또는 갱신의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Fee Calculator)를 해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C.R. Rule 27(1)).
- ② 또한, 국제출원인이 eHague를 이용하여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할 때는 국제출원서 입력 사항을 모두 입력한 후 자동으로 계산된 수수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2) 납부 방식

국제사무국에 수수료를 내는 방식은 아래 세 가지 방법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A.I. Section 801).

- ①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당좌계좌에서 인출을 지시
- ② 스위스 우편환 계좌 또는 국제사무국 은행계좌 이용
- ③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i) 수수료 하자통지 등 국제사무국의 통지서에서 언급한 수수료 또는 국제

등록의 갱신료를 낼 때만 가능하며 이때 WIPO참조번호(7-10자로 이루어진)가 필요하다.

- ii) 다만, eHague를 이용하여 출원서를 제출할 때 납부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사이트에서 즉시 결제가 가능하고 이때는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사이트를 통해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납부 통화

수수료는 스위스 통화(프랑)로 내야 한다. 국내 은행에서 이체를 이용하는 국제출원인은 은행에서 이체수수료 등 비용을 포함한 외화 금액으로 송금한다(C.R. Rule 28(1)).

4) 납부정보의 표시

은행이체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낼 때는 국제등록 전이면 국제출원인 성명, 관련 디자인 및 납부의 목적을 표시하고, 국제등록 후에는 권리자 성명, 관련 국제등록번호 및 납부의 목적을 표시해야 한다(C.R. Rule 27(4)).

* 납부정보는 국제출원서에 따른 수수료 계산용지의 납부자 신원에 기재할 사항과 같으며 이체 시 은행에 따라서는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항목 및 글자 수 제한 등이 있으므로 납부자 신원을 기재하기 전에 이용하는 은행에 확인이 필요함

7.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인

- 1) 국제출원인은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 선임에 특별한 자격이나 국적(주소)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대리인은 오직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행위만 가능하며 1명의 대리인만 인정된다. 국제출원서에 2명 이상의 대리인을 기재하면 처음 기재한 대리인만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인정한다(C.R. Rule 3(1)).

2) 선임 방법

- ① 국제출원서 또는 각종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 대리인 항목에 표시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출원시에 국제출원서에 대리인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구성한다 (C.R. Rule 3(2)). (위임장 임의로 첨부하는 것은 가능)

- ② 국제출원인은 별도의 서신 또는 국제사무국의 대리인 선임 서식(DM/7)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때는 권리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는다.

3) 선임의 통지

대리인 선임이 요건에 맞으면 국제사무국은 해당 사항을 국제등록부에 기록하고 이 사실을 국제출원인(또는 권리자)과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4) 선임의 효과

적법한 대리인은 국제출원인을 대신하여 국제사무국에 대한 모든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인 또는 권리자에게 보낼 모든 통보를 대리인에게 하고 이러한 통보는 국제출원인(또는 권리자)에게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C.R. Rule 3(4)). 대리인이 있는 국제등록에 대하여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되면 이전 대리인은 교체되는 것으로 본다(C.R. Rule 3(5)).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대리인이 있더라도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인 또는 권리자에게도 통보한다.

- ① 대리인 선임이 취소되면 국제출원인 또는 권리자와 대리인 모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C.R. Rule 3(5)).
- ② 국제등록의 보호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하는 비공식 통지는 권리자와 대리인 모두에게 보낸다(C.R. Rule 23).
- ③ 갱신을 위해 낸 수수료가 부족하게 입금되면 권리자와 대리인 모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C.R. Rule 24(3))

5) 선임의 취소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하고자 하면 대리인 선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국제출원인, 권리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한 단순한 서신 또는 대리인 선임 취소 서식(DM/9)을 사용한다(C.R. Rule 3(5)). 국제출원인 또는 권리자는 자신의 모든 출원/등록 또는 일부의 출원/등록에 대하여 대리인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

2 Section

Hague guide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간접출원)

1. 국제출원의 일반 원칙

1) 국제출원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법 제175조, 규칙 제90조 2항)

①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규칙 별지 18호)

② 국제출원서(DM/1) 공식 서식(규칙 별지 19호)

③ 대리인이 제출하는 때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등(규칙 제88조)

i) 대리인은 위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거나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ii) 국제출원서 제출 후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2호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위임장을 첨부한다(규칙 제88조).

〈특허청에 대한 대리인과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인〉

특허청에 대한 대리인은 특허청을 통해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출원서가 국제사무국에 보내기 전까지 특허청에 대한 절차만을 대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대리인(자격요건 필수)이며,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인은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를 대리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대리인으로 이 경우 별도의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④ 도면 또는 견본

i) 국제사무국에서 도면 작성에 관한 주의사항(규격 및 파일 크기 등의 제한 있음)과 심사주의관청별 도면의 작성방법을 안내하므로 이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ii)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시 도면은 JPEG 파일로만 제출할 수 있다.

iii) 견본은 디자인이 2차원(직물지 등)이면서 공개연기를 신청한 때에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전자문서 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에 견본을 첨부하여 출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한다.

2) 서류의 작성 및 제출

- ① 국제출원서, 위임장, 도면을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 특허청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이용 방법은 참고자료에서 설명
- ② 송달료(전자출원은 5,000원, 서면출원은 15,000원)를 특허청에 납부한다.
- ③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와 특허청에 제출하는 위임장은 한국어로, 국제출원서(DM/1) 등 첨부서류는 모두 영어로 작성한다.
- ④ 국제출원서(DM/1) 항목에 기재할 사항이 없으면 공란 또는 없음(None으로 기재)으로 표시한다.

3) 방식심사 및 국제사무국 송달

- ① 국제출원인이 제출한 국제출원서 등 국제출원 서류는 특허청 방식심사를 거쳐 하자가 없으면 국제사무국으로 보내고 그 발송 사실을 국제출원인에게 통지한다(국제출원서 사본송부서).
- ② 특허청에 제출된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도달하여야 특허청에 제출한 날이 국제출원의 출원일로 인정되므로 특허청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C.R. Rule 13(3)).

2.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대한 방식심사

1)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는 국제출원서(DM/1) 및 국제출원서(DM/1)의 대체서류 제출 또는 국제출원 절차의 보정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서식이다.

2)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항목별 기재 요령(방식심사 사항, 규칙 제90조)

- ① 제출구분 : 국제출원서 등, 대체서류, 국제출원 보정서 중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에 따라 선택한다.
- ② 제출인 : 출원인 코드의 성명(명칭)과 일치하도록 명칭을 기재한다.
 - i) 전자출원을 할 때는 출원인코드의 영문 성명/주소 표기와 국제출원서의 영문 성명/주소 표기가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 ii) 영문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출원인코드와 다르다면 먼저 출원인코드를 정정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리인 : 대리인 코드의 성명(명칭)과 일치하도록 명칭을 기재한다.
* 성명(명칭)이 변경된 때의 제출인 항목 기재 요령과 동일
- ④ 포괄위임등록번호 : 헤이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포괄위임등록(F00 코드)을 한 대리인은 그 번호를 기재한다.
- ⑤ 사건의 표시 : 최초 국제출원서 제출 시 생략된다. 단, 대체서류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때는 국제출원서 제출 시 부여받은 특허청 참조번호를 반드시 기재한다.
- ⑥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 : 최초 국제출원서 제출을 생략된다. 단, 대체서류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때는 대체서류제출 요청서 또는 보정요구서의 발송번호를 반드시 기재한다.
- ⑦ 대체할 서류 : 제출하는 서류의 명칭을 기재한다(예, 국제출원서).
- ⑧ 대체할 페이지(보정대상항목) : 정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제출원서의 해당 페이지 또는 항목을 기재한다(예, 국제출원서 1, 2항 정정).
- ⑨ 수수료 : 해당하는 수수료 금액을 기재한다.
*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는 송달료, 보정서를 제출할 때는 보정료를 기재
- ⑩ 첨부서류 : 국제출원서(DM/1), 위임장 등으로 기재한다.
 - 위임장은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국제출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이면 충분한다.
 - 국제출원인이 둘 이상이면 모든 국제출원인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한다.

3) 방식심사 결과

- ① 수리 :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이상이 없을 때
- ② 보정요구 : 2)의 방식심사 사항에 어긋나는 경미한 하자가 있을 때
- ③ 대체요청 : 국제출원서 필수 기재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 ④ 서류반려 : 법령에서 정한 기간 또는 방식에 어긋나는 서류를 제출했을 때

4) 보정요구 등

- ① 특허청장은 방식심사 결과 경미한 하자가 있으면 보정요구서를 보내고,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대체서류 제출요청서를 보낸다. 보정요구서 또는 대체

서류 제출요청서를 받은 국제출원인은 제출기일(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허청에 보정서 또는 대체서류를 제출한다.

- ② 특허청의 보정요구 또는 대체서류 제출 요청에 대하여 기간 이내에 보정서 또는 대체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분 사유가 된다.

3. 중간서류 방식심사

1) 헤이그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제출할 수 있는 중간서류

- ①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대체서류)
- ②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국제출원 보정서)
- ③ 물건 등 첨부서류 제출서(견본)
- ④ 국제출원 취하서

2) 중간서류와 관련한 기재사항 및 방식심사 항목은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의 방식심사 사항과 같고 그 방식심사 결과에 따라 수리, 보정요구, 서류반려 등의 후속 절차가 이루어진다.

3) 대체서류

대체서류는 최초 국제출원 시 제출하는 것과 같이 DM/1서식과 서식에 첨부해야 할 위임장 및 도면 등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 전체를 제출한다.

4) 국제출원보정서

- ①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수수료 등 법에서 정한 방식에 어긋나 보정요구서를 받은 때 제출한다(규칙 제92조).
- ② 정정할 서류를 첨부하거나 오류 정보를 수정하여 제출한다.
 - i) 국제출원인/대리인 정보가 출원인코드/대리인코드와 다르면 코드정보변경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ii) 수수료 미납에 기인한 보정 요구는 보정요구서에 첨부된 납부서로 미납 수수료를 내고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5) 물건 등 첨부서류 제출서

- ① 물건 등 첨부서류 제출서를 이용한 첨부서류 제출은 국제출원의 출원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위임장)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고 국제출원서(DM/1) 자체 또는 필수 첨부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 ② 다만, 그 디자인이 2차원이면서 공개연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국제출원서 제출 시 도면이 아닌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출원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6) 국제출원 취하서

- ① 국제출원 취하는 특허청에서 국제사무국으로 국제출원서를 발송하기 전까지만 가능(국제출원서 사본송부서 발송일 기준)하다.
- ②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발송한 이후에 제출한 취하서는 반려한다.

4. 국제출원서(DM/1)에 대한 방식심사

- 1) 국제출원서에 대한 방식심사는 국제사무국의 고유 권한이다.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 제177조에 따른 필수 기재 사항의 누락(오류)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누락이 있으면 대체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 2) 법령에 따른 방식심사 사항(필수 기재사항)
 - ① 정해진 언어(영어)로 작성하지 아니한 때(규칙 제91조)
 - ② 국제출원의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때(비공식 서식 사용)
 - ③ 국제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때(성명 누락 또는 불명확)
 - ④ 국제출원의 대리인을 특정할 수 없을 때(대리인의 정보 불명확)
 - ⑤ 도면 또는 견본이 없을 때
 - ⑥ 지정계약당사자 표시가 없을 때
- 3) 기타 오류

조약에 따른 기재사항의 미비 및 오기재(법령에 정한 방식심사 사항이 아닌

선택적 필수사항의 오류 등)는 특허청의 방식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대체서류 제출 요청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제출원서의 필수 기재사항 이외에 오류가 있으면 국제사무국 방식심사 결과에 따라 하자통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4) 대체서류 제출 기한

대체서류 제출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체서류 제출기간은 기간연장의 대상이 아니다.

5) 대체서류 제출 등의 효과

대체서류 제출은 국제출원일 변경을 가져와서 대체서류 제출요청서를 받은 국제출원인이 기한 이내에 대체서류를 제출하면 그 대체서류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의 접수일로 본다(법 제177조).

5. 무효처분 및 반려

1) 무효처분

보정요구를 받은 국제출원인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특허청장은 그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고 무효처분 시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법 제18조).

2) 반려이유 통지 및 반려

- ① 규칙 제24조에 따른 반려사항에 해당하면 반려이유통지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제출원인에게 출원서 등 제출서류를 반려한다. 국제출원인은 반려이유통지를 받고 반려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로 반려하여 국제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서 등의 제출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② 실제로 국제출원인이 반려이유통지서를 받고 반려신청을 할 실익은 없으며 반려이유통지서에 대응한 소명 등이 없으면 1개월 후 특허청장은 반려 통지서를 발송한다.

3 Section

Hague guide

국제사무국을 통한 국제출원(직접출원)

1. 직접출원의 의미

협정 제4조 및 공통규칙 제13조에 따라 국제출원인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 관청이 선언으로 간접 출원을 금지하면 오직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만 허용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않았으므로 국제출원인은 직접 출원과 간접 출원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G.A. Article 4(2)).

2. 직접출원의 방법

① 우편 제출(A.I. Section 201)

- i)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국제사무국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ii) 우편으로 여러 건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는 목록을 첨부한다.

② 전자출원(eHague)

- i) 전자출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의 사용방법 참조

3. 국제사무국 전자출원(eHague) 사용의 장점

1) 빠른 출원 접수

전자출원(eHague)을 사용하면 국제사무국에 바로 출원서가 접수되고, 우편 송달에 따른 시간 또는 간접출원 시 필요한 특허청 방식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여 국제출원서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다.

2) 하자 발생 가능성 감소

출원서 필수 기재사항, 특별요건에 대하여 선언한 계약당사자 지정에 필요한 기재사항, 수수료 금액 등 국제출원서에 기재하는 대부분 사항을 자동으로 검사하여 결과를 알려주므로 하자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3) 하자 대응 편리

eHague를 통해 전자출원한 경우에는 E-filing communication을 통해 하자보정이 전자적으로 가능하다.

4) 신용카드 납부방법 선택 가능

계좌이체를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없다. 다만, 전자출원(eHague)에서 신용카드 납부를 선택하면 신용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해당 사이트를 통해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국제출원서의 접수 등 통지가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 계정에 등록된 E-mail로 즉시 통지하므로 신속한 안내가 가능하다.

4 Section

Hague guide

국제출원서(DM/1) 작성 방법

1. 국제출원서 작성 개요

- 1) 국제출원서 작성방법에 관한 일반 원칙은 국제사무국에서 발간한 「헤이그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국제출원서 각 항목의 기재요령을 설명한 국제출원서 작성법을 WIPO 홈페이지(www.wipo.int/hague/en/guide) 및 특허청 출원소프트웨어인 통합서식작성기 내에 게시하고 있다.

* 특허청<지식재산제도>해외디자인출원<자료실>헤이그협정/규칙/가이드>헤이그 사용자 가이드

- 2) 전자출원(eHague)을 사용하는 국제출원인은 출원서 작성이 더욱 편하다.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전자출원(eHague)에서는 각 항목에서 도움말을 제공하고, 협정 및 규칙에 따른 선언사항, 수수료 등에 관하여 자동검사를 실행하여 출원서에 기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3) 아래 국제출원서 작성방법은 국제사무국에서 발간한 가이드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공식서식(DM/1)을 이용하여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수리관청을 통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식 작성에 참고할 수 있다.
- 4) 수리관청(특허청)을 거쳐 국제출원을 하는 국제출원인은 모든 서식을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국제사무국에 서면 또는 전자출원(eHague)을 이용하여 직접 제출할 때는 국제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2. 국제출원인(1번 항목, Applicant)

- 1) 명칭(Name) : 라틴문자 이외의 문자로 된 명칭이면 국제출원 음성표기법에 따른 라틴문자 음역으로 기재한다(법인은 영어로의 번역도 인정). 특허청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특허고객번호의 영문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 2) 복수 국제출원인 : 복수 국제출원인은 하단의 □ 박스에 표시하고 연속용지를 사용하여 국제출원인 각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기재한다.
- 3) 주소 : 이메일 주소는 필수기재사항이며 특허청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1

Applicant(출원인정보)

(a) Applicant is a (check only one box):

☒ Natural person – Family(last) name(성): Hong..... Given(first) name(이름): Gildong.....

☐ Legal entity – Official designation:

(b) Address(주소): 47 Gwanmun-ro.....

Postal code(우편번호): 13809 City(도시): Gwacheon-si Region/state(optional)(도): Gyeonggi-do Country(국가): KR

(c) Email address(이 메일 주소)¹: honggildong@kipo.com

(d) Telephone(optional)(전화번호)²: 82(국가번호)-31-481-1234.....

1.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to this email address only, unless a different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is indicated in item 4 (only for multiple applicants) or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Please ensure that the email address is accurate and kept up to date.
2.Include the country and area code. E.g. +41 22 338 7575.

3. 국제출원인 자격(2번 항목, Entitlement to File)

- 1)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위해서 국제출원인은 헤이그 협정의 계약당사자에 국적, 주소, 영업소 또는 거소 중 한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2) 국제출원인이 둘 이상의 계약당사자에 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기재할 수 있다.

실제로, 1999년 개정협정과 1960년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복수의 국제출원 자격을 가질 때 양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모든 계약당사자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이상의 계약당사자를 기재하는 것이 출원인에게 유리하다.

☞ 이탈리아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국제출원인의 경우 국적(Republic of Korea)과 주소(Italy)를 각 항목에 기재할 경우하고 1999년 개정협정과 1960년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모든 계약당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3) 다만, 거주지(Habitual Residence)를 통한 국제출원 자격은 1999년 협정에 기속되는 계약당사자에 관련되어서만 주장할 수 있다.

- 4) 관련된 계약당사자가 같더라도 적용 가능한 모든 자격을 다 표시하기를 권장한다(즉,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국제출원인은 국적, 주소, 거소를 모두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한다).
- 5) 전자출원을 이용할 때는 국가코드(예, KR, FR)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서면출원이면 해당하는 국가(기구) 명칭은 정식 명칭을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
(예 : Republic of Korea, France)
- 6) 국제출원인 자격이 없는 항목은 빈칸으로 남겨놓거나 “None”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Entitlement to File(출원자격)

The applicant must be a national of, or have a domicile, habitual residence or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commercial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Party. You must indicate the corresponding Contracting Party(**ies**) in each field. If a field is not applicable, write “None”. For Contracting Parties that are also members of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GO) (European Union or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ndicate both entities (example: “France, European Union”) in all relevant fields. As regards member states of IGOs that are themselves not Contracting Parties, only indicate the name of the IGO.

(a) Nationality(국적): **KR**

(b) Domicile(주소):

(c)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영업소): **US**

(d) Habitual residence(Only for contracting parties bound by the 1999 Act) (거소):

4. 국제출원인의 계약당사자(3번 항목,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 1) 1999년 개정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인이 국제출원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 계약당사자를 표시하는 항목으로, 2번 항목의 국제출원인 자격에 표시된 계약당사자 중 하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C.R. Rule 7(4)).
- 2) 2번 항목에 표시된 자격이 하나이면 그 국가를 기재하고, 둘 이상이면 둘 중 하나를 기재한다.
- 3)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기원국은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2번 항목의 출원인 자격에 표시된 계약당사자를 통해 추론한다.
- 4) 우리나라는 1999년 개정협정에만 가입해 있으며,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간접출원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계약당사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3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only if the 1999 Act applies) (출원인의 계약당사자) Indicate the Contracting Party or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bound by the 1999 Act and provided in item 2 above, to be considered as the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If no Contracting Party is indicated in the box below, and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filed through the Office of a Contracting Party indicated in item 2, that Contracting Party is deemed to be the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KR.....
----------	--

5. 연락 주소(4번 항목,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for Multiple Applicants)

- 1) 복수 출원인이면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기재한다. 국제 출원인이 둘 이상인 경우 이 항목에 기재하지 않으면 1번 항목에서 처음으로 기재된 출원인의 이메일 주소로 통지서가 발송된다.
- 2) 대리인이 있으면 이 항목에서 연락주소를 기재하더라도 모든 통지는 대리인에게 발송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4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for Multiple Applicants (if applicable) (출원인의 대체연락처) Complete this item if there are multiple applicants, and no representative is appointed. [Note: If there is only one applicant or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the information provided under this item will be disregarded.] Email address³: 3.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to this email address only. Please ensure that it is accurate and kept up to date.
----------	---

6. 대리인 선임(5번 항목,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 1) 국제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할 때 기재하는 항목으로 국제출원인에 대한 기재요령과 같이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이때 이메일 주소는 1번 항목에 기재된 출원인의 이메일 주소와 동일해서는 안 된다.
- 2) 대리인 선임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국제출원인이 대리인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대리인의 자격이나 요건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 3) 해당 대리인은 오직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의 진행만을 할 수 있으며 지정관청의 거절통지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별도의 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5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optional) (대리인정보)

The person identified below is hereby appointed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applicant.

Only **one representative** may be appointed. Note: a legal firm is regarded as one representative. If both a natural person and a legal entity are indicated, the representative will be recorded with the name of the legal entity preceding the name of the natural person.

(a) The representative is a :

☒ Natural person – Family(last) name: Kim..... Given(first) name: Daeri.....

☐ Legal entity – Official designation:

(b) Address: 131 Teheran-ro Gangnam-gu.....

Postal code: 06133..... City: Seoul..... Region/state(optional):..... Country: KR.....

(c) Email address⁴: Daeri@apply.co.kr.....

(d) Telephone(optional)⁵:

⁴If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to this email address only. Please ensure that it is accurate and kept up to date.

⁵Include the country and area code. E.g. +41 22 338 7575.

7. 디자인, 도면 및 견본의 수(6번 항목, Number of Designs, Reproductions and/or Specimens)

- 1) 디자인의 수(디자인은 총 100개를 넘을 수 없음), 도면의 총수를 기재한다.
- 2) 서면 출원의 경우 도면을 포함하는 A4용지 총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견본이 있을 때는 견본의 총수를 기재한다.
- 3) 전자출원(eHague)을 이용하여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할 때는 디자인 총수와 도면 총수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 4) 견본이 포함된 출원은 전자출원(eHague)을 이용할 수 없고 서면 출원(우편)만 할 수 있다.

6

Number of Designs, Reproductions and/or Specimens (디자인,도면,견본 수)

Unity of design is a requirement in **Brazil, China, Estonia, Kyrgyzstan, Mexico, Romania, the Russian Federation, the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Viet Nam**. If this application includes more than one design and designates any of these Contracting Parties, WIPO strongly recommends that you refer to the **Hague Guide for Users, International Application – Item 6** and the **Guidance on multiple designs**. If designating China, also refer to item 16

(a) Total number of designs (maximum of 100)(디자인수): 3.....

(b) Total number of reproductions(도면수): 10

(c) Total number of A4 pages comprising reproductions(서면제출시):

(d) Total number of specimens (if any)(견본수):

8. 계약당사자 지정(7번 항목,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1) 계약당사자 지정의 제한

- ① 디자인을 출원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를 지정한다. 지정하는 계약당사자는 출원인이 국제출원 자격(3번 항목)이 있는 계약당사자와 동일한 협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② 대한민국에만 국제출원인 자격을 가진 국제출원인은 1999년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계약당사자 만을 지정할 수 있다. 국제출원인 자격에 표시된 계약당사자에 1960년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계약당사자를 표시한 대한민국 국민은 1999년 협정과 1960년 협정에 기속되는 계약당사자를 모두 지정할 수 있다.
- ③ 정부간 기구인 계약당사자를 지정하는 것은 1999년 개정협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때는 정부간 기구의 소속국가를 동시에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런 형태의 지정이 지정관청 심사 및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

[유럽연합(EU)]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27개국)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코트디부아르, 적도 기니,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토고 (17개국)

2) 사후지정 불가

디자인의 보호를 구하는 계약당사자는 국제출원 당시에 지정해야 한다. 헤이그 국제출원은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과 달리 사후지정 제도가 없으므로 보호를 구하는 계약당사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면 새로운 국제출원을 해야 한다.

3) 자기지정 가능

- ① 헤이그 국제출원은 자기지정이 가능하다. 즉, 대한민국 국민인 국제출원인은 국내출원과 국제출원을 별개의 절차로 진행하지 않고 헤이그 국제출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정하여 국내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② 다만, 헤이그 국제출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정하면 각종 수수료 및 심사절차는 헤이그 국제출원제도에 따른다. 또한, 등록 이후 발생하는 모든 관리(명의 변경, 명칭변경, 갱신 등)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해야 한다.

4) 계약당사자별 특별선언사항 확인

지정할 계약당사자 중에 특별선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별선언 사항에 따라 필수 기재항목이 있거나 첨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7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지정국가)

Select all **Contracting Parties** where you seek protection. Each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must be bound by an Act (the **1999 Act** and/or the **1960 Act**) to which at least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dicated in item 2 is also bound (a list of Contracting Parties is annexed to this form.)

Important: Additional Contracting Parties cannot be designated after filing.

☐ AL Albania	☐ EM European Union	☐ LI Liechtenstein	☐ RU Russian Federation
☐ AM Armenia	☐ ES Spain	☐ LT Lithuania	☐ RW Rwanda
☐ AZ Azerbaijan	☐ FI Finland	☐ LV Latvia	☐ SG Singapore
☐ BA Bosnia and Herzegovina	☐ FR France	☐ MA Morocco	☐ SI Slovenia
☐ BG Bulgaria	☐ GA Gabon	☐ MC Monaco	☐ SM San Marino
☐ BJ Benin	☒ GB United Kingdom	☐ MD Republic of Moldova	☐ SN Senegal
☐ BN Brunei Darussalam	☐ GE Georgia	☐ ME Montenegro	☐ SR Suriname
☐ BR Brazil	☐ GH Ghana	☐ MK North Macedonia	☐ ST Sao Tome and Principe
☐ BW Botswana	☐ GR Greece	☐ ML Mali	☐ SY Syrian Arab Republic
☐ BX Benelux	☐ HU Hungary	☐ MN Mongolia	☐ TJ Tajikistan
☐ BY Belarus	☐ IL Israel	☐ MU Mauritius	☐ TM Turkmenistan
☐ BZ Belize	☐ IS Iceland	☐ MX Mexico ⁷	☐ TN Tunisia
☐ CA Canada	☐ IT Italy	☐ NA Namibia	☐ TR Türkiye
☐ CH Switzerland	☐ JM Jamaica	☐ NE Niger	☐ UA Ukraine
☐ CI Côte d'Ivoire	☐ JP Japan	☐ NO Norway	☒ US United States of America
☒ CN China	☐ KG Kyrgyzstan	☐ OA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OAPI)	☐ VN Viet Nam
☐ DE Germany	☐ KH Cambodia	☐ OM Oman	☐ WS Samoa
☐ DK Denmark	☐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PL Poland	
☐ EE Estonia	☒ KR Republic of Korea	☐ RO Romania	
☐ EG Egypt		☐ RS Serbia	

9. 물품 지정(8번 항목, Product Indication)

1) 디자인이 속하는 물품 분류

① 출원할 디자인이 속한 로카르노 분류를 표시할 수 있다(선택사항).

② 복수디자인 출원일 때는 하나의 출원서에 포함된 모든 디자인이 같은 로카르노 분류에 속해야 한다.

* 빵과 비스킷은 같은 로카르노 분류이므로 하나의 출원서에 복수 디자인으로 출원이 가능하나 빵과 빵 바구니는 분류가 다르므로 각각 출원해야 한다.

2) 디자인 번호 :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도면의 번호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물품의 일련번호와 대응하도록 기재한다.

3) 물품(Product(s))

① 디자인이 물품으로 구성될 때는 그 물품의 포괄명칭을 기재한다(ex, “chair”).

* 계약 당사국에 따라서 물품의 포괄명칭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② 디자인이 물품에 관해 사용되는 장식적 모티브로 구성될 때는 그 물품을 표시한다(예 : 접시용 그림).

* 대한민국을 지정할 때는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특정없이 시각적 이미지만으로 구성된 디자인은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32류에 속하는 물품은 보호받을 수 없다.

4) 소분류(Subclass) : 물품의 소분류를 표시할 수 있다(선택사항).

5) 물품의 대분류와 소분류의 기재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하자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복수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이 서로 다른 분류에 속하는 디자인을 출원한 것으로 판단하면 보정이 필요한 하자가 된다.

6) 로카르노 분류는 특허청 홈페이지의 헤이그 코너 및 국제사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디자인의 단일성 요건

브라질, 중국, 에스토니아, 키르기스스탄, 멕시코, 루마니아, 러시아, 시리아, 타지키스탄, 미국, 베트남은 국제출원에 포함된 모든 디자인이 디자인의 단일성 요건(하나의 출원에 동일한 개념(concept)의 디자인만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Article 13(1)). 이때 단일성 요건에 관한 정보는 해당 계약당사자 국내 법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절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에 복수디자인 출원을 하면 거절이유 해소를 위하여 출원의 분할 등에 관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을 충족해야 한다.

8

Product Indication (물품명칭 기재)
Indicate for each design the product which constitutes the design or in relation to which the design is to be used.

Special note: Products belonging to **class 32 of the Locarno Classification** are not eligible for protection under the national laws of **Canada, China(only 32-01 is excluded)**, **Israel, Mexico** and the **Republic of Korea** (protection would be refused by their respective Offices).

Locarno Class to which the design(s) belong(s) (optional) (로카르노 분류): **2**.....

No. of the design (in numerical order) (디자인번호 순)	Total number of reproductions (도면 수)	Product(s) (물품명)	Subclass (optional)
1	5	shirts	
2	3	pajamas	
3	2	pajamas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10. 설명(9번 항목, Description)

- 1) 디자인에 관한 설명은 국제출원에 포함될 수 있는 선택적인 사항이다. 다만, 국내 법령이 출원일을 인정하기 위해 설명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사실을 WIPO 사무총장에게 선언으로 통지한 계약당사자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시리아, 중국, 루마니아, 베트남).
- 2) 설명의 방식 : 설명은 도면에 나타난 독특한 특징이나 도면에서 청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디자인의 작용에 관한 기술적 특징이나 그 활용에 대해서는 기재할 수 없다.

- 3) 추가 수수료 발생 가능성 :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단어 당 2 스위스 프랑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9

Description (if applicable) (디자인, 도면설명)

General note: Only describe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designs that appear in the reproductions. Matter shown in a reproduction but for which protection is not sought may also be indicated here (and/or in the reproduction by means of dotted or broken lines or coloring). The description can disclose the operation or possible use of the design so long as it is not technical. Furthermore, omission of a specific view may be indicated. If the description exceeds 100 words, an additional fee of two Swiss francs per word exceeding 100 applies.

Special note for some Contracting Parties: If designating the **Syrian Arab Republic**, you must inclu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reproduction or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design. If designating **China, Romania** or **Viet Nam**, you must inclu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design. If designating the **Russian Federation**, the Office recommends that you inclu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design.

The parts shown by means of broken lines in the reproductions are not part of the claimed design.

.....

.....

.....

.....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11. 범례(10번 항목, Legends)

- 1) 도면별로 해당 코드를 표시한다.
- 2) 해당하는 코드가 없는 경우 코드번호에 '00'을 표시하고 별도의 표현을 기재한다.
- 3) 선택사항이나 중국, 일본, 미국을 지정하는 경우 기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10

Legends(optional) (식별항목)

Recommended, especially when designating **China, Japan** and/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Guidance on Reproductions**.

Associate the number in the margin of the reproduction with the corresponding code:
1 Perspective; **2** Front; **3** Back; **4** Top; **5** Bottom; **6** Left; **7** Right; **8** Reference;
9 Unfolded; **10** Exploded; **11** Cross-sectional; **12** Enlarged; **00** Other (limited to 40 characters)

No. (e.g.1.1)	Code (e.g.2)	Legend (indicate only when code 00 is selected)	No. (e.g.1.1)	Code (e.g.2)	Legend (indicate only when code 00 is selected)
1.1	1		1.2	2	
1.3	3		1.4	4	
1.5	5		2.1	1	
2.2	2		2.3	3	
3.1	2		3.2	3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12. 창작자의 신원(11번 항목, Identity of the Creator)

- 1) 원칙적으로 선택적인 기재사항이지만 지정체약당사자 국내 법령이 창작자의 신원을 요구할 때는 이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IDENTITY OF THE CREATOR⁷
If no industrial design is indicated, it will be understood that the identity of the creator relates to all industrial designs included in the present application.

No. of the design (in numerical order)	Creator's full name	Address	Postal code	City	Country
1	Kim, Changjak	189 Chungsa-ro Seo-gu	35208	Daejeon	Republic of Korea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⁷ If Bulgaria, Finland, Ghana, Hungary, Iceland, Japan, Norway, Republic of Korea, Romania, Serbia, Tajikistan 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designated in item 7, this information is necessary (refer to the Guide, "Identity of the creator").

- 2) 창작자의 신원을 반드시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

- ① 국제출원의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선언하고 이를 WIPO 사무총장에게 통지한 나라를 지정할 때 : 루마니아(Article 5(2)(b)(i))
 - ② 출원인과 11번 항목에 기재된 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그 사실을 WIPO 사무총장에게 통지한 나라를 지정할 때 : 브라질, 핀란드, 가나, 헝가리, 아이슬란드, 모리셔스, 멕시코(Rule 8(1)(a)(i))
 - ③ 국내 법령이 창작자의 서약이나 선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 사실을 WIPO 사무총장에게 통지한 나라를 지정할 때 : 미국(Rule 8(1)(a)(ii))
- ※ 미국을 지정하는 경우, Annex I(창작자 선언서 또는 대체기술서 Oath or Declaration of the Creator)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④ 국내 법령이 창작자의 신원 표시를 요구한다고 WIPO에 통보한 국가를 지정할 때 : 불가리아, 중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세르비아, 타지키스탄, 터키

3) 창작자의 신원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

- ① 루마니아를 지정한 국제출원인이 창작자를 기재하지 않으면 출원일의 연기를 수반하는 하자를 구성한다(G.A. Article 4(2), C.R. Rule 7(4)). 이때는 창작자를 기재하는 보정을 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13. 청구범위(12번 항목, Claim)

- 1) 미국이나 베트남을 지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미국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물품을 기재해야 하고, 베트남의 경우 7번 항목에 베트남을 지정하는 것만으로 선언한 것으로 간주된다.

- 2) 일반적으로 8번 항목의 물품의 명칭을 기재하며, 미국 지정의 경우 대상물품과 창작자 선언서에 서명한 창작자간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창작자 A의 반지 디자인과 창작자 B의 목걸이를 하나의 출원서로 제출한 경우 8번 항목에 “반지(a Ring)”를 기재하고 반지 창작자가 아닌 창작자 B의 서명이 기재된 창작자 선언서를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2	Claim (if applicable) (청구범위) Applicable only when designat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or Viet Nam United States of America⁶ : The ornamental design for a shirt..... as shown and described. Viet Nam: By designating Viet Nam in item 7, the applicant is making the following claim: "Application for overall protection for design(s) as shown and described." 6. Indicate the article in which the design is embodied in or applied to. If multiple designs for the same article are contained in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article should be written in singular form.
-----------	---

14. 우선권 주장(13번 항목, Priority Claim)

- 1) 우선권 주장의 대상

파리협약 제4조에 따라 파리협약 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모든 회원국에서 이루어진 최초 출원을 기초로 주장할 수 있다(G.A. Article 6(1)). 우선권 주장

이 인정되면 지정관청 심사 시 최초 출원일을 우선일로 소급하여 등록여부를 판단한다. 우선권 주장의 개수는 제한이 없으며 복수의 우선권 주장을 할 때 해당 박스에 그 취지를 표시하고 기재 항목을 추가하여 내용을 기재한다.

2) 우선권 주장의 제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전의 일자를 가진 우선권 주장을 하더라도 하자통지 대상은 아니지만, 국제등록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는다(C.R. Rule 15(2)).

3) 주의사항

- ① Annex V 제출이 가능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서류를 국제출원서와 함께 제출 수 없다. 국제사무국은 기재사항 이외의 서류를 파기할 수 있다(C.R. Rule 7(6)). 따라서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면 지정관청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 대한민국, 일본, 중국의 경우, 국제출원서 제출시 Annex V를 통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서류를 출원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② 지정관청은 우선권 증명서류가 필요할 때는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거절이유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정관청이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지와 제출기한 및 비용 등에 관하여 확인하고 필요하면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멕시코의 경우 국제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DAS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교환이 이뤄지더라도 증명서류가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스페인어 번역문 및 우선권 주장 납부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서류가 USPTO에 출원 계속 중인 동안에 제출되어야 하며, 아울러, 발급수수료(제 2의 개별지정수수료)를 지불하는 날 또는 지불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발급수수료가 지불된 후라면, 미국법 (refer to 37 CFR 1.55)에 의거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브라질의 경우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출원서에 DAS 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국제공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브라질 특허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선권 증명서류가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 포르투갈어 번역문 및 국제출원이 선출원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했다는 선언서를 우선권 주장 수수료와 함께 자국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러시아와 터키의 경우 우선권 서류는 반드시 국제등록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각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러시아의 경우 자국 대리인이 아니어도 제출가능하며, 터키는 터키어 번역문과 함께 자국 대리인(local representative)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DAS를 통해 서류제출 가능한 국가는 WIPO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13

Priority Claim (if applicable) (우선권주장)

Indicate the number of each design for which priority is claimed. If no design is indicated, then the priority claim will relate to all designs included in this application.

Brazil, China, Japan, Mexico,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Türkiy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quire submission of priority documents directly to their Offices.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International Application – Item 13.

Office or country of earlier filing (선출원국)	No. of earlier filing (if available) (선출원번호)	Date of earlier filing (day/month/year) (선출원일자)	DAS code (if available) (Refer to Hague Guide for Users, WIPO Digital Access Service – Item 13)	No. of the design (in numerical order) (e.g. design 1, design 2) (디자인번호-순서대로)	Annex V provided (Only if China, Japan or the Republic of Korea is designated)
KR	302020000001	01/01/2022	4A16	1	☐ Yes
US	29/000000	01/01/2022		2	☒ Yes
					☐ Yes
					☐ Yes

By providing this information, the applicant claims the priority of the earlier filing(s) indicated above.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15. 국제전시회 우선권(14번 항목, International Exhibition)

- 파리협약 제11조에 따라 국제전시회에서 전시된 디자인의 일시적인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C.R. Rule 7(5)).

- 2) 출원서 기재사항 : 전시회 장소, 전시회 이름, 최초 전시일자, 국제출원의 디자인 번호 등

※ 국제출원인이 주장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을 특정하지 않으면 국제사무국은 그 주장이 국제출원에 포함된 모든 디자인에 대한 것으로 추정한다.

14 International Exhibition (if applicable) (국제전시회)			
You may benefit from temporary protection for designs exhibited at an international exhibition under Article 11 of the Paris Convention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the Database on Temporary Protection for Designs Shown at International Exhibitions). By providing this information, the applicant claims that one or more designs were shown at an official, or offici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exhibition.			
Place where the exhibition was held (국제전시회 장소)	Seoul, Republic of Korea		
Name of the exhibition(전시회명칭)	Seoul Design Competition		
Date on which products were first exhibited (day/month/year) (전시회일자)	01/07/2023	No. of the design ⁷ (디자인번호-순서대로)	1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7. Indicate the number of each design shown at the exhibition in numerical order. If no design is indicated, it is understood that all designs were shown.

16.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15번 항목,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 1) 대한민국, 일본, 중국에 대해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국제출원인은 그 증명서류를 첨부서류(Annex II)를 통해 제출하거나 해당 지정국 관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5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f applicable) (신규성상실 예외)	
If designating China,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 you may benefit from an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due to prior disclosure.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 International Application – Item 15.	
(a) Contracting Party(ies) concerned:	☐ China ☐ Japan ☒ Republic of Korea
(b) The applicant claims to benefit from exceptional treatment provided for in the design law of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ed, for the following designs contained in the present application.	
☐ all designs, or	
☒ the following designs (e.g. design 1, design 2)	
1.....	
.....	
You must submit supporting documentation via Annex II (see check box below) or directly to the Office concerned	
☐ Check this box if Annex II is attached.	

17. 관련 디자인(16번 항목, Main or Principal Design)

- 1) 중국에 복수디자인을 출원하거나 대한민국과 일본에 국제출원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만 기재한다.

- 2) 중국은 디자인 단일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의 출원서에 하나의 디자인만 출원이 가능하나 같은 물품의 유사한 디자인 또는 세트물품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특히 같은 물품의 둘 이상의 유사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의 수는 총 10개를 넘지 못하며 이때 반드시 하나의 주요디자인(main design)을 지정하여야 한다.
- 3) 일본은 기본디자인이 등록된 날 또는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 대한민국은 기본디자인의 출원 후 1년 이내에 국제출원 할 경우, 관련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6 Main or Principal Design (if applicable) (메인 또는 관련디자인)

If designating **China,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WIPO strongly recommends to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International Application – Item 16.

China: main design
If designating **China**, you may include a maximum of 10 similar designs for the same product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f more than one design is included, you **must** indicate one of them as the **main design**.

The applicant indicates the following design as the **main design** (e.g. design 1): 2.....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principal and related designs
If designating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designs may be registered as related to a principal design

(a) Contracting Party(ies) concerned: ☐ Japan ☒ Republic of Korea

(b) The applicant requests that the following designs contained in the present application be registered as **related designs**:
☐ all design, or
☒ the following designs (e.g. design 1, design 2)
1.....

(c)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incipal design** to which the designs indicated under item (b) are related (Note : The principal design must be subject of an application or a registration with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i) The principal design is the subject of:

☐ the present international application (현 국제출원서에 기본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a prior international application designating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WIPO Reference Number(e.g. 123456789 or WIPO12345) : 한국,일본을 지정하여 선출원된 국제출원에 기본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WIPO 참조번호 기재

☐ a pri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designating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한국,일본을 지정한 선 국제등록에 기본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그 국제등록번호 기재

☐ a prior national application filed with the Office of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Application Number/Applicant's reference: 일본,한국에 선 국내출원된 경우 해당 국내출원번호 기재

☐ a prior national registration at the Office of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gistration Number.: 일본,한국에 기본디자인을 포함한 선 국내등록이 있는 경우 해당 국내등록번호 기재

(ii) If the above national or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registration contains several designs, indicate the number of the design to be considered as the principal design. 3.....

18. 국제등록의 공개(17번 항목,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 1) 국제등록의 공개와 관련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국제출원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이후 국제등록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일반 원칙의 예외에는 즉시공개와 공개시점 지정이 있다(C.R. Rule 17).

〈국제등록의 공개일〉

헤이그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의 일부 필수요건의 하자 발생으로 국제출원일과 국제등록일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제등록일은 국제출원일과 일치한다. 따라서 국제출원인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국제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 공개된다.

2) 즉시공개

- ① 신청 방법 : 국제출원서 해당 항목 박스에 표시한다.
- ② 즉시공개를 신청하면 국제사무국의 방식심사와 국제등록 후 공개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거쳐 공개된다.

3) 지정공개(publication at a chosen time)

- ① 신청방법 : 해당 항목 박스에 표시하고 공개를 원하는 기간을 월 단위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 ②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개월이며 출원일로부터(또는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3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C.R. Rule 16). 다만, 계약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공개연기만 인정하거나 공개연기를 신청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 이런 나라를 포함하여 지정하면 공개연기 기간이 가장 짧은 국가의 연기기간까지 공개연기가 허용된다.
- ③ 공개연기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를 지정하고 하자통지를 받은 후 그 지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제사무국은 공개연기 신청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④ 공개연기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지정한 계약당사자 중 최소한 하나의 국가라도 1960년 개정협정에 따라 규율되면 공개연기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C.R. Rule 16).

〈연기신청이 불가능한 국가〉

– 벨라루스, 벨리즈, 베네룩스, 브라질,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자메이카, 멕시코, 모나코, 노르웨이, OAPI, 폴란드, 러시아, 사모아, 슬로베니아, 수리남, 시리아,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베트남, 1960년 협정만 적용되는 계약 당사자

〈연기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나라〉

– 18개월 미만 허용 : 싱가포르(출원일로부터)

17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optional) (공개시기)

Publication will take place **12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unless the applicant selects one of the options below:

☐

immediate publication (upon recording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즉시공개)

☒

publication at a chosen time : ...**6**..... months from the filing date. (공개시기 선택)

Important: International registrations must be published within **30 months** of the filing date or, where priority is claimed, of the priority date.

- If you designate Belarus, Belize, Benelux, Brazil, Brunei Darussalam, Cambodia, Croatia, Denmark, Estonia, Finland, Hungary, Iceland, Israel, Jamaica, Mexico, Monaco, Norway, OAPI, Poland, the Russian Federation, Samoa, Slovenia, Suriname, Syrian Arab Republic, Ukrain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iet Nam (1999 Act), or **any Contracting Party under the 1960 Act**, the chosen time cannot exceed **12 months**.
- If Singapore is designated, the chosen time cannot exceed **18 months** from the filing date.

19. 이스라엘, 멕시코, 미국 지정수수료 감면(18번 항목, Reduction of Individual Designation Fee)

- 1) 이스라엘, 멕시코, 미국의 지정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선택한다.
- 2) 이스라엘의 경우 수수료 감면은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사유는 자연인, 일정소득 미만의 소기업,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자세한 자격확인으 ILPO사이트를 참조)
- 3) 멕시코의 경우 감면사유는 자연인인 창작자, 극소 또는 소기업, 고등교육기관, 공공 과학기술 연구기관인 경우이다. (자세한 자격확인으 IMPI사이트를 참조)

- 4) 미국의 경우 소기업(Small Entity)은 50%, 극소기업(Micro Entity)은 75% 감면해준다. 소기업과 극소기업의 기준에 대해서는 미국 특허청에서 확인해야 한다. 소기업의 경우 별도 제출서류가 없으나 극소기업으로써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Annex IV를 이용하여 증명서식(미국 특허청 서식 PTO/SB/15A 또는 PTO/SB/15B)을 국제출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18 Reduction of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if applicable) (수수료 감면)
 Applicable only when designating Israel, Mexico and/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heck the applicable boxes :

Israel
☐ The applicant is a natural person, a small entity whose yearly revenue does not exceed the amount set in the Israeli Design Regulations, or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recognized by Israeli law, and no priority is claimed under item 13.
Important: For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a fee reduction, visit the Israel Patent Office website

Mexico
☐ The applicant declares under oath to fall into one of the categories (a creator who is a natural person, a micro or small entity, a public or 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or a public scientific or technological research institute) referred to in the first paragraph of the Fourth General Provision of the Agreement setting forth the fees for services provided by the Mexican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MPI) ; 50 percent reduction of the corresponding amount applies.
Important: Applicants who wish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entitled to micro or small enterprise status should consult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classifica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Spanish).

United States of America
☐ The applicant asserts **small entity**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41(h) of Title 35 of the United States Code and Section 3 of the Small Business Act, and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USPTO).
☐ The applicant certifies **micro entity**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23 of Title 35 of the United States Code and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USPTO.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micro entity certification form** PTO/SB/15A or PTO/SB/15B using Annex IV.
Important: For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micro or small entity status, visit the USPTO website.

20. 국제출원인, 대리인의 서명(19번 항목, Signature)

- 1) 서명은 국제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하고 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2) 서명하는 사람의 성명, 서명일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3) 전자출원을 하는 국제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9 Signature (서명)

The signatory is the :

Applicant	Representative of the applicant*
Full Name ⁹ :	Full Name: Kim, Daeri.....
Date (day/month/year) :	Date (day/month/year): 01/08/2023.....
Signature ¹⁰ :	Signature: (온라인 출원시 생략).....

8. If signed by the representative, item 5 above must be completed.
 9. As indicated in item 1 or 5 above.
 10. Text string signatures (e.g. /John Doe/) are recommended. Signatures may also be handwritten, printed, stamped or in another electronic form (image, digital or computer generated).

21. 수수료 납부(Payment of Fees)

- 1) 공개연기를 신청하고 공개수수료를 나중에 내기를 원하는 국제출원인은 상단의 공개료 납부연기 항목에 표시한다.

2) 당좌계좌 사용(Instruction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at WIPO)

- ① 국제사무국과 국제출원인 사이에 개설된 당좌계좌가 있고 계좌에 수수료 납부에 충분한 잔액이 있으면 기재한다.
- ② 당좌계좌는 주기적으로 국제사무국에 수수료를 내는 국제출원인 등이 개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헤이그 출원 외에도 PCT 및 마드리드 출원과 갱신, 변경 등 WIPO관련 서비스에 두루 이용될 수 있다.
- ③ 해당하는 항목에 그 계좌 관리자의 이름, 계좌번호 및 그 계좌로부터 인출을 지시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다.
- ④ 당좌계좌 사용을 표시한 국제출원인은 항목 4의 납부방법 및 수수료 금액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국제사무국은 그 국제출원에 필요한 수수료를 인출하고 계좌 관리자에게 인출 사실을 통지한다.

* 당좌계좌 개설 및 유지와 관련된 정보는 국제사무국 홈페이지(https://www.wipo.int/finance/en/current_accou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은행계좌 사용(Bank transfer)

- ① 국제출원인이 국제사무국 은행계좌에 국제출원 수수료를 직접 입금한다.
- ② 납부자의 신원(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에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Payment identification에는 그 국제출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HAGUE로 시작+특허청 참조번호 등 식별번호)한다.
- ③ 은행계좌 박스에 표시하고 납부자 신원 및 납부 일자에 입금자 성명과 입금일(또는 입금 예정일)을 기재한다.
- ④ 수수료 총액을 수수료 계산용지의 총계 항목에 스위스 프랑으로 표시한다.

4)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참고자료의 수수료 납부에 관한 설명 참조 (Chapter 2, Section 8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

PAYMENT OF FEES

☐ The applicant has requested deferred publication (more than 12 months indicated under item 17) and wishes to pay the publication fees at a later date. (Note: The publication fee must be paid no later than three weeks prior to the expiry of the deferment period.)

1. Total in Swiss francs (use the Fee Calculator or the Fee Calculation Sheet)(수수료): 947

2. Instruction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at WIPO

WIPO is hereby instructed to debit the required amount of fees from the following Current Account at WIPO (if this item is completed, it is not necessary to complete items 3 or 4 below):

Holder of the account: Account number: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instruction¹¹:

3. Payment already acknowledged by WIPO

This must refer to a payment which you have previously sent to WIPO and wish to use for this application.

Identity of the party which made the payment (full name of the bank account holder):

WIPO receipt number(receipt number of previous payments):

4. Bank transfer

Identity of the party making the payment (full name of the bank account holder)(납부자명): Hong, Gildong

☒ Payment made to WIPO bank account
WIPO,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IBAN No. CH51 0483 5048 7080 8100 0
Swift/BIC: CRESCHZZ80A

Payment identification¹² day/month/year
(참조번호) Hague-kipo123 (납부예정일) 10/08/2023

☐ Payment made to WIPO postal account
(within Europe only)
WIPO, SWISS POST/Postfinance,
Engelbaldenstrasse 37, CH-3030 Bern
IBAN No. CH03 0900 0000 1200 5000 8
Swift/BIC: POFICHB

Payment identification day/month/year

5. Payment made to the Office (applicable to indirect filings only)

☐ Payment made to the USPTO

¹¹ Full name or authorized user name

¹² As indicated in the payment (e.g. Hague-user reference)

22. 수수료 계산용지(Fee Calculation Sheet)

- 1)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수수료 금액을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국제출원서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 2)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수수료 계산기(www.wipo.int/hague/en/fees/calculator.jsp)를 이용하여 계산한 때에는 그 서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때 국제출원인은 해당하는 수수료 총액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5 Section

Hague guide

디자인의 도면 및 견본

1. 도면의 작성 방법

1) 도면의 구성

디자인을 구성하는 물품의 사진 또는 그래픽 표현물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하나의 국제출원에서 사진과 그래픽 표현물 모두를 포함하는 도면을 제출할 수도 있다.

2) 도면 작성 용지

① 서면출원

- i) 도면은 흰색 불투명 용지에 부착하거나 인쇄하여 작성한다.
- ii) 용지는 세로 방향으로 사용하고 한 용지에 25개 이상의 도면을 포함하지 못한다.
- iii) 각 디자인의 둘레는 적어도 5mm(1 pixel ~ 20 pixels)의 여백이 있어야 한다.
- iv) 도면은 접거나 어떤 형태의 표시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온라인 공개를 위한 스캔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 v) 도면에 번호가 매겨지면 안 된다.

② 전자출원

- i) JPEG 또는 TIFF 파일 포맷으로 각 파일이 2MB를 넘지 못한다.
- ii) 각 도면은 CMYK가 아닌 RGB 색상으로 제작한다.

3) 도면의 내용

- ① 디자인에 사용되는 물품 외에 부속물 등을 포함할 수 없다. 사발을 표현할 때 사발은 과일 없이 표현되어야 한다.
- ② 축, 규격, 제목을 보여주는 기술적 도면은 허용하지 않는다.
- ③ 사진으로 표현된 도면은 직각 모서리와 명료한 배경색을 가져야 하고 잉크 또는 수정액으로 사진에 수정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배경에 색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그래픽 표현물은 전문가 수준으로 제도기나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⑤ 도면에 표시된 사항 중 보호를 구하지 않는 사항은 점선, 파선 또는 색채로 표시하거나 설명(Description)란에 기재할 수 있다.

2. 도면의 수 및 번호 매김

1) 도면의 개수

하나의 디자인에 대하여 제출할 수 있는 도면의 수는 제한이 없다. 디자인을 최대한 보호받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표현한 많은 사시도를 포함할 수도 있다.

2) 도면의 번호

- ① 디자인의 각 도면은 여백에 표시된 개별 번호로 특정되어야 한다.
- ② 도면의 번호 매김은 점으로 구분되는 숫자의 일련번호로 한다.
 - i) 하나의 디자인에 대한 여러 도면은 1.1, 1.2, 1.3....
 - ii) 여러 디자인에 대한 여러 도면은 1.1, 1.2..., 2.1, 2.2...
- ③ 도면 제출은 오름차순으로 한다.
- ④ 전자출원(eHague)을 이용하면 도면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3. 도면의 규격 및 품질

1) 도면의 규격

- ① 서면출원 : 각 도면의 크기는 16×16cm를 초과할 수 없고, 하나의 크기는 적어도 3×3cm가 되어야 한다.
- ② 전자출원 : 전자출원에서 제출하는 이미지는 인쇄되었을 때 서면 출원의 규격에 맞게 해상도와 픽셀을 조절해야 한다.

2) 도면의 품질

도면은 디자인의 세부사항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하고 공개 가능한 정도의 품질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미지 파일이 충족되어야 할 기술적 요구사항〉

이미지 형식	JPEG 또는 TIFF
해상도	300 × 300 dpi
최소 크기	3cm × 3cm (300dpi)
최대 크기	16cm × 16cm (300dpi)
최대 파일 크기(파일 1개 당)	2 MB
색	RGB 혹은 흑백(Grayscale)
경계	1에서 20 픽셀 사이(5mm)

4. 견본의 제출

1) 1999년 개정협정에 따른 견본 제출

① 견본 제출의 요건

- i) 1999년 개정협정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출원일 것
- ii) 공개연기 신청을 포함한 국제출원일 것
- iii) 2차원 디자인에 대한 국제출원일 것

② 견본의 수 :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견본 하나와 사본을 받기를 원한다고 통지한 지정국가에 해당하는 수의 견본을 제출(일반적으로 지정국가 수+1개의 견본)한다.

2)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견본 제출

1960년 개정협정이 배타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출원인 때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이는 선택적인 것으로 도면 제출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3) 견본의 요건

- ① 모든 견본은 하나의 포장에 담겨야 하며 견본의 포장은 어느 방향으로든 그 길이가 30cm 이내이어야 하고 무게는 4kg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견본의 크기 및 번호 부여
 - i) 견본을 펼쳤을 때 26.2×17cm를 넘을 수 없고 무게는 50g, 두께는 3mm를 넘을 수 없다.

- ii) A4 용지에 부착하여 오름차순으로 번호를 매겨야 한다.
 - iii) 공개연기를 신청한 국제출원의 공개를 위해 제출하는 도면 번호는 견본 번호와 대응되어야 한다.
- ③ 부패하거나 보관이 위험한 물건은 견본으로 제출할 수 없다.

6 Section

Hague guide

국제사무국 방식심사 및 하자통지

1. 국제사무국의 방식심사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서를 접수하고 국제출원이 요건에 맞는지를 판단한다. 국제출원이 협정 및 규칙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국제사무국은 일정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도록 하자통지를 보낸다.

2. 국제출원의 하자

1) 하자통지 및 보정기간

- ① 국제출원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국제사무국은 하자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도록 국제출원인에게 통지한다(C.R. Rule 14(1)).
- ② 하자 보정 기간의 기산일은 국제사무국이 하자통지서를 발송한 날이다. 또한, 하자 보정 기간은 국제출원인이 하자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날이므로 보정 기간 이내에 보정서가 접수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하자통지의 유형

- ① 출원일의 연기를 수반하는 하자(C.R. Rule 14(2))
- ② 자기지정 금지에 관한 하자(C.R. Rule 14(3))
- ③ 계약당사자가 통지한 특별요건 등에 관한 하자
- ④ 수수료 미납 등 기타 요건의 하자

3) 출원일의 연기를 수반하는 하자

- ① 출원일의 연기를 가져오는 하자는 공통규칙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하자가 있는 국제출원은 그 하자에 대한 보정서를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C.R. Rule 14(2)).

② 출원일을 연기시키는 하자의 내용

- i) 규정된 언어로 작성되지 않은 국제출원
- ii) 국제출원에서 다음 사항이 누락되었을 때
 -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표시
 - 국제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 국제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충분한 표시
 - 국제출원에 포함된 디자인의 도면 또는 견본
 - 계약당사자 지정

③ 하자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국제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본다. 이때 국제사무국은 납부된 국제출원 수수료 중 기본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국제출원인에게 반환한다(C.R. Rule 14(3)).

4) 자기지정 금지에 관한 하자

1999년 개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계약당사자가 자기지정을 금지하는 선언을 하면 국제사무국은 그 지정을 무시한다(G.A. Article 14(3)). 우리나라는 자기지정을 허용하므로 이런 종류의 하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5) 추가적인 필수내용에 관한 하자

① 하자통지의 대상(G.A Article 5(2))

- i) 창작자의 신원에 관한 표시 누락(루마니아)
- ii) 디자인의 도면 또는 특색에 관한 설명 누락(중국, 루마니아, 시리아, 베트남)
- iii) 청구범위(미국, 베트남)

② 하자통지의 효과

- i) 국제사무국이 하자통지에 따른 보정서를 접수한 날 또는 출원일 중 늦은 날이 국제등록일이 된다.
- ii) 규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이 없으면 그 계약당사자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6) 국제출원인의 특별요건에 관한 하자

- ① 공통규칙 Rule 8(1)에 따라 디자인 출원은 반드시 창작자의 이름으로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국가(브라질, 핀란드, 가나, 헝가리, 아이슬란드, 모리셔스, 멕시코)를 지정한 때에는 창작자 표시가 필수사항이다.

② 규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이 없으면 그 계약당사자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7) 수수료 미납 등 기타 요건의 하자

위 3), 4), 5)에 해당하지 않는 하자로 수수료 미납 등의 경미한 하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제출원인은 하자보정 기간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3. 하자통지 대응

1) 하자통지의 대응방법

가. 기간 준수 : 국제사무국 하자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서가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나. 하자통지 대응 방법

i) 하자통지 대응은 일정한 서식이 없으며 서신이나 Contact Hague(<https://www3.wipo.int/contact/en/hague/>)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출원(eHague)을 이용해 출원한 경우에는 E-Filing Communications를 통해 바로 하자 보정이 가능하다.

ii)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간접출원)의 경우, 하자통지서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무국으로 직접 해야 한다. (contact hague>hague system document upload service 이용하여 파일 업로드)

iii) 하자통지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하자통지서에 기재된 연락처(전화 또는 E-mail)나 Contact Hague를 통해 가능하다.

iv) 수수료 미납인 때에는 WIPO 홈페이지의 E-Payment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내거나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내고 납부사실을 서신으로 통지할 수 있다.

7 Section

Hague guide

국제등록 및 국제등록의 공개

1. 국제등록

1) 국제등록의 의의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이 협정 및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면(수수료 납부 포함) 국제등록부에 디자인을 등록(이를 ‘국제등록’이라 함)하고 그 증명서를 국제출원인(대리인)에게 보낸다.

2) 국제등록의 내용

- ①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국제등록부에 기재된다. 다만, 우선권 주장의 선출원일이 국제출원일보다 6개월 전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디자인의 도면
- ③ 국제등록일
- ④ 국제등록번호
- ⑤ 국제사무국이 결정한 국제분류의 관련 류

3) 국제등록일

- ① 원칙적으로 국제출원의 제출일이 국제등록일이 된다.
- ② 예외적으로 협정 제5조(1)(2)에 따른 하자(채약당사자가 선언한 추가적인 필수 기재사항에 관한 하자)에 대한 보정이 있으면 국제출원일과 국제등록일이 달라질 수 있다.

4) 국제등록은 국제출원의 공개연기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사무국의 방식 심사가 종료된 후 국제등록부에 기록된다.

5) 국제등록은 그 자체로 지정한 채약당사자 영역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제등록 이후 국제공개 시점에 보호를 구하기 위하여 지정한 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정관청의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국제출원이라고 볼 수 있다.

2. 국제 공개

1) 공개의 의의

- ① 국제사무국의 공개를 통해 지정된 모든 계약당사자 영역에서 공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헤이그 국제출원의 특징이다. 이러한 공개를 모든 계약당사자 영역에서의 충분한 공개로 간주하므로 국내 또는 지역에서 별도 공개를 위한 권리자(국제출원인)의 행위가 필요 없다.
- ② 계약당사자가 원한다면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공개(자국어 번역 등)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하여 국제출원인에게 별도의 수수료 또는 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2) 공개의 방법 및 내용

- ① 공개는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되고 국제디자인공보의 공개는 WIPO 웹사이트(www.wipo.int/hague/en/bulletin)에서 이루어진다.
- ② 공보에는 국제등록에 관한 정보는 물론 거절, 무효, 소유권 변경, 경정, 갱신 등에 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 ③ WIPO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면 공개된 날에 각 지정관청에 국제출원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3) 공개 주기 : 공보는 주 단위로 공개된다.

4) 공개 시기

- ① 국제등록의 공개는 일반적으로 국제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이다.
- ② 국제등록 공개의 예외는 즉시공개와 지정공개의 두 가지가 있다.

3. 즉시공개

- 1) 즉시공개는 국제등록의 공개는 국제등록일로부터 12개월 되는 날 된다는 일반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 2) 국제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서 즉시공개를 신청하고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부에 디자인을 등록한 후 즉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즉시”의 개념은

국제사무국이 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포함한 개념이다. 국제출원서가 국제출원의 요건에 모두 맞으면 2-3주 이내에 공개된다.

- 3) 즉시공개 신청이 있으면 국제등록일이 속하는 주의 다음 공개일에 즉시 공개된다. 즉, 등록 후 공개까지 1주일의 시차가 필요하므로 5월 첫째 주에 국제등록부에 등록되면 5월 둘째 주에 발표되는 공보에 공개된다.
- 4) “즉시공개”를 하는 이유는 빠른 공개가 국제출원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는 때 신청한다. 예를 들어 계약당사자 국내 법령이 디자인 등록은 공개된 이후에만 권리 행사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거나(예 : 손실보상청구 등) 지정된 계약당사자 영역에서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할 때 “즉시공개”가 국제출원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4. 지정공개(publication at a chosen time)

- 1) 지정공개는 국제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출원일로부터 특정 개월을 지정하여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지정공개는 표준공개기간(12개월)보다 앞선 기간 또는 그 이후 기간(공개연기)을 지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지정공개는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후부터 지정 가능하며, 공개연기는 국가마다 허용여부 및 가능기간이 다르므로 출원시 지정국가별 공개연기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공개연기 신청의 결과

- ① 공개연기를 신청한 경우 국제출원 수수료 중 공개료는 출원할 때 내지 않아도 된다.
- ② 1999년 협정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출원은 2차원 도면 대신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공개를 위해서는 연기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공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연기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공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제등록은 취소된다. 국제사무국에서 만료기간 3개월 전 납부 안내서를 발송하지만 이를 받지 못했더라도 국제등록 취소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3) 연기기간

- ① 1960년 협정에 따른 계약당사자 지정 : 최장 12개월
- ② 1999년 협정에 따른 계약당사자 지정
 - i) 연기기간 관련 선언이 없는 계약당사자 지정 : 최장 30개월
 - ii) 연기기간을 30개월보다 짧은 것으로 선언한 계약당사자 지정 : 선언에서 통지된 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이 만료하는 때
- ③ 1999년 협정에 따라 공개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계약당사자를 지정한 때
 - i) 도면이 첨부된 때 : 국제출원인의 연기 신청이 지정계약당사자 국내 법령과 일치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철회가 없으면 공개연기 신청이 없는 것으로 본다.
 - ii) 견본이 첨부된 때 : 해당 계약당사자에 대한 지정을 무시하고 그 사실을 국제출원인에게 통지하다.
- ④ 1960년 개정협정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출원의 연기 기간은 최장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연기기간 중의 신청 및 비밀사본 제공

- ① 조기공개 신청

국제등록에 포함된 디자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공개(연기기간 만료 이전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신청이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날 연기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 ② 초본 제공 또는 열람 신청

일정한 요건에 따라 권리자(국제출원인)는 국제등록의 초본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을 허용하도록 국제사무국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포기 또는 감축

공개연기 기간 중에도 권리자(국제출원인)는 국제등록을 포기 또는 감축할 수 있다. 포기되거나 감축된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포기 또는 감축신청은 공개연기기간 만료 3주 전까지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 ④ 비밀사본의 제공
 - i) 심사관청인 계약당사자 관청이 공개가 연기된 국제등록의 사본을 받기

원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하면 국제사무국은 그 사본을 첨부서류와 함께 지정관청에 보낸다.

- ii) 심사관청은 접수한 국제등록이 공개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고 오직 다른 디자인 출원의 심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iii) 즉, 심사관청은 후출원이 미공개 국제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면 그 후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선출원인 국제등록된 디자인에 대한 최종 결정 시까지 심사절차를 보류하기 때문이다. 헤이그 시스템에 의한 국제등록인 후출원에 대하여도 국제등록의 효력을 거절할 수 있다.

8 Section

Hague guide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

1. 특허청에 내는 수수료

1) 송달료 : 계약당사자 관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을 제출하는 때에는 국제출원인이 관청의 행정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G.A. Article 4(2)).

① 전자문서로 출원하는 때 : 5,000원

② 서면으로 출원하는 때 : 15,000원

2) 보정료 등 : 국제출원의 절차 보정 시 내는 금액이며 국내 출원 수수료와 같은 기준 및 방법으로 낸다.

2. 국제사무국에 내는 수수료

1) 국제사무국에 내는 수수료는 국제출원인이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국제사무국이 관리하는 계좌에 스위스 통화로 직접 내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다(C.R. Rule 28(1)).

2) 내야 할 수수료의 종류

① 국제출원 수수료 : 기본료, 공개료, 표준(개별) 지정수수료

〈표준수수료 및 지정수수료 금액 확인〉

각 계약당사자의 표준 지정수수료 수준은 국제사무국 홈페이지 및 국제출원서(DM/1)에 첨부된 국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국제출원 갱신료

③ 기타 기록변경 신청 수수료

- 명의변경,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명칭변경), 포기 또는 감축의 신청

④ 국제등록에 대한 정보 제공 수수료

i) 국제등록의 초본 제공

ii) 국제등록 서류에 있는 내용의 인증/미인증 사본 제공 등

구 분					금액(CHF)
국제출원	기본료	1개의 디자인			397
		추가되는 디자인 당			19
	공개료	공개될 하나의 도면마다			17
		1면을 초과하는 도면 당(서면출원)			150
	지정 수수료	표준지정 수수료	제1수준	1디자인	42
				추가디자인	2
			제2수준	1디자인	60
				추가디자인	20
			제3수준	1디자인	90
				추가디자인	50
개별지정수수료				국가별 지정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는 경우 단어당				2	
국제등록 갱신	기본료		1개의 디자인	200	
			추가되는 디자인 당	17	
	지정 수수료	표준지정 수수료	1개의 디자인	21	
			추가되는 디자인 당	1	
		개별지정수수료			
	가산료(period of grace)				기본료*50%
기록변경 신청	명의 변경				144
	권리자 성명/주소 변경		1개의 디자인	144	
			추가되는 디자인 당	72	
	포기				144
	감축				144
정보제공 등	공개된 국제등록의 초본 제공				144
	국제등록의 미인증 사본 제공		첫 다섯 면	26	
			다섯 면 초과 1면 당	2	
	국제등록의 인증 등본 제공		첫 다섯 면	46	
			다섯 면 초과 1면 당	2	
	견본의 사진 제공				57
	국제등록의 서면 정보 제공		1개의 국제등록	82	
			추가 국제등록	10	
	국제등록의 권리자 목록 검색		1인에 대한 첫 검색	82	
첫 검색을 초과한 발견			10		

3) 납부기한

가. 공개연기 신청이 없는 국제출원 : 수수료 납부기간과 관련하여 협정은 국제출원을 출원하는 때에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ule 12(2)). 다만,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국제사무국의 방식심사 시점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면 하자통지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공개연기 신청을 한 국제출원은 공개료를 제외한 수수료를 내고 공개료를 공개연기 기간 만료 전 3개월까지 낸다(C.R. Rule 16(3)).

다. 갱신료 : 국제등록의 갱신 수수료는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납부 가능하나 3개월 이전에 납부할 경우 수수료 변동이 발생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 갱신료는 늦어도 국제등록 갱신 만기일에는 납부되어야 하며 만기일까지 내지 못한 때에는 만기일에 유효한 수수료에 가산료를 포함하여 만기일 후 6개월까지 낼 수 있다(C.R. Rule 24(1)).

4) 수수료 납부 통화 : 스위스 통화(스위스 프랑)

5) 납부방법

①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당좌계좌에서 인출 지시

- i) WIPO에 사전에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예치금 입금
- ii) 수수료 계산용지에 당좌계좌에서 인출하도록 국제사무국에 지시
- iii) WIPO 전자납부서비스(E-payment)에서도 당좌계좌 인출 지시 가능
- iv) 당좌계좌에서 인출을 지시하는 때에는 수수료 납부서에 수수료 총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국제사무국이 적절한 금액을 인출하고 인출내용을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② WIPO 은행계좌 입금

- i) 국제출원서 수수료 납부서에 기재된 WIPO 은행계좌에 입금
- ii) 입금 시 송금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국제출원인이 부담하여야 함
- iii) 송금인 정보를 수수료 납부서에 기재한 납부자 신원과 일치하도록 기재하고 정보란이 있으면 국제등록번호 또는 특허청 참조번호 등에 Hague 출원임을 함께 표시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출원(등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수료 하자 발생 가능성 있음〉

수수료 납부서에 기재한 납부자 신원과 송금인 정보가 다르면 국제사무국이 납부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수수료 하자통지를 받을 우려가 있다.

③ 우편환 계좌 이용 : 유럽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국내 출원인은 사용할 수 없다.

④ 신용카드 납부

i) 국제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서비스(E-Payment)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ii) 전자납부 서비스(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 국제출원서를 WIPO eHague로 제출하거나
- 수수료 하자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의 WIPO 참조번호로 내거나
- 국제등록의 갱신료를 국제등록번호로 낼 때 가능

3. 수수료의 반환 등 기타 절차

1) 국제출원서가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이후 협정에 따른 하자통지 때문에 포기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수수료의 일부 반환이 발생할 수 있다.

2) 수수료 반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협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환급 금액 및 시기 등에 대하여는 국제사무국의 재무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WIPO홈페이지에서 환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https://www3.wipo.int/finance/en/refund.jsp>).

3) 또한, 수수료를 낸 후 국제등록 이전에 취하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국제등록 이후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면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 취하의 의사표시는 비공식적 절차이므로 개별적으로 국제사무국에 통지

9 Section

Hague guide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국제등록의 변경신청)

1. 절차 개요

국제등록과 관련한 각종 변경신청은 계약당사자 관청을 거쳐 제출할 수 없으며 국제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사무국에 신청하는 각종 변경신청은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공식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C.R. Rule 21(1)).

〈국제출원 및 국제등록 관련 서식〉

서식	서식명칭
DM/1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 (국제출원서)
DM/2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소유권 변경의 기록 신청서)
DM/3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limitation (감축의 기록 신청서)
DM/4	Renewal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governed exclusively or partly by the 1999 Act and/or the 1960 Act (1960년 또는 1999년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의 갱신)
DM/5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renunciation (포기의 기록 신청서)
DM/6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name and/or address of the holder(권리자 성명/주소 변경의 기록 신청서)
DM/7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대리인 선임)
DM/8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name and/or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대리인 성명/주소 변경의 기록 신청서)
DM/9	Cancellation of recording of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대리인 선임 기록의 취소)

2. 소유권 변경(A change in ownership)

1) 소유권 변경 신청

- ① 계약, 판결, 상속 또는 회사의 합병 등 그 원인을 묻지 않고 모든 형태의 변경을 원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소유권 변경은 국제등록 디자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정체약당사자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③ 소유권 변경의 기록과 그 변경의 유효성 문제는 구별된다. 즉, 소유권 변경에 관하여 국내 법령이 특별한 형식이나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 그 효력은 체약당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양수인 자격

- ① 양수인은 소유권이 변경되는 지정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국제출원인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어야 한다(C.R. Rule 12(2)).
- ② 양수인이 1999년 개정협정과 1960년 개정협정 모두에 기속되는 자격을 가지는 때에는 모든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협정에만 해당하는 자격을 가질 때에는 해당하는 협정에 기속되는 체약당사자에 대해서만 소유자가 될 수 있다.
- ③ 이러한 결과는 해당 국제등록에 적용되는 협정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1960년 개정협정에 배타적으로 기속되는 국제출원인이 1960년 개정협정과 1999년 개정협정에 모두 기속되는 체약당사자를 지정하고, 그 국제등록이 1999년 협정에 배타적으로 기속되는 체약당사자와 관련된 양수인에게 이전되면 그 국제등록은 새로운 권리자의 체약당사자와 지정체약당사자 사이에 공통되는 1999년 개정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소유권 변경에 따른 협정 적용의 문제

① 거절통지기간

거절통지기간 중 소유권 변경이 일어나고, 적용되는 협정이 달라져도 소유권 변경의 기록은 지정된 체약당사자의 거절통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 1960년 개정협정이 적용되는 국제등록이 소유권 변경으로 1999년 개정협정이 적용되더라도 양수인에 대한 거절통지 기한은

1999년 개정협정의 기간(12개월)이 아닌 1960년 개정협정의 기간(6개월)이 적용된다.

② 공개연기

거절통지기간과 마찬가지로 1999년 개정협정에 따라 12개월 이상의 공개연기가 신청된 국제등록이 1960년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양수인에게 이전되더라도 그 이전은 공개연기 기간(1960년 개정협정에 따르면 공개연기의 최대 기간은 12개월임)을 단축하지 못한다.

③ 개별 갱신료

적용되는 협정이 달라지는 결과 지정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개별 갱신료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1999년 개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계약당사자에 대해서는 갱신 단계에서 개별 갱신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1960년 개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계약당사자에 대해서는 개별 갱신 수수료의 규정이 없으므로 새로운 권리자는 개별 갱신료를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다.

④ 복수의 자격을 가지는 양수인

양수인이 1999년 개정협정과 1960년 개정협정에 모두 기속되는 자격을 가지면 해당 계약당사자 지정은 가장 최근의 협정인 1999년 협정이 적용된다.

4) 신청서의 제출

① 원칙적으로 권리자(양도인)가 서명하고 제출한다(C.R. Rule 21(1)(6)).

② 다만, 다음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양수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i) 권리자가 서명하였거나,

ii) 새로운 소유자가 서명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권리자의 승계인이라는 취지의 증명서류(양도증, 합병증명서, 법원결정문, 명의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5) 신청의 내용

① 소유권의 전부 변경에 관한 신청(국제등록에 포함된 모든 디자인을 이전하는 때)은 하나의 신청서에서 여러 국제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일부 변경에

관한 신청(국제등록에 포함된 여러 디자인 중 일부를 이전하는 때)은 하나의 국제등록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 ② 새로운 소유자가 여러 명이고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연락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연락주소가 없으면 국제사무국은 처음 기재된 소유자의 이메일 주소를 연락주소로 취급한다(A.I. 301, 302).
- ③ 전부에 대한 변경이 아니면 해당하는 디자인의 번호와 지정계약당사자를 표시해야 한다.
- ④ 제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서명인의 신원이 표시되어야 한다.

5) 대리인 선임

새로운 소유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별도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DM/7)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C.R. Rule 3(1)).

6) 신청의 하자

- ① 신청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권리자(양도인)에게 하자통지를 하고 새로운 소유자(양수인)가 제출한 때에는 그 제출인에게도 통지한다.
- ② 하자는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치유하여야 하며, 기간 이내에 치유하지 않으면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본다.
- ③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볼 때는 국제사무국이 권리자와 새로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납부된 수수료는 반액을 감액하고 반환한다.

7) 일부 변경 및 병합의 번호 매김

- ① 디자인의 일부 또는 지정계약당사자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변경은 기존 국제등록 번호와 대문자를 함께 표시하여 국제등록부에 기록한다(C.R. Rule 21(7)).
- ② 소유권의 일부 변경으로 같은 사람이 둘 이상인 국제등록의 권리자가 되면 신청에 따라 병합될 수 있다. 이 경우 병합된 국제등록은 기존 국제등록 번호를 가지며 대문자를 함께 표시한다(C.R. Rule 21(8)).

8) 기록의 통지 및 공개

- ① 소유권 변경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면 국제사무국은 그 사실을 새로운 권리자(양수인)와 이전 권리자(양도인) 모두에게 통지한다(C.R. Rule 21(6)).

② 소유권 변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제등록의 공보에 공개한다.

9) 지정계약당사자가 하는 소유권 변경의 효력 없음 통지

- ① 협정 제16(2)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관청이 명시한 기술서나 증명서를 받을 때까지 계약당사자 영역에서 효력을 부인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즉, 계약당사자 국내 법령에 따라 일부 이전의 금지 또는 특정한 조건에 따른 이전만을 허용할 수도 있다(공유자, 한 벌 물품 등). 이 경우 해당 관청은 그러한 변경이 해당 계약당사자 영역에서 효력이 없다고 선언할 수 있다(C.R. Rule 21bis(2)).
- ② ①에 따른 선언은 소유권 변경 공개일 또는 가능한 거절 기간 중 늦게 만료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통지되어야 한다. 국제사무국에 통지되는 내용에는 소유권 변경이 효력이 없는 이유, 관련 법 규정, 관련된 디자인, 이의신청 대상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사무국은 이러한 선언을 국제등록에 반영하고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통지한다.
- ③ 관청은 ②에 따른 통지를 철회할 수 있고 국제사무국은 이러한 사실을 양수인과 양도인에게 통지하고 국제등록부를 수정한다.

3.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A change in name and/or address of the holder)

1) 성명 및 주소의 변경 신청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은 공식 서식 DM/6을 사용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2) 변경신청의 내용

- ① 같은 권리자의 여러 국제등록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제출원 후 국제등록번호 생성 전(심사 중 또는 국제등록번호의 미통지 등의 사유)까지는 신청할 수 없다.
- ② 신청서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기재하면 된다. 즉, 성명만 변경된 때에는 다른 항목은 공란으로 두고 변경된 성명만 기재한다.

- ③ 이메일 주소만 변경된 때는 공식 서식을 사용할 필요없이 contact hague로 통지할 수 있고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④ 권리자가 다수이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 기존 연락주소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연락주소를 변경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연락주소를 공란으로 두면 기존의 연락주소는 무시된다.

3) 변경신청의 하자 및 기록

- ① 성명 및 주소변경 신청의 하자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처리 방식은 소유권 변경에 대한 하자와 같다.
- ② 신청에 하자가 없으면 국제사무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로 변경사항을 기록한다.
- ③ 권리자가 국제등록이 갱신된 이후 기록되도록 신청하면 국제사무국은 이에 따라 국제등록의 갱신 이후 변경 사실을 기록한다(C.R. Rule 21(6)).

4. 국제등록의 포기(A Reunciation)

1) 국제등록의 포기

국제등록의 포기는 국제등록의 대상인 모든 디자인에 대하여 지정계약당사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식 서식 DM/5를 사용하여 신청한다.

2) 포기의 신청 내용

- ① 같은 지정계약당사자에 대하여 여러 국제등록을 포기할 때는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다만, 국제출원 후 국제등록번호 생성 전(심사 중 또는 국제등록번호의 미통지 등의 사유)까지는 신청할 수 없다.
- ② 포기는 지정계약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고 포기하는 지정계약당사자를 신청서에서 표시해야 한다.

3) 포기 신청의 하자 및 기록

- ① 포기신청의 하자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처리 방식은 소유권 변경에 대한 하자와 같다.

- ② 신청에 하자가 없으면 국제사무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로 변경사항을 기록한다. 포기 신청을 할 때도 권리자는 다른 변경 기록과 연동하여 처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5. 국제등록의 감축(A Limitation)

1) 국제등록의 감축

국제등록의 감축은 지정계약당사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에 포함된 하나 또는 일부 디자인으로 감축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식 서식 DM/3으로 신청한다.

2) 감축의 신청 내용

- ① 감축은 하나의 국제등록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 ② 감축하는 디자인의 표시는 더는 보호가 필요없는(감축으로 영향을 받는) 각 디자인 번호를 표시한다.

3) 감축 신청의 하자 및 기록

- ① 감축신청의 하자에 대한 국제사무국의 처리 방식은 소유권 변경에 대한 하자와 같다.
- ② 신청에 하자가 없으면 국제사무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로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공개한다.

6. 국제등록의 경정(A Correction)

- 1) 국제등록에 오류가 있으면 국제사무국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국제등록의 내용을 수정하고 이를 권리자와 관련 지정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한다(C.R. Rule 22(1)).
- 2) 경정을 신청하는 공식 서식은 없으며 권리자가 국제사무국에 서신으로 요청할 수 있다.
- 3) 다만, 계약당사자는 경정에 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을 선언으로 통지할 권리를 가진다.

10 Section

Hague guide

국제등록의 갱신

1. 국제등록의 갱신

1) 1999년 개정협정에 따른 갱신

국제등록은 최초 5년 동안 효력을 가지고 추가 5년의 기간으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갱신을 포함하여 최소 15년의 보호기간을 가진다. 다만, 계약당사자 국내 법령이 15년 이상의 보호를 허용하면 국제등록은 그 보호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5년의 기간 단위로 추가 갱신할 수 있다(C.R. Rule 17(3)).

2)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갱신

국제등록은 최초 5년 동안 효력을 가지고 추가 5년의 기간으로 1번에 갱신될 수 있다. 따라서 갱신을 포함하여 최소 10년의 보호기간을 가진다. 다만, 계약당사자 국내 법령이 10년 이상의 보호를 허용하면 국제등록은 그 보호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5년의 기간 단위로 추가 갱신할 수 있다.

3) 각 계약당사자 영역에서의 보호기간

계약당사자는 국내 법령이 제공하는 보호의 최장 존속기간을 WIPO 사무총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국제사무국이 발송하는 비공식 만료 통지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장 존속기간을 국제등록일로부터 20년까지로 국제사무국에 통보하였다.

2. 특수한 국제등록의 갱신

1) 보호기간 만료 후의 갱신

권리자는 지정계약당사자 영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국제등록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리자는 수수료의 납부와 함께 그 갱신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진술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이는 계약당사자 법령의 변경

(존속기간이 늘어난 때)이 있으나 아직 WIPO에 통지되지 않은 때에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C.R. Rule 24(2)(b)).

2) 거절이 통지된 국제등록의 갱신

거절이 통지된 계약당사자에 대해서도 국제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와 함께 그 취지를 진술하여 첨부한다. 이는 통지된 거절에 대한 사법 또는 행정절차가 계류 중이거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어 종국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때에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C.R. Rule 24(2)(c)).

3) 무효 또는 포기·감축된 국제등록의 갱신

무효는 그 정의상 더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국제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는 포기 및 감축된 국제등록에 대하여도 갱신을 신청할 수 없다(C.R. Rule 24(2)(d)).

3. 갱신의 절차

1) 비공식 통지

국제사무국은 각 5년의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권리자와 대리인에게 최장 보호기간과 만료일을 표시한 비공식 통지서를 발송한다. 다만, 권리자가 이러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은 갱신료 미납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C.R. Rule 23).

2) 일부 갱신

국제등록의 갱신은 지정계약당사자 일부 또는 디자인 중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3) 신청 내용

- ① 갱신과 관련된 공식서식은 없으며 갱신에 필요한 표시(국제등록번호와 수수료 납부 사실의 표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통지로 할 수 있다.
- ② 다만, 국제사무국은 권리자의 편의를 위하여 비공식 서식 DM/4를 제공한다.
- ③ 전자갱신 인터페이스(E-Renewal)
 - i) 서면에 의한 신청 대신 WIPO 홈페이지에서 전자갱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 ii) 여러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각기 다른 디자인의 갱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iii) 갱신 수수료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즉시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갱신 수수료

1) 갱신 수수료

- ① 갱신료는 기본수수료와 지정수수료(표준 및 개별)로 구성된다.
- ② 개별지정수수료는 1999년 개정협정이 적용되는 국제등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갱신 수수료 납부

- ① 원칙적으로 수수료는 국제등록의 만기일까지 내야 한다.
- ② 국제등록 만기일 이후 6개월까지는 수수료표에서 정한 할증액(가산료)을 포함한 금액을 내야 한다.
- ③ 만기일 전 3개월보다 일찍 내면 만기일 전 3개월 시점에 낸 것으로 본다. 이는 수수료 납부일과 갱신 만기일 사이에 수수료가 변경된 때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3) 갱신 수수료의 변경에 따른 적용

- ① 만기일 3개월 전에 납부된 때에는 만기일 3개월에 납부된 것으로 보고 만기일 3개월 전 시점에 유효한 수수료가 적용된다(C.R. Rule 27(6)).
- ② 만기일 3개월 이후 만기일까지 납부된 때에는 납부일 시점에 유효한 수수료가 적용된다(C.R. Rule 27(6)).
- ③ 만기일 이후 납부된 때에는 만기일에 유효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4) 갱신 수수료 미납에 따른 처리

- ① 납부한 금액이 갱신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이 사실을 관리자와 대리인에게 통지한다(C.R. Rule 24(3)).

- ② 만기일 후 6개월 시점까지 납부된 금액이 갱신에 필요한 금액(할증액을 포함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갱신을 기록하지 않고 납부된 금액을 반환하며 그 사실을 권리자와 대리인에게 통지한다(C.R. Rule 24(3)).
- ③ 납부한 금액이 부족한 때에는 권리자가 부족한 금액을 내는 대신 지정계약 당사자 또는 디자인 중 일부를 갱신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부족한 수수료를 내야 할 기간(만기일 이후 6개월까지)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갱신의 기록 및 공개

- 1) 수수료가 기한 이내에 납부되면(만기일 후 6개월까지 포함) 만기 일자로 갱신을 국제등록부에 기록하고 공보로 공개한다.
- 2) 갱신이 기록되면 국제사무국은 갱신 증명서를 권리자에게 보낸다.
- 3) 권리자가 갱신 수수료를 내지 않았거나 낸 수수료가 부족하여 국제등록의 갱신이 없으면 이전 보호기간의 만료일부터 국제등록의 효력이 없고 국제사무국은 그 사실을 공보로 공개한다.

III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 (국내절차, 지정관청)

1. 국제등록의 효과
2. 거절 통지(Notification of Refusal)
3. 보호부여(Grant of Protection)
4. 주요국 국내 절차 등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 Section

Hague guide

국제등록의 효과

1. 국제등록의 개념

- 1) 국제등록이란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국제출원서가 출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헤이그 협정에 따라 국제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말한다.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을 접수한 즉시(보정이 필요한 때에는 보정서를 접수한 즉시)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을 등록한다.
- 2) 헤이그 협정은 국제등록에 대하여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그 효과는 체약당사자 지정이 1999년 개정협정에 기속되는지 혹은 1960년 개정협정에 기속되는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2. 1999년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의 효력

1) 정규 출원으로서의 효력

국제등록은 지정된 각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그 체약당사자 국내 법령에 따른 정규 출원과 적어도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 결과 공개된 국내(지역) 출원에 잠정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모든 체약당사자는 공개된 국제등록에도 같은 정도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2) 보호부여의 효력

- ① 보호거절을 통지하지 않은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국제등록은 그 체약당사자 국내 법령에 따라 보호가 부여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 ② 체약당사자가 법률에 따른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국제등록은 늦어도 거절통지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의 만료일부터 효력이 있다.
- ③ 보호부여의 효력은 지정관청이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접수한 디자인에 대하여 또는 관청에서 보정이 있으면 그 보정된 대로 해당 디자인에 발생한다.

3) 보호부여의 효력일

- ① 일반적으로 거절통지 없이 거절통지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보호부여의 효력이 있다.
- ② 심사관청이거나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체약당사자 관청은 거절통지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대체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C.R. Rule 18(1)(b)). 우리나라는 심사등록출원(1류, 2류, 3류, 5류, 9류, 11류, 19류를 제외한 나머지 류)은 12개월, 일부심사등록출원(1류, 2류, 3류, 5류, 9류, 11류, 19류)이면 6개월의 거절통지기간이 적용된다.

〈6개월을 12개월로 대체한다는 선언을 한 국가〉

* 캐나다, 중국, 북한,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자메이카, 일본, 키르기스스탄, 리투아니아, 멕시코, 대한민국,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스페인, 시리아, 튀르키예, 미국

4) 국제등록의 보호기간

- ① 지정체약당사자 영역에서 최소 존속기간은 15년이다. 국제등록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고 추가로 5년의 기간 단위로 두 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 ② 지정체약당사자 국내 법령이 15년을 초과하는 보호기간을 허용하면 국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5년에 대한 추가 갱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등록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보호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의 효력

1) 보호부여의 효력

1960년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지정체약당사자가 6개월의 거절통지기간 이내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국제등록은 유효한 것이 된다.

2) 보호부여의 효력 발생일

- ① 거절통지가 없고 체약당사자 국내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제등록은 거절통지기간의 만료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체약당사자 국내 법령에서 기간 만료일보다 앞선 날을 인정할 수도 있다.

- ② 또한, 신규성 심사를 하는 계약당사자 국내 법령에 따라 국제등록일보다 늦은 날 보호가 개시되면 보호기간은 그 개시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③ 보호거절이 통지된 후 거절이 철회되거나 거절통지 없이 보호부여 기술서가 통지된 때에도 위의 원칙에 따른다.

3) 국제등록의 보호기간

- ① 보호의 최소 존속기간은 10년이다.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은 최초 5년의 보호기간을 가지며 5년의 추가기간에 대해 한 번 갱신될 수 있다.
- ② 계약당사자 국내 법령이 10년을 초과하는 보호를 허용하면 국제등록은 국내 법령이 허용하는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5년의 기간 단위로 추가 갱신될 수 있다.

2 Section

Hague guide

거절 통지(Notification of Refusal)

1. 거절의 개념

- 1) 거절은 지정관청의 최종 결정(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이 아니라 보호가 거절되어야 하는 이유를 표시하기만 하면 된다.
- 2) 헤이그 협정에 따른 보호거절은 거절통지기간 이내에 통지하는 잠정적인 거절이유에 불과하므로 국제출원인이 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국내 법령에 따라 거절이유 치유를 위한 대응 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G.A. Article 12(3)).
- 3) 거절이유는
 - ① 관청의 직권심사에 따른 거절이유 또는,
 - ② 제3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른 거절이유가 있을 수 있다.
- 4) 이의신청에 따른 보호거절은 반드시 “이의신청에 기초한 보호거절”로 국제사무국에 통지되어야 한다.

2. 거절통지의 이유

1) 거절의 범위

계약당사자는 그 영역 안에서 보호를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보호의 거절은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G.A. Article 12(1)).

2) 실체적 등록요건 위반인 경우에만 거절 가능

- ① 계약당사자 관청은 협정 등에 규정된 형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 즉, 수수료 부족, 도면의 품질 등의 형식적인 요건의 확인은 국제사무국의 전권사항이다.
- ② 또한, 도면은 서식에 관한 요건(번호 매김 등)을 이유로 거절하지 못하고 디자인의 외관이 도면에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다는 실체적인 이유로 거절해야 한다.

- ③ 이러한 일반원칙의 예외로는 ‘디자인 단일성’ 과 ‘특정 도면제출’을 선언한 경우이며 체약 당사자 관청은 이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다.

3) 단일성 부족에 기초한 거절통지

① 국제등록의 분할 가능성 통지

지정관청에서 단일성 부족을 이유로 거절통지를 하면 국제출원인은 그 거절 이유 해소를 위해 국제등록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청은 그 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해야 한다(G.A. Article 13(3), C.R. Rule 18(3)).

〈 디자인 단일성 선언을 한 국가〉

* 브라질, 중국, 에스토니아, 키르기스스탄, 멕시코, 루마니아, 러시아, 시리아, 타지키스탄, 미국, 베트남

② 분할통지의 내용(A.I. Section 502)

- i) 분할통지를 하는 관청
- ii) 관련 국제등록번호
- iii) 분할의 대상인 디자인 번호
- iv) 분할에 따른 국내 출원 또는 등록번호

3. 거절통지의 기한

1) 기한의 의의

거절통지는 규정된 기간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통지되어야 하고 기한 만료 후에 발송된 거절통지는 국제사무국이 인정하지 않는다(C.R. Rule 19(1)).

2) 거절통지의 기한은 원칙적으로 공개일로부터 6개월이나 체약당사자 관청이 심사관청이거나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관청이면 6개월을 12개월로 대체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C.R. Rule 18(1)).

3) 12개월의 거절통지 기한

1999년 협정 체약당사자 중 심사관청이거나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체약당사자로서 국제사무국에 선언한 체약당사자인 때 12개월 거절통지 기한이 적용된다.

4) 거절통지 기한의 판단은 관청이 통지를 발송한 날이다(A.I. Section 501).

가. 우편발송 : 우편 소인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편물의 소인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전에 발송된 것으로 보고 이 날짜가 거절일 또는 통지서에 언급된 날짜보다 빠른 때에는 늦은 날을 발송일로 의제

나. 배달 서비스 : 배달 서비스에 기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거절통지의 절차

1) 거절통지는 하나의 국제등록만을 대상으로 하고 통지를 하는 관청이 서명하고 날짜를 부여한다(C.R. Rule 18(2)). 따라서 복수디자인 출원 중 여러 개의 디자인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하나의 통지서에 모든 디자인에 대한 거절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2) 통지의 내용

① 통지서에 기재되는 정보

- i) 통지를 하는 관청명
- ii) 국제등록번호
- iii) 법령의 근거 조항 및 거절의 기초가 되는 모든 이유
- iv) 선행 디자인과 유사한 것이 이유이면 그 디자인에 관한 모든 정보(단, 디자인의 도면은 공개 가능할 때만 첨부)
- v) 일부 디자인에 대한 거절이면 그 디자인의 표시
- vi)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면 그 절차 및 그에 관한 정보
- vii) 거절이 선언된 날짜

② 거절의 기초가 되는 모든 이유의 명시

- i) 관청은 거절의 기초가 되는 모든 이유를 명시해야 하지만, 거절통지 이후의 절차에서 국제출원인의 대응 등으로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의 통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 ii) 따라서 관청은 불복청구 절차에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불복청구 절차에서 국제출원인에게 그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3) 거절통지의 기록 및 공개

- ① 국제사무국이 거절통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제사무국은 그 거절을 국제등록부에 기록하고 공보로 공개한다.
- ② 국제사무국은 거절통지의 사본을 국제등록 관리자에게 보낸다.

4) 거절통지의 언어

거절통지는 통지하는 관청의 선택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통지될 수 있다. 관리자는 관청이 통지한 언어대로 사본을 받는다.

5. 하자있는 거절통지

- 1) 지정관청의 심사 결과로 발송한 거절(이유)통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국제사무국이 거절통지로 보지 않거나 하자 있는 통지로 보고 보정을 요구한다.

2) 거절로 보지 않는 통지(C.R. Rule 19(1))

- ① 거절로 보지 않는 통지는 국제등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 ② 거절로 보지 않는 사유
 - i) 국제등록번호 누락 (거절 통지에 포함된 다른 표시로 국제등록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ii) 거절이유의 표시가 없는 거절통지
 - iii) 거절통지기간을 지나서 발송한 거절통지

③ 거절통지의 처리

거절로 보지 않는 통지라도 그 사본을 관리자에게 보내서 지정관청의 잠재적인 거절이유에 대한 정보를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계약당사자 관청에 거절통지가 국제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과 그 이유를 통지한다.

〈국제등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통지의 발송〉

거절통지로 보지 않는 통지일지라도 국제등록의 관리자는 계약당사자 영역에서의 잠재적인 거절이유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즉, 관청이 인용한 것과 유사한 이유로 제3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자가 내용을 미리 알고 대응할 준비를 할 수 있다.

3) 하자 있는 통지(C.R. Rule 19(2))

① 하자 있는 통지의 유형

- i) 관청의 서명이 없거나 시행세칙에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통지
- ii) 거절이유가 선행 디자인의 유사성에 관련될 때는 선행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통지
- iii)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의 요건 및 그 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통지
- iv) 거절이 선언된 날짜를 표시하지 않은 통지

② 하자 있는 통지의 처리

- i) 국제등록부에 거절을 기록하고 그 사본을 권리자에게 통보한다.
- ii) 권리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관청에 거절통지를 정정하도록 요청한다.

③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 기간의 오류에 따른 관청의 정정

거절통지의 하자가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 기간의 미기재(또는 오류) 때문이고 이와 관련한 관청의 정정이 있으면 국제사무국은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에 관한 새로운 기간을 명시하고 새로운 기한의 만료일을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6. 거절통지 이후의 절차

1) 구제절차의 진행

- ① 거절통지를 받은 권리자는 그 거절통지를 한 관청에 직접 출원을 한 것과 같은 권리와 구제방법(재심사 또는 불복청구 등)을 가진다(G.A. Article 12(3)).
- ②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현지 대리인이 필요하면 해당 국가의 법령과 실무에 따라 선임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절차 및 비용 등은 전적으로 해당 계약당사자 국내 법령에 따른다.

2) 거절통지의 철회

- ① 국제출원인의 구제절차 진행 결과에 따라 해당 관청은 거절통지를 철회할 수 있다(C.R. Rule 18(4)).
- ② 거절통지의 철회는 보호부여기술서의 형태로도 할 수 있다.

* 거절통지의 철회 및 보호부여기술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설명을 참고

3 Section

Hague guide

보호부여(Grant of Protection)

1. 보호부여기술서의 의의

- 1) 보호부여기술서는 거절통지기간 이내에 거절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거절통지 후 그 거절이유가 해소되어 계약당사자 관청이 국제등록된 디자인이 계약당사자 영역에서 보호되는 효과가 있다는 선언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 2) 거절통지기간 이내에 거절통지를 하지 않은 관청이 보호부여기술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거절통지기간 만료일부터 국제등록된 디자인은 당연히 보호된다.
- 3) 계약당사자 관청이 거절통지 이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 거절을 철회하려면 철회의 통지 대신 보호부여기술서를 보낼 수 있다(C.R. Rule 18bis(2)).

2. 보호부여기술서의 내용 및 형식

- 1) 보호부여기술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C.R. Rule 18bis(1)).
 - ① 통지하는 관청
 - ② 국제등록번호
 - ③ 보호부여의 대상인 디자인 또는 보호부여의 대상이 아닌 디자인의 명시
 - ④ 지정국 국내법에 따라 보호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
 - ⑤ 기술서를 발행한 날짜
- 2) 국제등록부 기록 및 공개
 - ① 국제사무국은 모든 보호부여기술서를 국제등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권리자에게 통보한다.
 - ② 보호부여기술서는 모두 공보에 공개된다.

- 3) 보호부여기술서를 복사할 수 있다면 국제사무국은 그 문서의 사본을 권리자에게 전달한다(C.R. Rule 18bis(3)).

3. 수수료 납부

- 1) 디자인 보호의 효력은 개별 지정수수료의 분할 납부를 선언한 지정계약당사자에 대해서는 두 번째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2) 수수료 납부 방법

두 번째 부분의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직접 낼 수 있으면 관청에 내거나 국제사무국을 통해 낼 수 있다.

- 3) 수수료 미납의 효과

기한 이내에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계약당사자에 대한 국제등록이 취소된다.

4 Section

Hague guide

주요국 국내 절차 등

1. 헤이그 국제출원에 대한 실체심사

1) 헤이그 국제출원제도의 보호요건에 대하여

국제등록에 대하여 국제출원서에서 지정한 계약당사자 영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개별 계약당사자 국내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즉,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는 보호요건에 관하여 통일화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당사자 국내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2) 계약당사자 관청에 의한 심사절차

① 따라서 헤이그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려는 국제출원인은 자신의 디자인이 특정 국가에서 보호되는지와 개별 국가의 심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간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수적이다. 아래에서는 주요 국가의 디자인 보호대상 및 심사절차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② 헤이그 협정 가입국의 국내 법령 및 지정관청의 주요 심사기준 등에 대하여 WIPO의 국가정보 사이트를 이용하면 최신 정보를 구할 수 있다.

(<http://www.wipo.int/hague/en/members/profiles/>)

2. 주요 국가별 제도설명

1) 미국

① 우선권주장

원칙적으로 우선권 주장과 증명서류의 제출은 계약당사자 국내 법령이 정한 기간 이내¹⁾에 되어야 한다. 다만, 심사절차에서 우선일과 출원일 사이의 공지 디자인이 발견되면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1) 미국의 경우는 심사결정 전 / 수수료 납부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② 심사

미국 심사는 디자인의 특허성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다.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1차 심사통지서를 발송하고 만약 그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등록결정을 한다.

③ 거절이유와 대응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그 거절이유를 기재한 거절이유통지서를 발송한다. 통상 2~3개월의 답변서/보정서 제출 기간이 부여되고, 연장도 가능하다.

④ 등록 및 보호승인의 효력

헤이그협정을 통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미국은 2단계 수수료를 선언하였다. 따라서 국제등록의 보호를 위한 2차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등록된다. 보호 승인의 효력은 미국 특허청이 디자인 특허를 발행한 날부터 시작된다.

2) 유럽연합

① 우선권 주장

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 우선권을 주장하여야 하며 국제출원서의 우선권 주장에 대한 형식요건 심사는 국제사무국에서 수행한다. EUIPO는 우선권을 심사하거나 증명서류를 요청하지 않는다.

② 재외자의 대리인

공동체 영역 내에 주소나 진정하고 실효적인 공업상/상업상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가거절통지에 대응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③ 심사

EUIPO는 두 가지 형식적인 사항(디자인의 정의, 도덕원칙 등)을 심사하고, 디자인의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지 않는다. 심사 결과 출원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2개월의 대응 기간(기간연장 가능)을 정하여 하자통지서를 보낸다. 출원인은 기간 이내에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하고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④ 보호 승인의 효력

거절통지가 없으면 국제등록일자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일본

① 심사주의

일본은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사관이 실제적인 내용을 심사하는 심사주의 국가이다. 심사는 형식요건뿐만 아니라 실제요건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심사한다.

②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은 출원할 때에만 가능하고 출원 후에는 추가할 수 없다. 우선권 주장을 한 국제출원인은 우선권 주장증명서류를 국제등록출원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심사를 진행한다.

③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출원일 이전 12개월 내에 공개된 자기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을 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출원시 Annex II를 통해 국제출원서와 함께 국제사무국으로 제출할 수 있다. 통상의 공개건에 한하여 신규성 예외주장을 할 수 있으며 일본 관청에 국제등록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일본내 대리인을 통해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④ 관련디자인 제도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서 등록하고 있다. 관련디자인은 변형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 관련디자인을 표시하거나 보정으로 관련디자인 출원으로 변경해야 한다.

⑤ 심사절차

일본에 주소, 거소,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연장 가능)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⑥ 보호 승인의 효력

국제등록은 일본에 디자인 권리가 설정된 날로부터 보호 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4) 중국

① 심사주의

중국은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사관이 실제적인 내용을 심사하는 심사주의 국가이다. 심사는 형식요건뿐만 아니라 실체요건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심사한다.

② 우선권 주장

출원서에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중국 특허청은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우선권주장이 불인정 되는 경우 국제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우선권 주장을 한 국제출원인은 우선권 주장증명서류를 국제등록출원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중국 정부가 후원하거나 인정하는 국제전시회에 전시 또는 지정된 학술대회 또는 기술회의에서 처음으로 출판된 경우 공개된 자기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을 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출원시 Annex II를 통해 국제출원서와 함께 국제사무국으로 제출하거나 중국 특허청에 국제등록 공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중국내 대리인을 통해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④ 심사절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기간 연장 가능)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보호 승인의 효력

국제등록은 중국 국내법에 따라 보호가 승인된 날로부터 보호 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IV

참고자료

1. 특허청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2. WIPO 전자출원 (eHague) 사용 방법
3. 로카르노 국제분류
4. 헤이그 국제출원제도 FAQ
5. 헤이그협정 가입국 목록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 Section

Hague guide

특허청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1. 전자출원 개요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특허청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1) 통합서식작성기(PKEAPS)

특허청에서 자체 개발한 서식작성 프로그램으로, 국제출원서(DM/1)뿐만 아니라, 국내절차(심사·등록·심판) 관련 서식의 작성을 지원한다. 헤이그 국제출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서식의 작성 및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① 수리관청 서식

i)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 국제출원서 등 :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 이용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국제출원서(DM/1), 도면, 창작자선언서(Annex 1) 등을 첨부하며, 통합작성기에서 모두 작성 및 첨부 가능

– 국제출원보정서 : 국제출원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할 때 이용

– 대체서류 : 대체서류제출 요청에 대한 대체서류를 제출할 때 이용

ii) 국제출원 취하서 : 특허청에 제출한 국제출원을 취하할 때 이용

* 단, 취하서는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발송하기 전까지만 제출 가능

iii)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 견본 또는 기타 증명서류 등을 제출할 때 이용

② 지정관청 서식

지정관청에 제출하는 중간서류 등의 서식은 기존 국내출원의 서식을 공통으로 이용한다.

2.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및 설치

1) 특허로 접속 및 통합서식작성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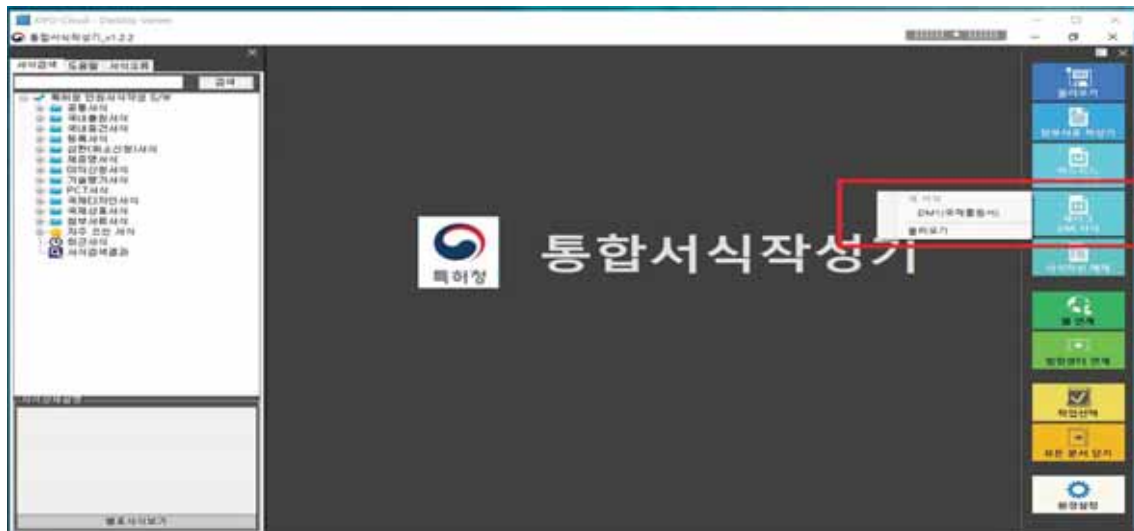
특허로 서비스 이용이 처음이라면 최상단의 ‘처음이신가요?’를 클릭하여 안내 정보에 따라 먼저 특허고객등록절차를 진행한다. 이미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라면 하단의 ‘전자출원SW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통합설치 또는 개별설치를 통해 통합서식작성기(PKEAPS)를 설치한다.



3. 국제출원서 작성

1) 통합서식작성기(PKEAPS) 실행

아래 화면은 작성기의 초기화면이며, 헤이그 국제출원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측에 있는 ‘헤이그 DM 서식’을 클릭하여 ‘DM/1(국제출원서)’을 작성한다.



2) DM/1 서식 작성 및 주요 메뉴

‘DM/1(국제출원서)’ 초기화면으로 주요 업데이트 또는 공지사항이 팝업으로 안내되니 작성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아래 주요 메뉴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서식을 작성한다.



- ① 불러오기 : 기존에 작성된 DM/1 서식(*.DMZ 파일)을 불러와서 수정할 수 있다.

- ② PDF저장(임시파일) : PDF 저장은 임시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특허청에 제출되는 파일이 아니므로 PDF파일을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③ 제출파일 : 특허청에 제출할 파일(*.DMZ)의 생성을 위한 기능으로 DM/1 서식의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클릭한다.
- ④ 도면첨부 : 도면첨부뿐만 아니라 물품정보 및 도면의 범례까지 작성할 수 있는 ‘디자인 정보 작성’화면이 열린다. DM/1 서식의 6번 항목 기재 시에도 동일하게 열리며, DM/1의 11번 항목(창작자정보)을 먼저 입력한 후에 작성 가능하다는 메시지 창이 먼저 뜬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3)디자인 및 도면 관련 내용 작성’을 참조한다.
- ⑤ 첨부파일 : DM/1 서식에 첨부되는 첨부서류(Annex)*를 첨부할 수 있다.
- * Annex I (창작자선언/대체기술서), II(신규성예외선언증명서류), III(보호적격에 관한 정보), IV(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 V(우선권증명서류)
- ⑥ 가이드 : 특허청에서 발간한 본 책자의 전자파일로 출원서 작성뿐만 아니라 헤이그 제도·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 ⑦ 작성예시 : DM/1 서식 작성화면 좌측에 바로 ‘작성예시’ 파일을 열어 각 항목의 기재요령과 주의사항을 참조할 수 있다.

[작성예시 vs. DM/1 서식 작성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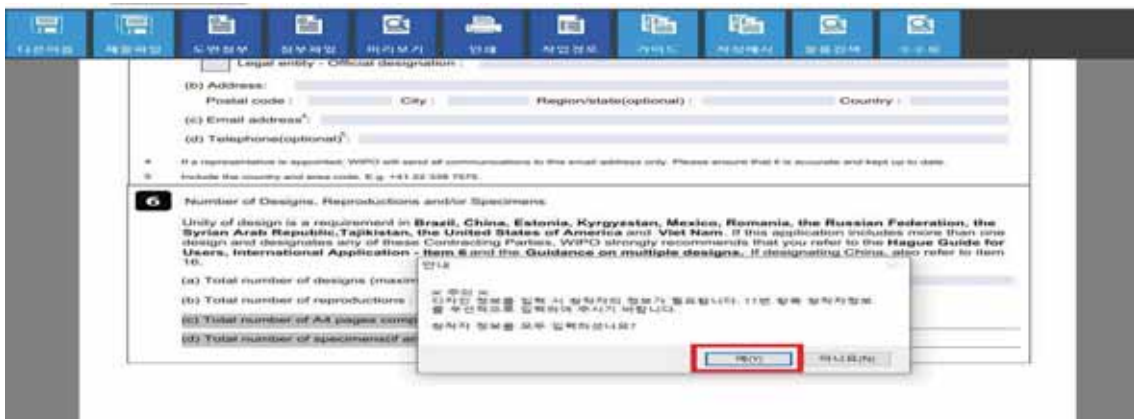
⑧ 물품검색 :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디자인분류코드’로 이동하여 물품 명칭에 따른 로카르노 분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⑨ 수수료 : WIPO의 수수료계산 사이트로 이동한다.

3) 디자인 및 도면 관련 내용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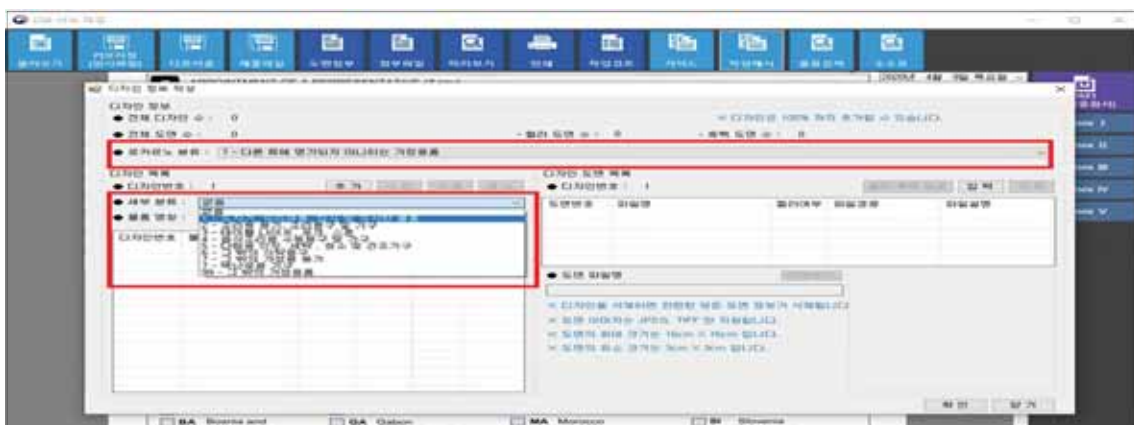
DM/1 서식의 각 항목을 순서대로 작성하다 보면, 6번 항목(디자인·도면 또는 견본의 수)에 이르렀을 때 11번 항목(창작자 정보)을 우선적으로 작성하라는 안내창이 뜬다. 이 때 11번 항목 작성을 완료한 후 팝업창에서 ‘예’를 클릭하면 ‘디자인 정보 작성’ 창이 열리게 된다.

[DM/1 서식 6번 항목 작성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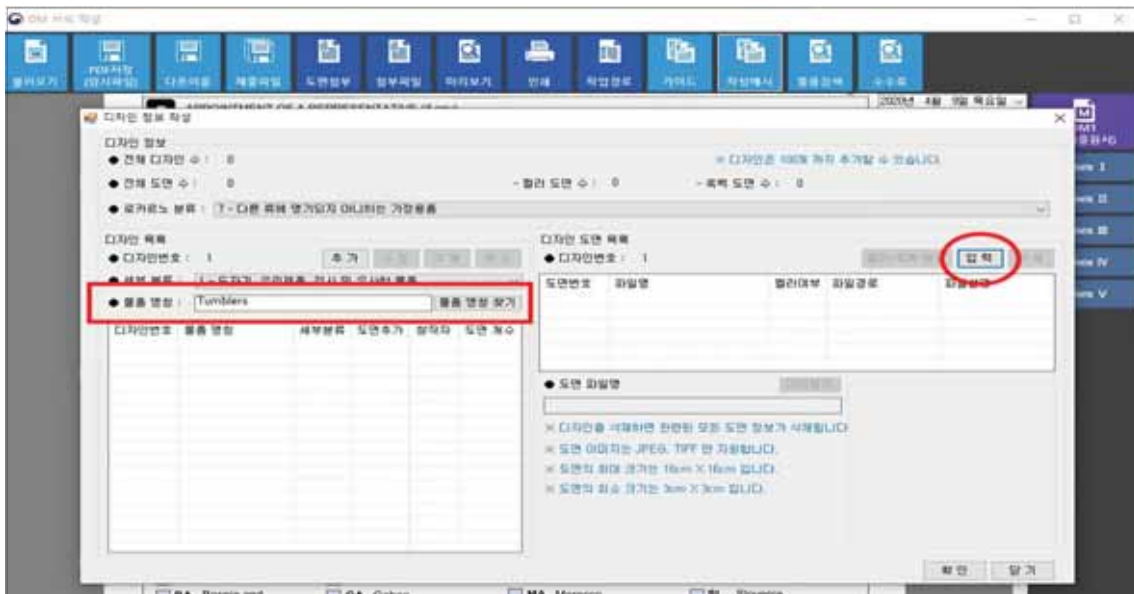
세부 분류는 선택사항이며, 물품 명칭은 우측의 ‘물품 명칭 찾기’를 클릭하여 항목을 선택하거나, 공란에 직접 입력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는 방법이 있다.

[물품 명칭과 로카르노 분류 작성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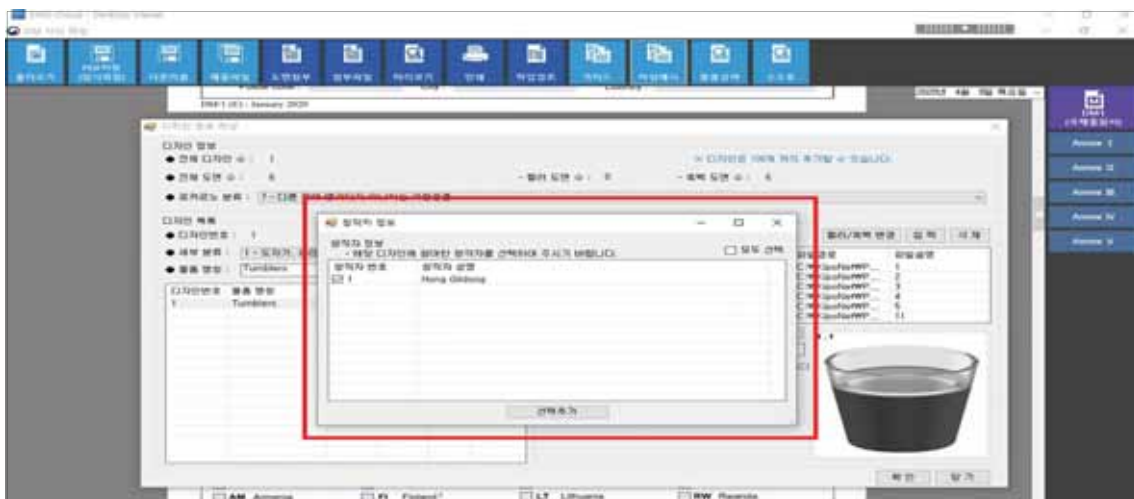




‘물품 명칭’을 완료한 후 ‘입력’을 클릭하면 도면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창이 추가로 나타난다. 도면을 추가할 디자인을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 업로드 한다. 이때 도면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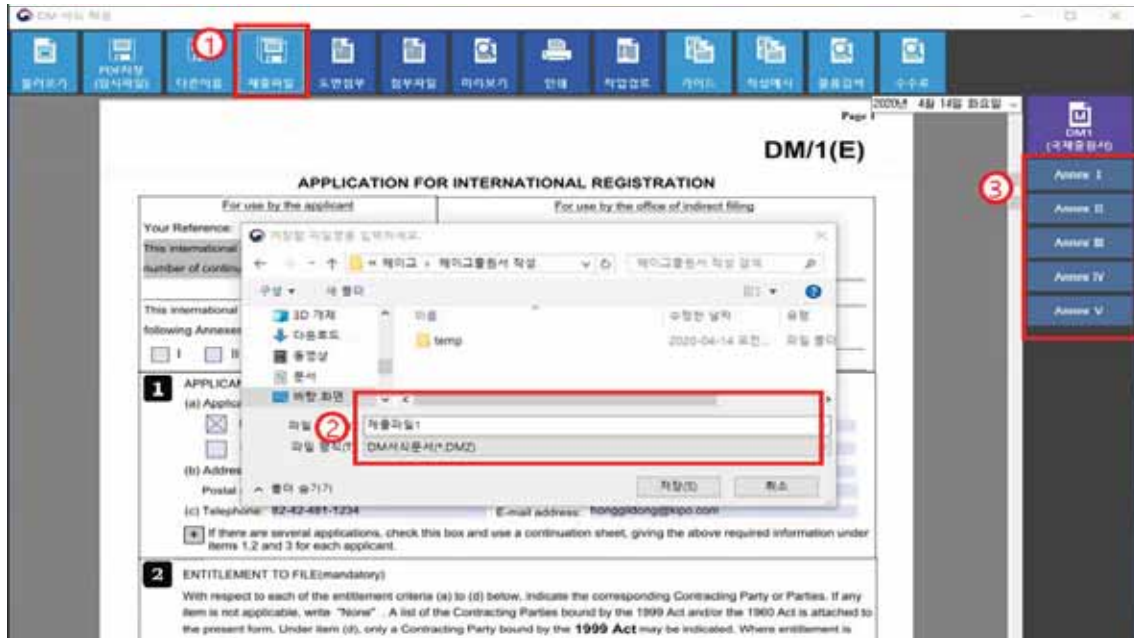
모든 도면의 저장이 완료되면 ‘창작자 정보’ 창이 나타나 해당 디자인번호를 선택하고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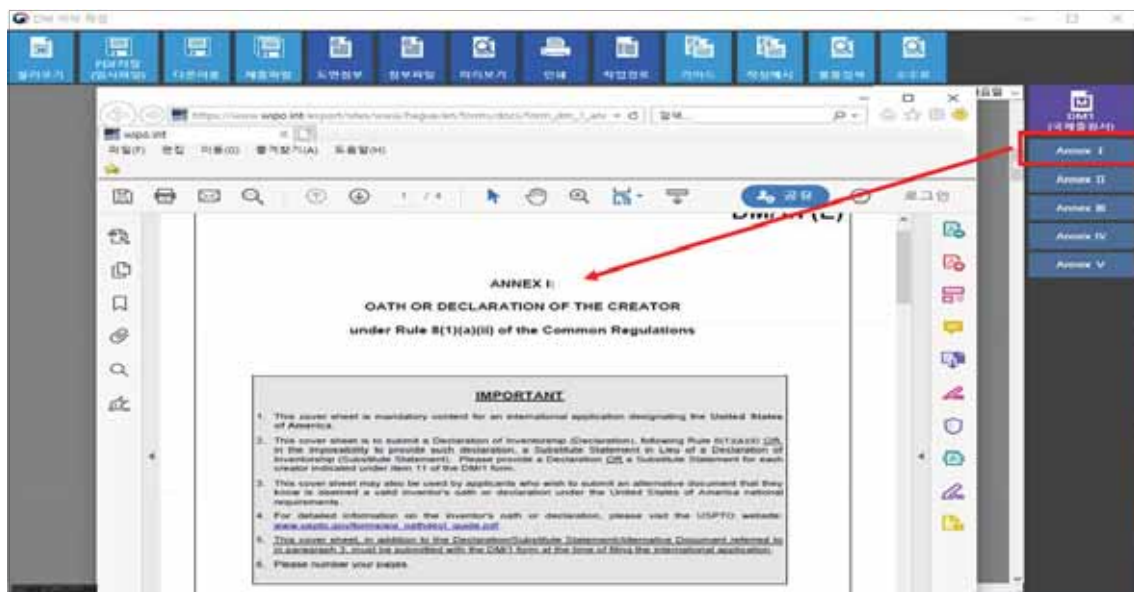
※ 각 도면의 범례를 선택하여 파일을 첨부하게 되면 8번 항목(물품 명칭과 분류) 및 10번 항목(범례)이 자동 입력된다.

4) DM/1 제출파일 생성 및 Annex 서식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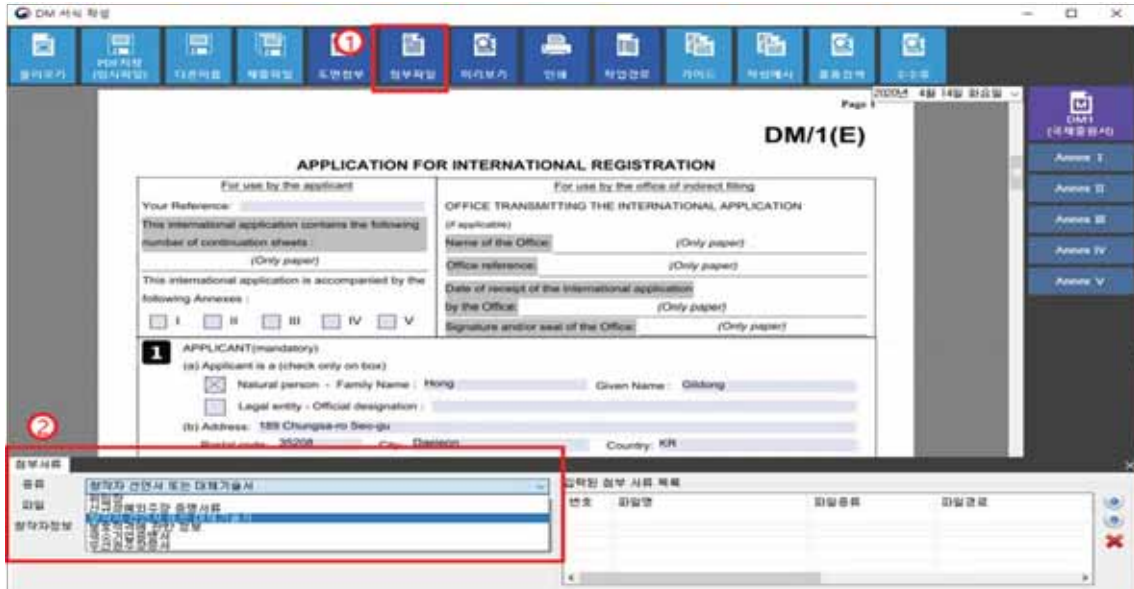
DM/1 서식의 모든 항목을 작성 한 후 ‘제출파일’을 선택하면 특허청에 제출되는 DMZ파일이 생성된다.



이후, 우측에 있는 각각의 Annex를 클릭하면 해당 서식이 있는 WIPO의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된다. 필요한 Annex를 작성한 후 PDF 파일로 저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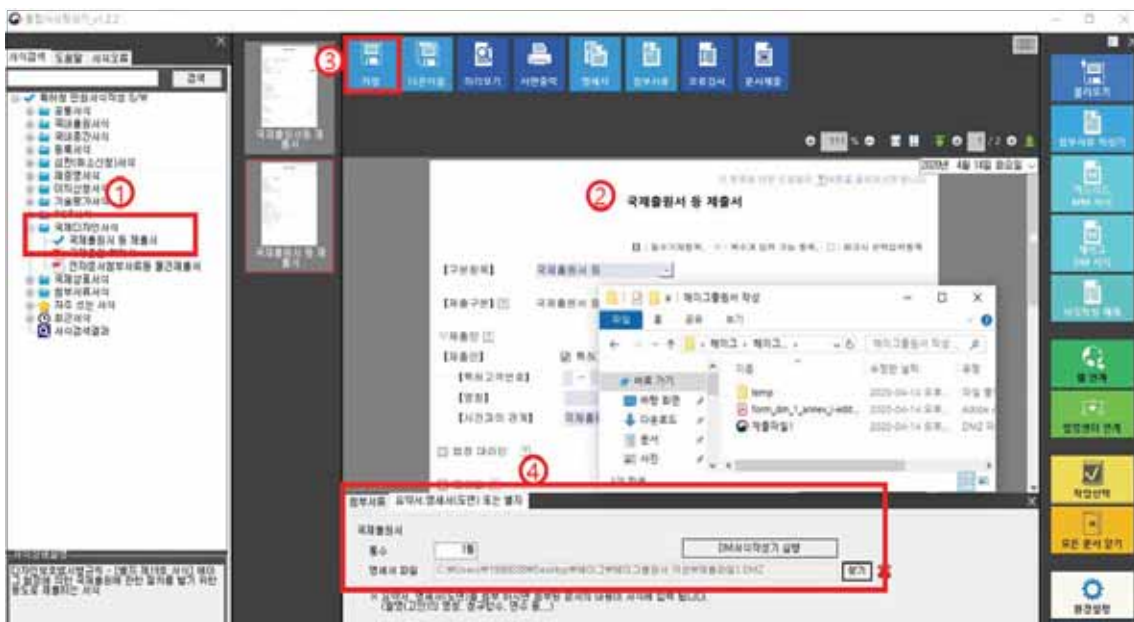


상단 메뉴 중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하단의 ‘첨부서류’ 창이 나타난다. 이때 반드시 첨부할 Annex 파일의 항목을 선택하여 첨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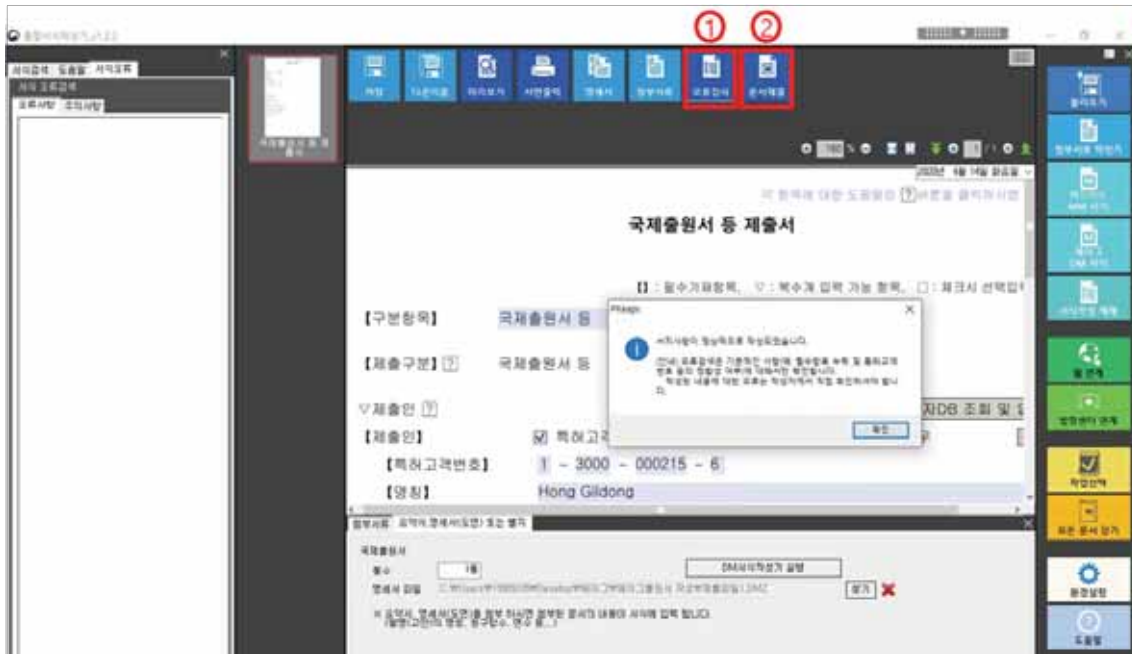
5)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작성 및 DMZ파일 첨부

DM/1 서식 작성과 Annex 서식의 첨부가 모두 완료되면 작성기의 초기화면으로 돌아와 ‘국제디자인서식’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를 선택하여 각 항목을 작성한 후 저장한다. 하단의 ‘첨부서류’에는 필요에 따라 특허청에 제출할 위임장 및 기타 서류를 첨부하고, ‘요약서, 명세서(도면)또는 별지’에는 DMZ파일을 첨부한다. 참고로, DMZ파일에는 DM/1 작성파일, Annex 및 도면이 함께 저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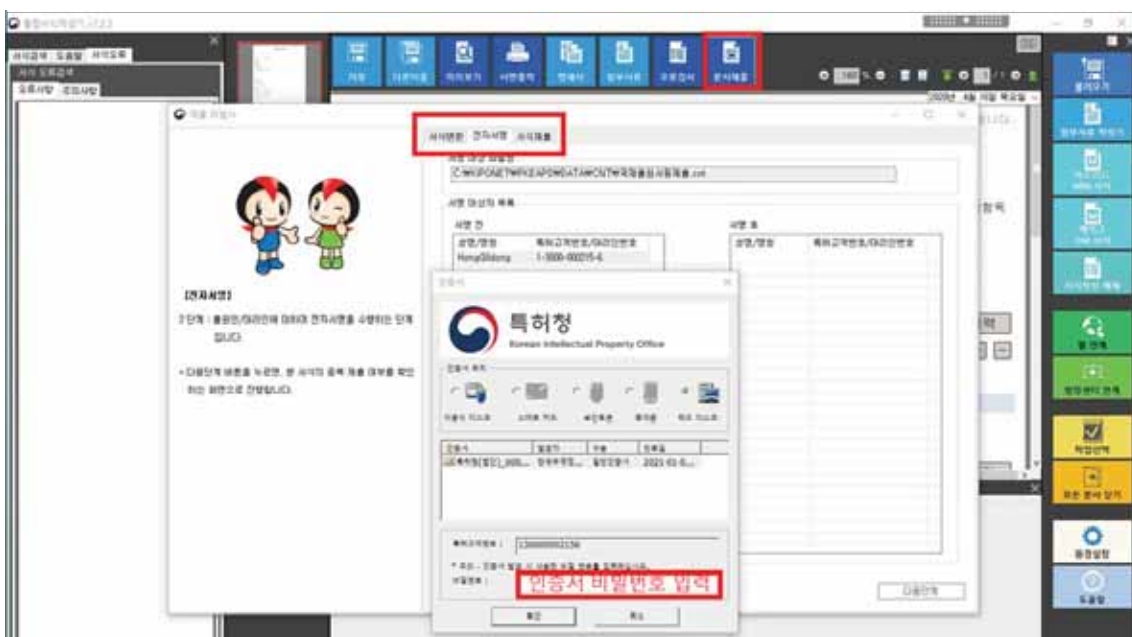


6) 오류검사 및 문서제출

위의 5번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상단 메뉴의 ‘오류검사’를 클릭하여 누락 및 오기재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문서제출’을 클릭하면 ‘제출 마법사’창이 활성화되어 서식변환(‘국제출원서등 제출서’와 DMZ 파일이 통합되는 ‘제출문서 생성’ 과정)과 전자서명 과정을 거쳐 특허청에 국제출원서가 제출된다.



2 Section

Hague guide

WIPO 전자출원 (eHague) 사용 방법

1. E-Filing 시스템 접속

The screenshot shows the WIPO website's Hague System pag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WIPO' and links for 'English', 'Search', and 'IP Portal login'. Below this is a secondary navigation bar with categories like 'Understand & Learn', 'Find & Explore', 'Protect & Manage', 'Partner & Collaborate', and 'About WIPO'.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Hague System - The International Design System' and includes a sub-header 'Protecting your designs internationally since 1925'. A featured image of Rio de Janeiro is shown with a caption about the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The 'Hague System online services - eHague' sec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containing the text 'Use eHague to file your international design applications and manage your registrations.' and a 'Go to eHague' button. A sidebar on the right lists 'On this page' with links to 'What is the Hague System?', 'Who can use the Hague System?', 'Where can you secure design protection using the Hague System?', and 'How much does it cost to secure international design protection?'.

WIPO | HAGUE

Hague System - The International Design System

Protecting your designs internationally since 1925

Statement of provisions potentially applicable to WIPO global IP services regarding Ukraine and the Russian Federation.

What is the Hague System?

The Hague System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provides a practical business solution for registering up to 100 designs in 96 countries [PDF](#), by filing a single international application.

- ▶ Who can use the Hague System?
- ▶ Where can you secure design protection using the Hague System?
- ▶ How much does it cost to secure international design protection?

Hague System online services - eHague

Use **eHague** to file your international design applications and manage your registrations.

[Go to eHague](#)

New to eHague? Try our filing tutorial and demo.

FEATU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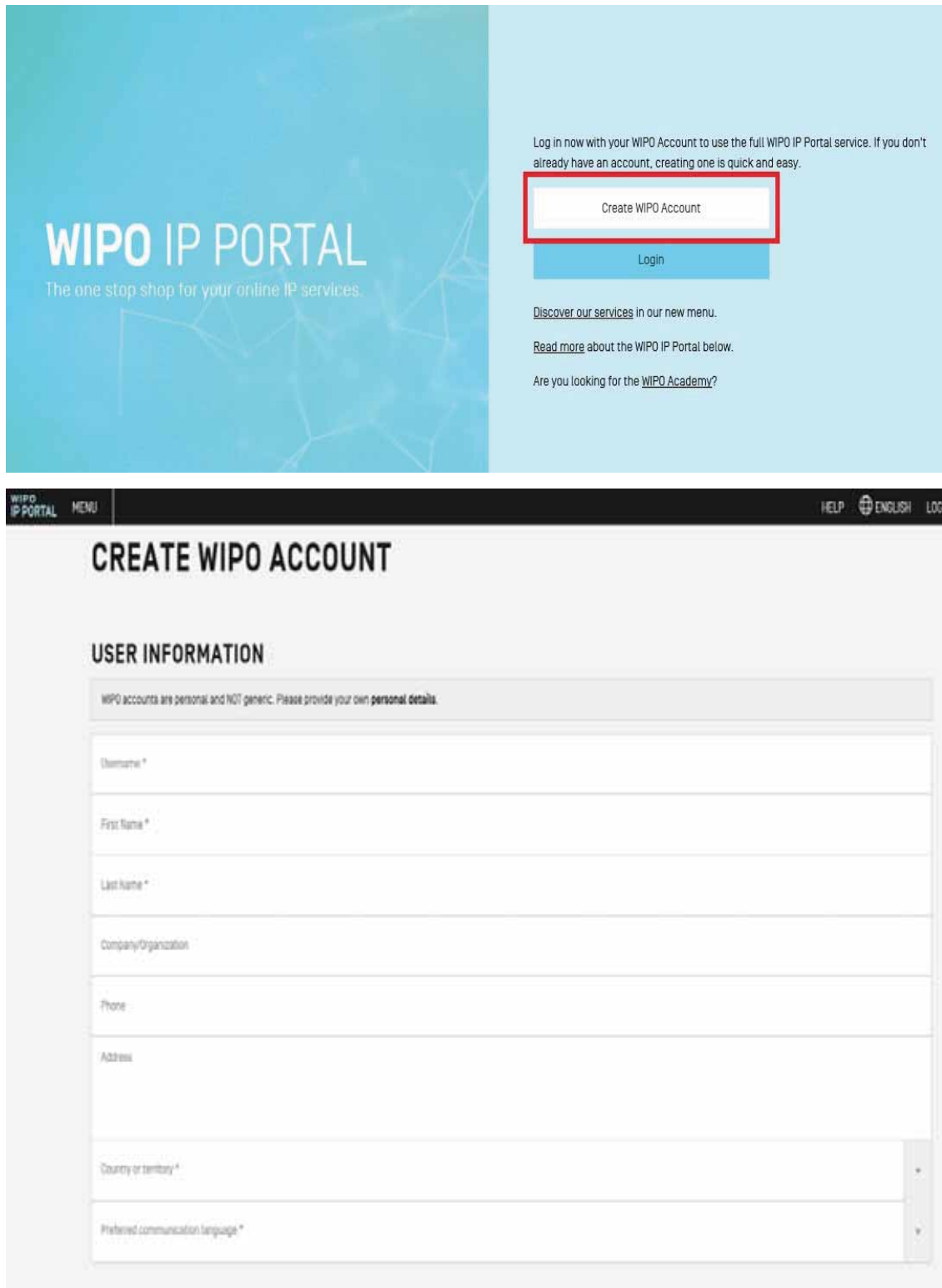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takes effect in Brazil on August 1 – designate now and expand international protection of your designs!

eHague – your digital gateway to international design protection

File online and manage your designs

- 1) WIPO 홈페이지(www.wipo.int)에 접속하여 Hague 페이지로 이동한다.

2. 로그인 및 사용자계정 생성



WIPO IP PORTAL
The one stop shop for your online IP services.

Log in now with your WIPO Account to use the full WIPO IP Portal service. If you don't already have an account, creating one is quick and easy.

[Create WIPO Account](#)

[Login](#)

[Discover our services](#) in our new menu.

[Read more](#) about the WIPO IP Portal below.

Are you looking for the [WIPO Academy](#)?

WIPO IP PORTAL MENU HELP  ENGLISH LOG IN

CREATE WIPO ACCOUNT

USER INFORMATION

WIPO accounts are personal and NOT generic. Please provide your own **personal details**.

Username *

First Name *

Last Name *

Company/Organization

Phone

Address

Country or territory *

Preferred communication language *

- 1) 사용자 계정이 없으면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여 접속한다.
 - ① Create WIPO Account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 정보를 기재한다.
 - ② 사용자 정보에 기재한 E-mail 계정으로 발송된 WIPO 확인 메일 링크사이트에서 사용자 등록을 완료하고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 2) 등록된 사용자는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WIPO IP Portal에 접속할 수 있고 eHague로 들어가면 이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Manager 역할을 한다.

3. 국제출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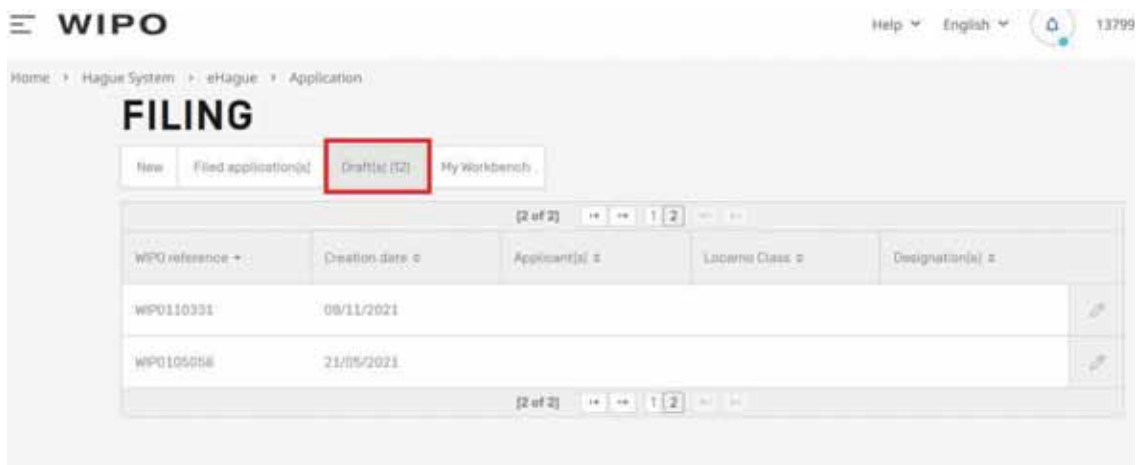
1) 출원 언어와 출원서 유형 선택

- ① 초기화면에서 국제출원서 작성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i) 출원언어(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를 선택할 수 있다.

ii) 새로운 국제출원서를 선택할 수 있다.

- 기존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빈 서식을 선택하거나,
- WIPO에 제출한 참조번호의 기존 정보를 포함한 서식을 선택하거나,
- WIPO에 제출하지 않은 참조번호의 기존 정보를 포함한 서식을 선택한다.

② WIPO에 제출한 출원서와 제출하지 않은 출원서로 구분된 탭을 선택하고, 목록에서 작성했던 내역을 선택한 후, 해당 출원서에서 어떤 정보를 불러오기 할 것인지 선택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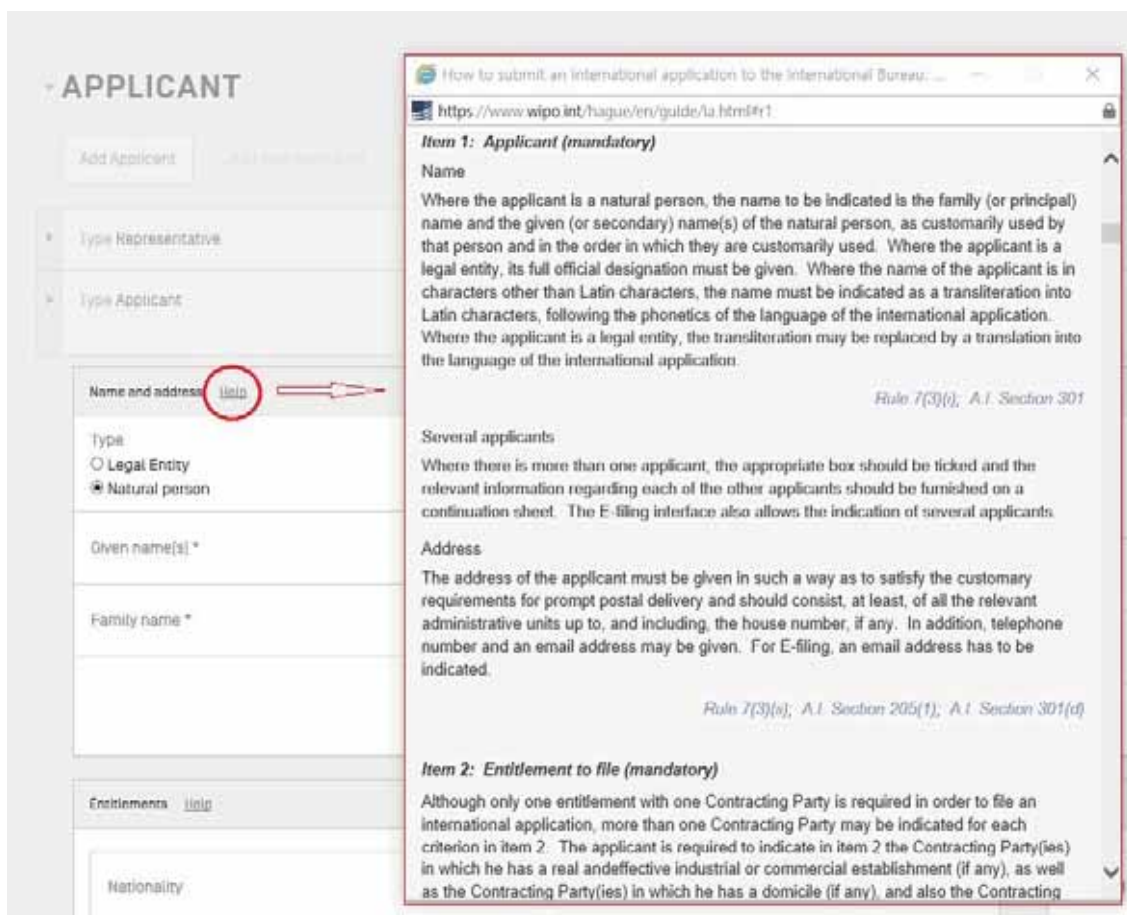


2) 출원인 정보

Name and address [help](#)

Type ☐ Legal Entity ☒ Natural person	Address *	Telephone (e.g. +41 22 338 80 80)
Given name(s) *	Zip/Post code	E-mail address *
Family name *	City *	Address of website
	Region/State	
	Country *	

- ① 국제출원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 기재사항은 해당 항목에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표시가 있는 항목은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출원인 항목을 보면 이름(Given name(s), Family name), 주소(Address), 도시(City), 국가(Country), 이메일(E-mail address)가 필수 사항으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 ③ 출원적격을 기재하면 출원인의 계약당사자 항목에 해당 국가가 목록에서 자동 정리되며 그중 선택하면 된다.
- ④ Help 버튼을 클릭하여 국제출원서 작성에 필요한 도움말을 볼 수 있다. 각 도움말은 WIPO 홈페이지에 공개된 Hague Guide for Users(<https://www.wipo.int/hague/en/guide/>)의 내용을 항목별로 불러오기 한 것이다.



3) 대리인 선임

국제사무국 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으로 각종 통지서 송달을 위한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한다.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필수)

4) 연락주소 기재

국제출원인이 둘 이상이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만 연락주소 항목이 사용가능하다. 연락주소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기재된 출원인의 이메일 주소로 국제사무국의 통지서 등이 보내진다.

5) 계약당사자 지정

DESIGNATION

DESIGNATED CONTRACTING PARTY(IES) [Help](#)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must indicate at least one applicant.
Select at least one Contracting Party.

Designations
ES, HU, JP, KR, US

[Deselect all](#) [Select all](#)

☐ AL Albania	☐ AM Armenia	☐ AZ Azerbaijan
☐ BA Bosnia and Herzegovina	☐ BG Bulgaria info	☐ BN Brunei Darussalam info
☐ BW Botswana	☐ BX Benelux info	☐ BZ Belize info
☐ CA Canada	☐ CH Switzerland	☐ DE Germany
☐ DK Denmark info	☐ EE Estonia info	☐ EG Egypt
☐ EM European Union	☒ ES Spain	☐ FI Finland info
☐ FR France	☐ GB United Kingdom info	☐ GE Georgia
☐ GH Ghana info	☐ HR Croatia info	☒ HU Hungary info
☐ IL Israel info	☐ IS Iceland info	☒ JP Japan info
☐ KG Kyrgyzstan	☐ KH Cambodia info	☐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KR Republic of Korea info	☐ LI Liechtenstein	☐ LT Lithuania
☐ LV Latvia	☐ MC Monaco info	☐ MD Republic of Moldova
☐ ME Montenegro	☐ MK The Republic of North Macedonia	☐ MN Mongolia
☐ NA Namibia	☐ NO Norway info	☐ OA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info
☐ OM Oman	☐ PL Poland info	☐ RO Romania info
☐ RS Serbia info	☐ RU Russian Federation info	☐ RW Rwanda
☐ SG Singapore info	☐ SI Slovenia info	☐ SM San Marino
☐ ST Sao Tome and Principe	☐ SY Syrian Arab Republic info	☐ TJ Tajikistan info
☐ TM Turkmenistan	☐ TN Tunisia	☐ TR Turkey info
☐ UA Ukraine info	☒ US United States of America info	☐ VN Viet Nam info
☐ WS Samoa info		

[OK](#)

- ① Designation(s) 메뉴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를 선택할 수 있고 최소한 하나 이상의 지정국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② 목록에서 보여주는 계약당사자는 [Applicants] 탭에서 국제출원인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만 보여준다. 따라서 출원인의 자격이 오직 1999년 개정협정에만 기속되면 목록은 당연히 1999년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계약당사자만 표시된다.
- ③ 지정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를 클릭하면 체크박스에 표시되고, 계약당사자가 지정되었음을 표시한다. 계약당사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면 취소할 계약당사자를 다시 클릭하면 지정이 해제된다.

④ 지정한 계약당사자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

- i) 각국 옆에 표시된 Info 표시는 협정에 따른 선언 또는 계약당사자가 국제 사무국에 국내 법령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통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국 정보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예시) 계약당사자 중 대한민국은 로카르노 분류 32류를 국내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렵다는 정보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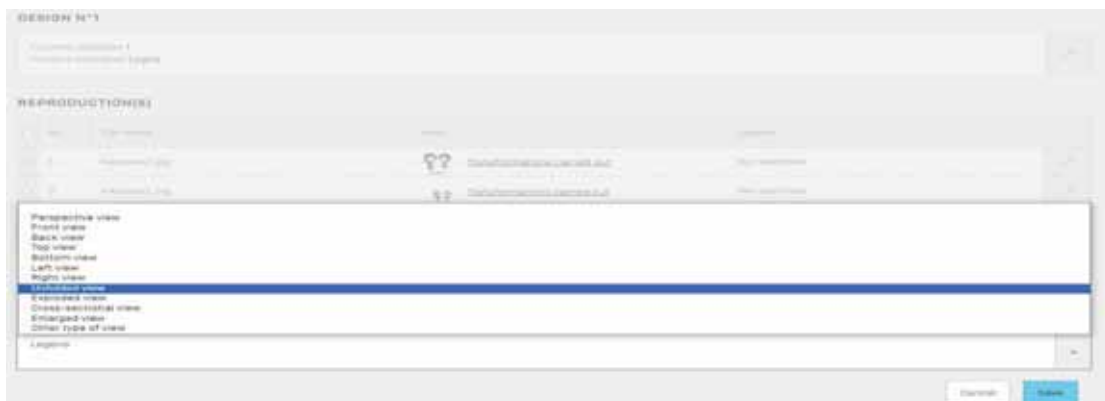
- ⑤ 계약당사자 지정에 따라 수수료는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고 납부정보가 갱신되므로 최종 제출 전에 납부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디자인의 물품 입력

- ① Design 탭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명칭을 입력하고 각 디자인에 대한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
- ② 디자인 명칭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Locarno Class를 먼저 선택하고 Add design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창을 활성화 시킨다. 분류를 선택하지 않으면 디자인 명칭을 입력할 수 없다.
- ③ 소분류의 선택은 강제사항은 아니다. 다만, 소분류를 선택하지 않고 명칭을 입력하면 국제출원서에도 소분류가 표시되지 않는다.
- ④ 명칭 입력은 Product indication 란에 출원인이 타이핑하여 입력하고 Save 버튼을 눌러 추가한다. 사용자가 물품의 명칭의 일부를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이 활성화 되며 유사한 명칭의 목록이 나타나므로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7) 디자인의 도면 첨부

- ① Reproduction(s) 항목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그림 파일(.jpg 또는 .tif)을 각 디자인의 도면으로 첨부할 수 있다.
- ② Add image[.jpg or .tif]를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을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
- ③ 첨부할 수 있는 도면의 개수는 제한이 없으나 도면의 크기 등은 국제사무국에서 정한 규격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④ 도면을 첨부하면 Transformations carried out 이 표시되면서 변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 ⑤ 우측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도면의 범례(legend)를 선택할 수 있다.
- ⑥ 도면 첨부 후 Preview reproductions를 클릭하면 PDF형태로 미리보기를 제공한다.



PREVIEW OF SUBMITTED REPRODUCTIONS

1.1

kikipopo2.jpg
1.03 x 1.10 cm



1.2

kikipopo1.jpg
1.65 x 1.82 cm



8) 기본디자인

- ① 중국에 복수디자인을 출원하거나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main or principal design 탭에서 관련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
- ② 중국에 둘 이상의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기본 디자인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③ 대한민국이나 일본에 해당 국제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디자인의 번호를 선택한다.
- ④ 기본 디자인의 정보를 선택한다. 참고유형으로는
 - i) The present international application : 기본디자인이 현재 출원서에 함께 출원된 경우 그 디자인 번호를 선택한다.
 - ii) National application : 기본디자인이 지정 체약당사국 내 선출원 된 경우 그 선출원 번호를 기재한다.
 - iii) National registration : 기본디자인이 지정 체약당사국 내 선등록 된 경우 그 선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iv) International registration : 기본디자인이 국제디자인 등록출원 시스템을 통해 지정 계약당사국에 선등록 된 경우 그 선출원 번호를 기재한다.
- v) International application : 기본디자인이 국제디자인 등록출원 시스템을 통해 지정 계약당사국에 선출원 된 경우 그 선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⑤ 입력 후 결과창 : 모든 입력이 끝나면 결과를 정리된 창으로 보여주며, 수정 및 삭제도 가능하다.

Contracting Party concerned *	KR	▼
Related design(s) *	1 X	Select all ▼
Reference Type of Main or Principal design *	The present international application	▼
Main or Principal design *	2	▼

MAIN OR PRINCIPAL DESIGN

INDICATION OF THE MAIN OR PRINCIPAL DESIGN, IF APPLICABLE [Help](#)

The following Contracting Parties have been designated: CN. You may include a maximum of 10 similar designs for the same product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n which case you **must** indicate one design as the **main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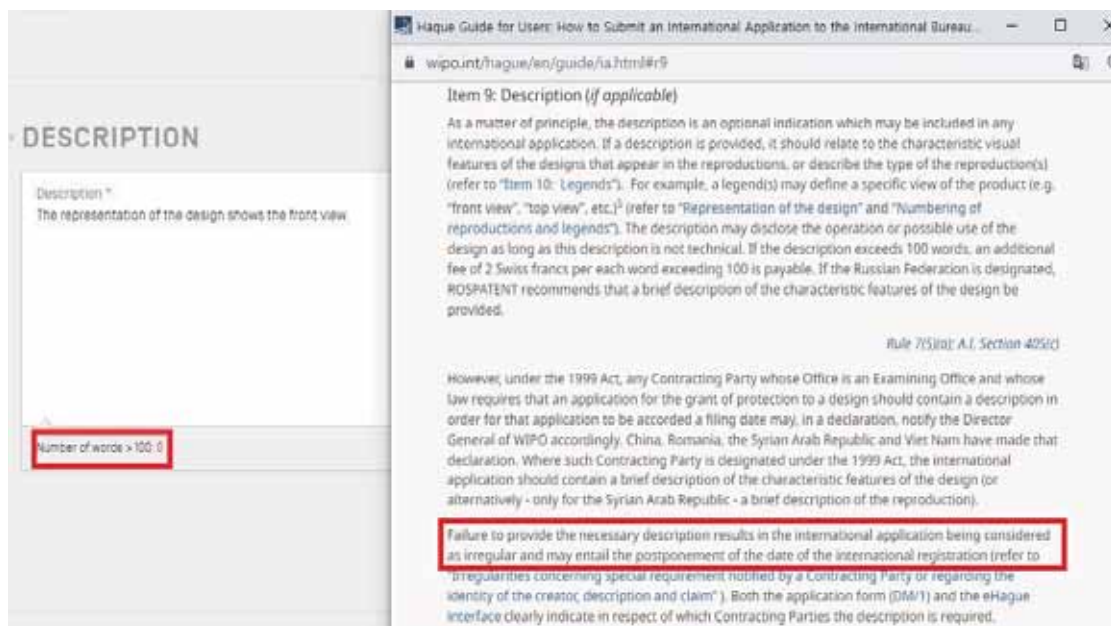
Warning: If China,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is/are designated,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refer to the [Hague Guide for Users](#).
The following Contracting Parties have been designated: JP, KR. If you wish some or all of the designs to be recorded as a "Related Design" under the law of these Contracting Parties, provide the required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incipal design.

CP ↕	Related design(s) ↕	Reference Type of Main or Principal design ↕	Reference of Main or Principal design ↕	Main or Principal design ↕	
CN	--	The present international application		1	
JP	1	The present international application		2	
KR	1	National application	4020231234567		

9)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면 단어 수를 표시한다.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단어 당 2 스위스 프랑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 물품에 대한 디자인설명 또는 특징의 기재가 필요한 국가: 중국, 루마니아, 시리아, 베트남 : 물품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출원일을 연기하는 국제사무국 하자통지의 대상이 됨



10) 창작자



① 선언으로 창작자의 기재가 필요한 계약당사자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창작자를 기재할 수도 있다.

* 창작자 신원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계약 당사자 : 브라질, 핀란드, 가나, 헝가리, 아이슬란드 모리셔스, 멕시코, 루마니아, 미국

- * 창작자 기재 및 창작자의 선언서 또는 대체기술서를 요구하는 체약 당사자 : 미국
- * 창작자 기재가 필요한 체약당사자(헤이그협정 하에서 필수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체약당사국 국내 단계에서 권고사항인 경우) : 불가리아, 중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세르비아, 타지키스탄, 튀르키예

- ② 창작자를 기재할 때 필수 기재사항은 다른 항목과 같이 (*)로 표시하여 알려준다.
- ③ 창작자 기재가 필수적인 국가를 지정했으나 국제출원인이 창작자를 기재하지 않으면 상단의 메뉴바에서 해당 항목이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창작자를 기재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경고는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 ④ 미국을 지정하는 경우의 창작자 선언창 [Declaration] 에서 입력가능하며,
 - i) 기존의 선언서를 사용하는 경우 [Attach an existing declaration]을 클릭하여 작성된 PDF(Annex1)를 첨부하고 (서식 다운로드는 하단부 [Download declaration form]에서 연결)
 - ii) 새롭게 선언하는 경우 [Make a new declaration] 전자서명을 통한 선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Declaration of inventorship (Rule 8) for the purposes of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hereby declare that I believe I am the original or an original inventor of a claimed invention in the application.
 This declaration is directed to the attached international application.
 I hereby declare that the above-identified international application was made or authorized to be made by me.
 I hereby acknowledge that any wilful false statement made in the declaration is punishable under 18 U.S.C. 1001 by fine or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five (5) years, or both.
 The signature must be that of the inventor (creator), not that of the agent (representative).
 The declaration may be signed electronically using string text signature (/.../)

Creator
 Gildong HONG

Residence

Required only if the inventor lives at a location different from the mailing addres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Signature
 / GILDONG HONG /

Cancel I declare

- iii) 전자서명을 마친 후 미리보기 [Preview]를 클릭하면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된 Declaration(Annex1)이 PDF형태로 미리보기 제공된다.

DECLARATION OF INVENTORSHIP (Rule 8(1) of the Common Regulations)

I hereby declare that I believe I am the original inventor or an original joint inventor of a claimed invention in the application.

This declaration is directed to the attached international application.

I hereby declare that the above-identified international application was made or authorized to be made by me.

I hereby acknowledge that any willful false statement made in this declaration is punishable under 18 U.S.C. 1001 by fine or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five (5) years, or both.

Name of Inventor: **Gildong HONG**

Inventor's Signature: **/GILDONG HONG/**

Date: **09.09.2023**

(The signature must be that of the inventor [creator], not that of the agent [representative])

Residence *(required only if the inventor lives at a location different from the mailing addres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city and either U.S. state, if applicable, or country)

11) 청구범위

- ① 선언으로 청구범위 기재가 필요하다고 선언한 계약당사자(미국, 베트남)를 지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CLAIM

APPLICABLE TO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LY

You have designated the following Contracting Parties: US. The law of this Contracting Party requires that the application contains a claim.

Add

APPLICABLE TO THE DESIGNATION OF VIET NAM

VN : Application for overall protection for industrial design(s) as shown and described

- ② 미국의 경우 청구범위를 직접 기재하면 된다. 청구범위를 [Article]란에 기재 후 저장하면 등록된 청구범위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다.

APPLICABLE TO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LY [Help](#)

You have designated the following Contracting Parties: US. The law of this Contracting Party requires that the application contains a claim.

[Add](#)

Article [e.g Logos] *

Logos

The ornamental design for Logos as shown and described

- ③ 베트남의 경우 “Application for overall protection for industrial design(s) as shown and described” 문구가 자동으로 들어간다.

APPLICABLE TO THE DESIGNATION OF VIET NAM

VN : Application for overall protection for industrial design[s] as shown and described

12) 우선권 주장, 국제전시회 우선권 주장

PRIORITY (IF APPLICABLE)

THE APPLICANT[S] CLAIM[S] THE PRIORITY OF THE EARLIER FILING MENTIONED BELOW

Warning Japan, Korea,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all designated,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refer to the [priorities from the Japan Patent Office \(JPO\),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the Japanese Patent Office \(JPO\) an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before submitting the document.

[Add](#)

Office of earlier filing *

No. of earlier filing

Date of earlier filing *

Design No. *

DAL code

Priority document for DL, JP, KR

[Upload PDF](#)

- ① 우선권 증명서류제출은 지정국마다 다르므로 헤이그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하거나 멤버프로필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지정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증명 서류는 국제등록출원의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특허청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내국인이 아닐 경우 반드시 대리인을 통한 제출이 필요하다.
- ② DAS참여국인 경우 DAS 코드입력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 ③ 우선권 증명 파일의 업로드 탭은 중국, 일본, 대한민국을 지정했을 경우 나타난다. 그 외 국가를 지정한 경우는 증명서류 제출 탭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우선권 주장은 화면에서 필수항목(* 표시)을 입력하여 주장할 수 있다. 우선권 주장은 6개월 이전에 해당하는 일자를 선택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다.

13) 추가 선택사항

- ① 상단 탭의 추가적 선택 사항(Optional Contents)을 선택하면, 세 가지 추가 선택항목이 나타난다.

OTHER CONTENT (IF APPLICABLE)

DECLARATION CONCERNING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f designating China,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you may benefit from an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due to prior disclosure.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the [eHague Guide for Users](#). This declaration concerning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s applicable only to a designation of China,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If you wish to make this declaration, click "Save" to record your declaration. You may also submit supporting documentation to the Office(s) concerned by uploading a PDF file here.

ELIGIBILITY FOR PROTECTION

For the purpose of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may attach to your international application a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and reference documents.

ECONOMIC STATUS FOR US

Undiscounted (default)

ECONOMIC STATUS FOR MX

Undiscounted (default)

- i)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중국, 일본, 대한민국)
- ii) 보호적격에 대한 정보제공(미국)
- iii) 지정수수료 감면을 위한 선택(미국, 이스라엘, 멕시코)

- ②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을 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PDF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복수 디자인 출원의 경우 각각의 디자인에 대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보호 적격은 미국을 지정하는 경우 출원인이 해당 국제출원의 디자인에 대하여 심사관이 알아야하는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ANNEX III를 이용하여 DM/1과 함께 제출될 수도 있다.

- ④ 수수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출원인에 해당하는 조건을 선택하되 미국, 이스라엘, 멕시코 모두 요건이 다르므로 각국의 국내법을 확인한 후 기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14) 국제출원의 공개

- ① 국제출원의 공개일에 관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 국제 등록일로부터 12개월 되는 날 공개(Publication 12 months after ~)
 - 즉시공개(Immediate after the recording)
 - 지정공개(Publication at a chosen time)
- ② 지정국가마다 최대 공개연기기간이 다르며 출원인이 지정한 계약당사자에 따라 자동으로 검사하여 입력을 제한한다.
 - 공개연기가 불가능한 계약당사자를 지정하면 12개월을 초과하여 공개 일자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안내메세지가 나온다.
 - 즉시공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정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개월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후부터이다.

15) 국제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 ① 출원인 및 대리인의 전자서명을 위해 해당 란을 체크하면 된다.

② 참조(Reference) 기재사항

- i) 출원 참조번호(Application reference)는 선택적 기재사항으로 국제 사무국과 국제출원인의 통신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재한다. 국제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인에게 하는 통지에는 이 번호를 사용한다.
- ii) 연락받을 사람 및 이메일 주소는 실제로 연락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국제출원인이 법인일 때는 이 항목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자출원(eHague) 시 접수 및 통지를 위해 기재된 이메일로 발송한다.

4. 국제출원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FEES SENDING

WIPO REFERENCE 71035

Summary Back

PAYMENT OF FEES Help

Breakdown of fees	
International registration basic fee	397.00
Level 1 Standard designation fee [ES] (1 x 42.00)	42.00
Level 3 Standard designation fee [KR, VN] (2 x 90.00)	180.00
Individual designation fee [IL] (1 x 113.00)	113.00
Individual designation fee [JP] (1 x 682.00)	682.00
Part 1 of 2 of individual designation fee [Micro entity] [US]	227.00
Publication of reproductions (3 x 17.00)	51.00
Total	CHF 1692.00

☐ In case of deferment, the applicant wishes to pay the fees at the latest 3 weeks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deferment period

SUBMIT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O THE INTERNATIONAL BUREAU

Reminder: The application is saved and accessible from your workbench but is not yet sent to the International Bureau.

Review your application

Summary Preview reproductions

☐ I confirm I have reviewed the application and its contents, including the reproductions and accompanying documents.

Note: no further opportunities to amend your application.

- ①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정보를 기초로 수수료가 자동 계산되므로 해당 출원의 수수료를 확인하고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전자출원을 이용할 때는 출원서 제출과 동시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는 출원서 제출 전에만 할 수 있다.
- ③ 은행이체를 이용할 때는 송금인 정보를 기재하여 출원서를 제출하고 은행이체로 낼 수 있다. 서면출원서와 다르게 납부자 신원 등을 기재하는 항목은 제공하지 않는다.
- ④ 작성한 국제출원서는 메뉴의 Summary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 수수료 계산기(Fee Calculator)

1) 다양한 수수료 계산 방법

eHague에서 국제출원서를 작성하고 summary 메뉴에서 국제출원 수수료를 최종 확인할 수도 있다. 다만, 수수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WIPO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수수료 계산기(Fee Calculator)를 제공한다.

2) 수수료 계산기

WIPO | HAGUE

Hague – The International Design System

The Hague System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provides a practical business solution for registering up to 100 designs in 73 contracting parties covering 90 countries, through the filing of one single international application.

Find out more

- What is an industrial design?
- Main features and advantages
- Legal framework
- Hague FAQs, including on Brexit
- Guidance on reproductions [PDF](#)



Video –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Design System

Key resources

[International Designs Bulletin](#) [Fee Calculator](#) [Forms](#) [eHague](#) [E-Renewal](#) [ePay](#)



국제사무국 홈페이지의 Hague화면에서 Fee Calculator 메뉴에 접속할 수 있다.

Hague System Fee Calculator

Enter the details below to quickly estimate the application or renewal fees in Swiss francs (CHF)

Type:	International Application
Date:	05.09.2023
Applicant's State of origin (Hague "1960" Act):	Not Selected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Geneva "1999" Act):	Republic of Korea
Add the number of industrial designs:	1
Add the number of reproduction(s) of the industrial design(s):	7
If using the paper application form, add the number of pages of reproductions: (free if you use the e-filing interface)	0
Add the number of words of description:	0
Locarno Classification (for KR designations only):	1
Economic Status (for US designations):	Small entity (50% reduction)
Economic Status (for IL designations):	Undiscounted (default)
Economic Status (for MX designations):	Undiscounted (default)

☐ AL Albania	☐ EM European Union	☐ LT Lithuania	☐ RW Rwanda
☐ AM Armenia	☐ ES Spain	☐ LV Latvia	☐ SG Singapore
☐ AZ Azerbaijan	☐ FI Finland	☐ MA Morocco	☐ SI Slovenia
☐ BA Bosnia and Herzegovina	☐ FR France	☐ MC Monaco	☐ SM San Marino
☐ BG Bulgaria	☐ GB United Kingdom	☐ MD Republic of Moldova	☐ SR Suriname
☐ BN Brunei Darussalam	☐ GE Georgia	☐ ME Montenegro	☐ ST Sao Tome and Principe
☐ BR Brazil	☐ GH Ghana	☐ MK The Republic of North Macedonia	☐ SY Syrian Arab Republic
☐ BW Botswana	☐ HR Croatia	☐ MN Mongolia	☐ TJ Tajikistan
☐ BX Benelux	☐ HU Hungary	☐ MU Mauritius	☐ TM Turkmenistan
☐ BY Belarus	☐ IL Israel	☐ MX Mexico	☐ TN Tunisia
☐ BZ Belize	☐ IS Iceland	☐ NA Namibia	☐ TR Türkiye
☐ CA Canada	☐ JM Jamaica	☐ NO Norway	☐ UA Ukraine
☐ CH Switzerland	☒ JP Japan	☐ OA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 US United States of America
☒ CN China	☐ KG Kyrgyzstan	☐ OM Oman	☐ VN Viet Nam
☐ DE Germany	☐ KH Cambodia	☐ PL Poland	☐ WS Samoa
☐ DK Denmark	☐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RO Romania	
☐ EE Estonia	☐ KR Republic of Korea	☐ RS Serbia	
☐ EG Egypt	☐ LI Liechtenstein	☐ RU Russian Federation	

Select All Clear All Calculate

이 페이지에서는 수수료 계산기뿐만 아니라 수수료 구성과 각국 개별수수료 정보 등 수수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 ① Type : 국제출원(International Application) 수수료인지 국제등록의 갱신(Renewal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수수료인지 선택한다.

- ② Date : 국제출원서 제출 일자를 선택한다. 수수료를 계산한 일자와 수수료를 실제 내는 날 사이에 수수료 변동이 있으면 내야 할 수수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 ③ Applicant's State of origin : 1960년 개정협정이 적용되는 국제출원인이 선택하는 항목으로 우리나라 출원인은 선택할 필요가 없다.
- ④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 1999년 개정협정이 적용되는 국제출원인이 선택하는 항목이다(대한민국을 국제출원인의 계약당사자로 지정할 때).
- ⑤ Add the number of industrial designs : 하나의 출원서에 포함된 디자인의 개수를 표시한다.
- ⑥ Add the number of reproduction(s) of the industrial design(s) : 하나의 출원서에 포함된 도면의 총 개수를 표시한다.
- ⑦ If using the paper application form, ~ : WIPO에 국제출원서를 서면으로 직접 제출할 때는 도면의 총 페이지 수를 표시한다. 전자출원의 경우 선택할 필요 없다.
- ⑧ Add the number of words of description :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국제출원인은 그 설명의 글자 개수를 표시한다(100단어를 초과한 글자 수가 아닌 전체 글자 수를 표시).
- ⑨ Locarno Classification(For KR designations only) : 대한민국을 지정하는 경우 물품 류에 따라 개별 지정수수료가 달라지므로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물품 류를 기재한다.
- ⑩ Economic Status(For US designations only) : 미국을 지정하는 경우 3단계 수수료 감면이 적용되므로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 ⑪ Economic Status(For IL designations only) : 이스라엘을 지정하는 경우 2단계 수수료 감면이 적용되므로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 ⑫ Economic Status(For MX designations only) : 멕시코를 지정하는 경우 2단계 수수료 감면이 적용되므로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3

Section

Hague guide

로카르노 국제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NDUSTRIAL DESIGNS		Class 1 FOODSTUFFS	
under the Locarno Agreement Fourth Edition		Serial No. (19)	Indication of Goods
Legen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Subclass 01	BAKERS' PRODUCTS, BISCUITS, PASTRY, BICCHONS AND OTHER CEREAL PRODUCTS, CHOCOLATES, CONFECTIONERY, ICES
		0000	Bakery products
		0001	Biscuits
		0002	Bread
		0003	Cakes
		0004	Caramels (hard)
		0005	Cereal preparations
		0006	Cheesing gums
		0007	Chocolates
		0008	Confectionery
		0009	Cornets (ice cream -) (edible)
		0010	Pastrycooks food pastes
		0011	Fruit gums
		0012	Gingerbread
		0013	Ice cream
		0014	Ice cream cornets (edible)
		0015	Lollipops
		0016	Macarons
		0017	Meringues
		0018	Noodles
		0019	Pasta
		0020	Pastes (pastrycooks food -)
		0021	Pastries
		0022	Puff pastries (pastry)
		0023	Pudding
		0024	Pastry

1. 로카르노분류의 의의

1) 협정의 의의

- ① 로카르노 협정의 가입국은 디자인에 관한 단일분류(국제분류)를 채택
- ② 국제분류는 류/군 목록, 알파벳 물품 목록 및 주석으로 구성
- ③ 류와 군 목록은 협정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위원회에서 개정 추가
- ④ '23년 1월 현재 60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2) 국제분류의 사용 및 법적 지위

- ① 국제분류는 오로지 행정적인 성격만을 가지고 있으며 디자인에 부여된 보호의 성질과 범위에 관하여 회원국을 기속하지 않는다.
- ② 회원국 관청은 디자인의 기탁 또는 등록을 위한 공문서 등 공개할 때 디자인의 국제분류와 소분류 번호를 기재한다.

3) 국제분류의 구성 및 목록

- ① 국제분류 제14판은 32개류 241개 군, 5,451개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 ② 국제분류의 목록은 매 2년 단위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3년 1월 현재 제14판을 사용하고 있다.

2. 로카르노 분류 및 주석

제 1 류 식품 (Foodstuffs)

류 및 군	물품 목록
주	가. 식품, 동물용 사료 및 건강식품을 포함한다. 나. 음식포장(packages)(9류)은 제외한다.
01-01	빵, 비스킷, 페이스트리, 파스타, 그 밖의 가공 곡물, 초콜릿, 과자류, 빙과류
01-02	과일, 야채
01-03	치즈, 버터 및 버터 대용품, 그 밖의 유제품
01-04	육류(돼지고기제품포함), 생선
01-05	두부 및 두부제품
01-06	동물용 사료
01-99	그 밖의 식품

제 2 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Articles of clothing and haberdashery)

류 및 군	물품 목록
주	인형용 의류(제21류-01군), 소방, 사고방지 및 구조용 장비(제29류), 동물용 의류(제30류-1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02-01	내의, 란제리, 코르셋, 브래지어, 잠옷 주 가. 교정용 코르셋 및 내의류를 포함한다. 나. 가정용 린넨(제6류-13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02-02	의류 주 가. 나항에 표시된 예외를 제외하고 모피, 욕실용 의류, 스포츠 의류, 및 교정용 의류 등 모든 종류의 의류를 포함한다. 나. 내의 제2류-01군, 제2류-03군, 제2류-04군, 제2류-05군, 또는 제2류-6군으로 분류되는 의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류 및 군	물품 목록
02-03	모자류
	주 남성, 여성과 어린이용의 모든 종류의 모자류를 포함한다.
02-04	신발류, 양말 및 스타킹
	주 타이츠, 각반(gaiters) 및 그 밖의 레그웨어와 축구, 스키, 등산 등의 스포츠용 특수부츠, 교정용 신발 및 양말을 포함한다.
02-05	넥타이, 스카프, 목도리 및 손수건
	주 모든 평면형태의 의류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02-06	장갑
	주 가정용, 작업용, 또는 스포츠용으로 사용되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장갑 및 의료용 장갑을 포함한다.
02-07	패션잡화류 및 의류 액세서리
	주 가. 의복, 모자, 신발에 사용되는 단추, 버클, 레이스, 핀, 재봉·편물, 자수용구, 벨트, 양말대님, 바지 멜빵 등의 의류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나. 직물·편물용 및 그 밖의 실(제5류-01군), 장식용 트리밍(제5류-04군), 재봉·편물·자수용 기계(15류-6군), 바느질 키트용 상자(제3류-1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02-99	그 밖의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 3 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아니하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Travel goods, cases, parasols and personal belongings not elsewhere specified)

류 및 군	물품 목록
03-01	트렁크, 여행가방, 서류가방, 핸드백, 키홀더, 제품 전용 케이스, 지갑 및 유사한 물품
	주 물품의 운송을 위한 케이스(제9류) 또는 시가 케이스 및 쉼터 케이스(제27류-6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03-02	[공란]
03-03	우산, 파라솔, 차양 및 지팡이
03-04	부채
03-05	유아용 운반 및 보행기구
	주 제6류, 제12류로 분류되는 유아캐리어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03-99	그 밖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아니하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제 4 류 브러시 제품 (Brushware)

류 및 군	물품 목록
04-01	청소용 브러시 및 빗자루
	주 의류용 브러시(제4류-02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04-02	욕실용 브러시, 의류용 브러시, 신발용 브러시
	가. “욕실용 브러시”란 머리카락, 손톱 또는 치아에 사용하는 신체용 브러시를 말한다. 나. 전동칫솔[기기](제28류-03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04-03	기계용 브러시
	주 “기계용 브러시”는 기계 또는 특수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브러시를 말한다.
04-04	미술용 브러시, 조리용 브러시
04-99	그 밖의 브러시 제품

제 5 류 섬유 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Textile piece goods, artificial and natural sheet material)

류 및 군	물품 목록
주	가. 야드 단위로 판매되는 완성품이 아닌 모든 섬유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을 포함한다. 나. 기성품(제2류 또는 제6류)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05-01	방사 제품(SPUN ARTICLES)
	주 가. 방사 및 실을 포함한다. 나. 로프, 와이어 로프, 줄, 노끈(제9류-06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05-02	레이스
05-03	자수
05-04	리본, 장식용 끈, 그 밖의 장식용 트리밍
05-05	직물
	주 직물, 편물 또는 그 밖의 제조방법의 직물, 방수천(tarpaulins), 펠트 및 로덴(loden)을 포함한다.
05-06	인조 또는 천연 시트직물류
	주 가. 나항에 표시된 예외를 제외하고 벽지, 리놀륨, 접착식 필름

류 및 군	물품 목록
	시트, 포장용 시트, 롤페이퍼 등의 커버용 시트와 같이 표면장식이나 질감에 주요한 특징이 있는 시트를 포함한다. 나. 필기용으로 사용되는 종이 및 롤페이퍼(제19류-1군), 또는 벽패널 및 징두리벽판(wainscoting)(제25류-1군)과 같은 건축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시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05-99	그 밖의 섬유 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 6 류 가구 및 침구류 (Furnishing)

류 및 군	물품 목록
주	가. 여러 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조합한 조합가구는 제6류-05군에 분류한다. 나. 세트 가구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이는 한 제6류-05군에 분류한다. 다. 섬유제품(제5류)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06-01	의자 가. 주로 바닥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벤치, 소파, 등받이·팔걸이 없는 장의자, 오토만, 사우나 벤치 등 모든 의자를 포함한다. 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
06-02	침대 가. 매트리스 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주로 바닥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벤치, 소파, 등받이·팔걸이 없는 장의자, 오토만, 사우나 벤치는(제6류-01군) 포함하지 아니한다.
06-03	테이블 및 유사가구 가. 게임용 테이블(제21류-01군) 또는 스포츠용 테이블(제21류-02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06-04	수납 가구 가. 찬장, 서랍 또는 칸막이 부착 가구, 선반을 포함한다. 나. 관, 관 내부 안감(coffin linings), 납골단지를 포함한다.
06-05	조합가구
06-06	그 밖의 가구 및 가구 부품
06-07	거울 및 프레임 가. 다른 류에 포함되는 거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06-08	의류 걸이

류 및 군	물품 목록
06-09	매트리스 및 쿠션
06-10	커튼 및 실내 블라인드
06-11	양탄자, 매트 및 깔개
06-12	태피스트리
06-13	담요 및 그 밖의 커버용 직물, 가정용 린넨제품 및 식탁용 린넨
	주 가구용 커버, 침대보, 테이블보를 포함한다.
06-99	그 밖의 가구 및 침구류

제 7 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아니하는 가정용품 (Household goods, not elsewhere specified)

류 및 군	물품 목록
주	가. 모터로 구동되는 수동 조작식 가정용 기구 및 용구를 포함한다. 나. 음식 또는 음식조리용 기계 및 기구(제31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07-01	도자기, 유리제품, 접시 및 그 밖의 유사한 용품
	주 가. 종이, 판지를 비롯한 모든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 접시를 포함한다. 나. 유리 및 도기 포트(제7류-2군) 등과 같은 조리기구 혹은 화병, 화분, 장식용 도자기, 장식용 유리제품(11류-02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07-02	조리용 기기, 조리용 용기, 조리용 기구
07-03	테이블 커틀러리
07-04	음식조리용 수동용구 및 기구
	주 가. 제7류-2군과 제31류에 분류되는 용구와 기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주방용 칼 및 고기뼈용 칼(제8류-03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07-05	다림용 인두, 세탁·청소 및 건조기기
	주 세탁·청소 또는 건조를 위한 전기 가정용품(제15류-05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07-06	그 밖의 식탁용구
07-07	그 밖의 가정용 용기

류 및 군	물품 목록
07-08	벽난로용 기구
07-09	가정용 조리기구 스탠드 및 홀더
07-10	냉장 및 동결기기, 등온용기
07-99	그 밖의 가정용품

제 8 류 공구 및 철물류 (Tools and hardware)

류 및 군	물품 목록
주	가. 전기톱, 전기드릴 등의 동력식 수작업용 공구를 포함한다. 나. 기계나 공작기계(제15류 또는 제31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08-01	천공, 절삭, 또는 채굴용 공구 및 기구
08-02	망치 및 그 밖의 유사한 공구 및 기구
08-03	절단용 공구 및 기구
주	가. 톱질용 공구 및 기구를 포함한다. 나. 테이블 나이프(제7류-03군), 주방용 절단용 공구 및 기구(제31류) 또는 수술용 나이프(제24류-02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08-04	스크루드라이버 및 그 밖의 유사한 공구와 기구
08-05	그 밖의 공구 및 기구
주	가. 다른 류 또는 다른 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구를 포함한다. 나. 샌딩머신용 샌딩블록과 디스크를 포함한다. 다. 사포(제5류-06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08-06	핸들, 손잡이 및 경첩
08-07	잠금 및 폐쇄 장치
주	버클[잡화](제2류-7군) 및 열쇠고리(제3류-01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08-08	그 밖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않는 고정 장치 또는 지지 장치
주	가. 못, 나사, 너트 및 볼트를 포함한다. 나. 의류용 고정 장치(제2류-7군), 장신구용 고정장치(제11류-1군) 또는 사무용 고정 장치(19류-2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08-09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않는 문, 창, 가구 및 유사품의 금속부품 등
08-10	자전거 및 오토바이용 보관대

류 및 군	물품 목록	
	주	가. 수리대 및 자전거용 주차대를 포함한다. 나. 자전거 부품인 접이식 스탠드(제12류-11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08-11	커튼용 하드웨어	
08-99	그 밖의 공구 및 철물류	
	주	원재료에 상관없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케이블을 포함한다.

제 9 류 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Packages and containers for the transport or handling of goods)

류 및 군	물품 목록	
09-01	병, 플라스크, 포트, 대형 유리병(CARBOYS), 목이 가는 대형 유리병(DEMIJOHNS) 및 압력 용기	
	주	가. “포트”란 용기를 의미한다. 나. 그릇 용도의 포트(제7류-1군), 화병(제11류-2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09-02	저장용 캔, 드럼통 및 통(CASKS)	
09-03	상자, 케이스, 컨테이너, (보존용) 깡통	
	주	화물용 컨테이너를 포함한다.
09-04	광주리, 나무상자 및 바구니	
09-05	자루, 일회분 포장봉지(SACHETS), 튜브 및 캡슐	
	주	가. 손잡이 및 잠금장치 유무와 상관없이 비닐봉지 또는 일회분 포장 봉지를 포함한다. 나. “캡슐”은 포장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09-06	로프 및 고정용 테(HOOPING MATERIALS)	
09-07	포장용 잠금장치 및 부속품	
	주	가. 포장용 잠금장치만을 포함한다. 나. “부속품”은 용기에 부착된 분배 및 공급장치, 탈착식 분무장치 등을 말한다.
09-08	지게차용 팔레트 및 작업대	
09-09	폐품통 및 쓰레기통, 폐품·쓰레기통 스탠드	
09-10	포장재 및 포장용기의 운반·취급용 핸들 및 그립	
09-99	그 밖의 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제 10 류 시계, 휴대용 시계, 그 밖의 계측기구, 검사기구 및 신호기구 (Clocks and watches and other measuring instruments checking and signalling instruments)

류 및 군	물품 목록
주	전기기구를 포함한다.
10-01	시계 및 알람시계
10-02	휴대용 시계 및 손목시계
10-03	그 밖의 시간 측정기구
주	주차 미터, 주방용 타이머와 같은 시간 측정기구 및 유사한 기구를 포함한다.
10-04	그 밖의 계측도구, 기구 및 장치
주	가. 온도, 압력, 중량, 길이, 부피 및 전기를 측정하는 도구, 기구 및 장치를 포함한다. 나. 노출계(제16류-05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0-05	검사, 안전 또는 시험을 위한 도구, 기구 및 장치
주	화재 경보기, 도난 경보기 및 다양한 유형의 탐지기를 포함한다.
10-06	신호기구 및 기기
주	차량용 조명기기 또는 신호기기(제26류-6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0-07	케이싱, 케이스, 표시판(dial), 시계바늘, 그 밖의 계측·검사·신호를 위한 기구의 부품 및 부속품
주	“케이싱”이란 시계의 케이싱을 포함하여 메커니즘을 보호하는 주요 부품의 모든 케이싱을 말한다. 단, 제품의 내용물 또는 포장에 위해 디자인된 전용 케이스(제3류-01군), 포장용 케이스(제9류-03군)는 제외한다.
10-99	그 밖의 시계, 휴대용 시계, 계측기구, 검사 및 신호기구

제 11 류 장식용품 (Articles of adornment)

류 및 군	물품 목록
11-01	장신구
주	가. 장신구 및 모조 보석류를 포함한다. 나. 휴대용 시계(제10류-02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류 및 군	물품 목록
11-02	소형 장식품, 테이블·벽난로·벽 장식품, 화병 및 화분
	주 조각품, 모빌 및 조각상을 포함한다.
11-03	메달 및 배지
11-04	조화, 모조 과일 및 모조 식물
11-05	깃발, 축제 장식물
	주 가. 화환, 장식 리본,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을 포함한다. 나. 양초(제26류-4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1-99	그 밖의 장식용품

제 12 류 운송 또는 승강 수단 (Means of transport or hoisting)

류 및 군	물품 목록
	가. 육, 해, 공, 우주 및 그 밖의 모든 운송수단을 포함한다. 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운송기구와 관련된 구성품, 부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운송수단의 구성품, 부품 및 부속품은 해당 운송수단의 군에 분류하고, 여러 운송수단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12류-16군에 분류한다. 다. 다른 류에 분류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구성품, 부품 및 부속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운송수단의 구성품, 부품 및 부속품은 동일 유형의 물품, 즉 같은 기능을 가진 물품과 같은 류에 분류한다. 따라서 자동차용 카펫 또는 매트(제6류-11군)에 분류하고 운송수단용 전기모터는 제13류-01군에, 운송수단용 비전기식 모터는 제15류-01군에 분류하고(해당 모터의 구성물품도 마찬가지임),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조명기구(제26류-06군)에 분류한다. 라. 운송기구의 축소모형(제21류-01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2-01	동물에 의해 움직이는 운송수단
12-02	핸드 카트, 일륜 수레
12-03	기관차 및 철도용 차량
12-04	공중 케이블카, 좌식리프트 및 스키장 리프트
12-05	적재 또는 운반용 엘리베이터 및 승강기(hoist)
	주 승객 및 화물용 리프트, 크레인, 지게차,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다.
12-06	선박 및 보트
12-07	항공기 및 우주선

류 및 군	물품 목록
12-08	자동차, 버스 및 화물 자동차 주 구급차 및 냉장트럭을 포함한다.
12-09	트랙터
12-10	차량용 트레일러 주 카라반을 포함한다.
12-11	자전거 및 오토바이
12-12	유모차, 휠체어, 들것 주 가. “유모차”는 손으로 끄는 유아용 차를 말한다. 나. 유모차 완구(제21류-01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2-13	특수 목적 차량 주 가. 도로청소차, 살수차, 소방차, 제설차 및 견인차와 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차량 등을 포함한다. 나. 다목적의 농업용 기계(제15류-03군) 또는 건설 및 토목에 이용하는 자동추진식 기계(제15류-04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12-14	그 밖의 차량 주 썰매 및 공기부양선을 포함한다.
12-15	차량용 타이어 및 미끄럼방지용 체인
12-16	다른 류나 군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수단용 부품, 장비 및 부속품 주 가. 차량용 도어손잡이(제8류-06군)와 차량의 의자용 안전벨트(제29류-02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전차 또는 전기기관차용 팬터그래프(제13류-03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2-17	철도 기반시설 부품
12-99	그 밖의 운송 또는 승강 수단

제 13 류 전기의 발전, 공급 또는 변전을 위한 장치 (Equipment for production, distribution or transformation of electricity)

류 및 군	물품 목록
주	가. 전기를 발전·공급하고 변류하는 장치만을 포함한다. 나. 전동 모터를 포함한다. 다. 전기시계(제10류-02군) 또는 전류측정기구(제10류-04군)와 같은 전동기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류 및 군	물품 목록
13-01	발전기 및 모터
	주 차량용 전기모터를 포함한다.
13-02	전력변압기, 정류기, 배터리 및 축전지
13-03	전력 공급 및 제어기기
	주 도체, 스위치 및 스위치보드를 포함한다.
13-04	태양열 장치
	주 태양열 집열기(제23류-03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3-99	그 밖의 전기의 발전, 공급 또는 변류를 위한 장치

제 14 류 레코딩, 통신 및 데이터처리 기기 (Recording, communication or information retrieval equipment)

류 및 군	물품 목록
14-01	음향 또는 영상 저장 또는 재생장치
	주 사진 및 영상 촬영기기(제16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14-02	데이터 처리장치 및 주변기기
14-03	통신용 장비, 무선원격제어기기 및 고주파증폭기
	주 전화기 및 텔레비전용 장비, 라디오 세트를 포함한다.
14-04	기기조작 화상 및 기능발휘 화상
	주 가. 나항에 표시된 예외를 제외하고, 대상기기가 기능에 따라서 작동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지시를 주는 화상 또는 대상기기의 기능 발휘가 실현되는 화상을 포함한다. 나.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각각의 물품에 상응하는 류 및 군으로 분류한다.
14-05	레코딩 및 데이터 저장용 미디어
14-06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장비용 홀더, 스탠드 및 지지구
14-99	그 밖의 저장, 통신 또는 정보검색 장비

제 15 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기계 (Machines, not elsewhere specified)

류 및 군	물품 목록	
15-01	엔진	
	주	가. 차량용 비전기식 엔진을 포함한다. 나. 전기모터(제13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5-02	펌프 및 컴프레서	
	주	수동식 펌프(제8류-05군), 소방용 펌프(제29류-01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5-03	농업 및 임업기계	
	주	가. 쟁기 그리고 예취결속기 (reaping and binding machines)와 같은 기계와 운송 수단이 결합된 농업용 기계를 포함한다. 나. 수동식 공구(제8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5-04	건설 및 광업기계	
	주	가. 건설공사에 이용되는 기계, 굴삭기, 콘크리트 믹서기 및 준설기와 같은 자동 추진식 기계를 포함한다. 나. 기중기 및 크레인(제12류-05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5-05	세탁, 청소 및 건조용 기계	
	주	가. 다림용 기계 및 탈수기와 같이 린넨 제품 및 의복을 처리하는 기구 및 기계를 포함한다. 나. 식기 세척기 및 공업용 건조기를 포함한다.
15-06	방직, 재봉, 편물 및 자수용 기계 및 구성부품	
15-07	냉장기계 및 기기	
	주	가. 가정용 냉장 기기를 포함한다. 나. 냉장화물기차(제12류-3군) 또는 냉장화물트럭(제12류-8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5-08	[공란]	
15-09	공작기계, 연마기 및 주조기	
	주	3D프린터를 포함한다.
15-10	주입 및 포장용 기계	
15-99	그 밖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계	

제 16 류 사진 촬영기, 영상 촬영기 및 광학기기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and optical apparatus)

류 및 군	물품 목록
주	사진 촬영 또는 영상 촬영용 조명(제26류-5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6-01	사진 촬영기 및 영상 촬영기
16-02	프로젝터 및 뷰어
16-03	복사기 및 확대기
주	사진 촬영 이외의 방법(특히 열처리 또는 자기처리)을 이용하는 복사기기와 같은 사무용 기기, 마이크로필름 복사 및 투사 기기를 포함한다.
16-04	현상용 기기 및 장비
16-05	액세서리
주	사진 카메라용 필터, 노출계, 삼각대 및 촬영용 플래시를 포함한다.
16-06	광학 제품
주	가. 안경 및 현미경을 포함한다. 나. 광학 제품을 조합한 측정기기(제10류-04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6-99	그 밖의 사진 촬영기, 영상 촬영기 및 광학기기

제 17 류 악 기 (Musical instruments)

류 및 군	물품 목록
주	악기용 케이스(제3류-01군), 녹음 또는 재생을 위한 장치(제14류-01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7-01	건반악기
주	전자 및 그 밖의 오르간, 아코디언, 자동 연주 및 그 밖의 피아노를 포함한다.
17-02	관악기
주	오르간, 하모늄 및 아코디언(제17류-01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7-03	현악기

류 및 군	물품 목록
17-04	타악기
17-05	자동연주악기
	주 가. 뮤직박스를 포함한다. 나. 자동 연주 건반악기(제17류-01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17-99	그 밖의 악기

제 18 류 인쇄 및 사무용 기계 (Printing and office machinery)

류 및 군	물품 목록
18-01	타자기 및 계산기
	주 컴퓨터 등 제14류-02군에 분류되는 물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8-02	인쇄기계
	주 가. 기명 인쇄기, 소인기 뿐만 아니라 자동식자기, 연판인쇄기, 조판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와 같은 복사기 및 오프셋 인쇄기를 포함한다. 나. 컴퓨터 프린터(제14류-02군) 및 복사기(제16류-03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18-03	활자 및 글자체
18-04	제본기, 인쇄기용 스테이플링기, 제본용 재단기 및 트리머
	주 절단기·트리머와 유사한 종이 재단 장치 및 기계를 포함한다.
18-99	그 밖의 인쇄 및 사무용 기계

제 19 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Stationery and office equipment, artists and teaching materials)

류 및 군	물품 목록
19-01	필기용지, 서신용 카드 및 알림 카드
	주 투사지, 등사지, 신문용지, 봉투, 연하장, 그림엽서, 멜로디 기능이 있는 카드 등과 같은 필기, 제도, 회화, 또는 인쇄에 사용되는 광의의 종이를 포함한다.
19-02	사무용품
	주 가. 동전 분류기와 같은 계산대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포함한다.

류 및 군	물품 목록
	나. 일부 사무용 물품은 다른 류 또는 군에 포함된다. 사무용 가구는 제6류, 사무용 기계 및 기구는 제14류-02군, 제16류-03군, 제18류-01군, 제18류-02군, 또는 제18류-04군, 필기용 재료는 제19류-01군 또는 제19류-06군에 분류된다.
19-03	달력
	주 다이어리(제19류-04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9-04	서적 및 그 밖의 유사한 외관을 가진 물품
	주 서적 표지, 바인더, 앨범, 다이어리 및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19-05	[공란]
19-06	필기, 제도, 회화, 조각, 판화 및 그 밖의 미술기법을 위한 재료 및 기구
	주 회화붓(제4류-04군), 제도 테이블 및 부속품(제6류-03군), 또는 필기용지 (제19류-01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9-07	교재 및 교습구
	주 가. 모든 종류의 지도, 지구본 및 천체 투영관(planetariums)을 포함한다. 나. 시청각 보조 교구(제14류-01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9-08	그 밖의 인쇄물
	주 인쇄된 광고물을 포함한다.
19-99	그 밖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제 20 류 판매 및 광고용 장비, 표지판 (Sales and advertising equipment, signs)

류 및 군	물품 목록
20-01	자동판매기
20-02	진열 및 판매용구
	주 가구류(제6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	표지판, 간판 및 광고용 장치
	주 가. 발광식 광고장치 및 이동식 광고장치를 포함한다. 나. 포장(제9류) 또는 신호기구(제10류-06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20-99	그 밖의 판매 및 광고용 장비, 표지판

제 21 류 게임용품, 완구, 텐트 및 스포츠 용품 (Games, toys, tents and sports goods)

류 및 군	물품 목록
21-01	게임용품 및 완구
	주 가. 축소모형을 포함한다. 나. 동물용 완구(제30류-99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1-02	운동·스포츠 용구 및 기구
	주 가. 축구공, 스키, 테니스 라켓 등 다른 특별한 목적 없이 다양한 스포츠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기구 및 장비를 포함하며, 카누 및 보트(제12류-06군), 공기 총 (제22류-01군), 스포츠용 매트 (제6류-11군) 등 스포츠 외 기능에 의해 다른 류 및 군으로 분류되는 기타 모든 스포츠용구는 제외한다. 나. 가항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훈련기구, 실외용 게임에 필요한 용구 및 기구를 포함한다. 다. 스포츠 의류(제2류), 터보진 또는 썰매(제12류-14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1-03	그 밖의 오락용품
	주 가. 회전목마 및 확률 게임용 자동기계를 포함한다. 나. 게임용품 및 완구 등 제21류-01군 또는 제21류-02군에 포함되는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21-04	텐트 및 텐트 부속품
	주 가. 장대, 말뚝 및 그 밖의 유사용품을 포함한다. 나. 의자(제6류-01군), 테이블(제6류-03군), 식기류(제7류-01군) 및 캠핑 트레일러(caravans)(제12류-10군)와 같이 그 본래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류로 분류되는 캠핑용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21-99	그 밖의 게임용품, 완구, 텐트 및 스포츠용품

제 22 류 무기, 화약제품, 사냥·낚시 및 살충 용품 (Arms, pyrotechnic articles, articles for hunting, fishing and pest killing)

류 및 군	물품 목록
22-01	발사 무기
22-02	그 밖의 무기
22-03	탄약, 로켓 및 화약제품
22-04	과녁 및 부속품
	주 이동식 과녁을 움직이기 위한 특수장치를 포함한다.

류 및 군	물품 목록
22-05	사냥 및 낚시용품
	주 의류 용품(제2류), 또는 무기류(제22류-01군 또는 제22류-02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2-06	돛(올가미), 살충제품
22-99	그 밖의 무기 및 화약제품, 사냥·낚시 및 살충용품

제 23 류 유체공급기, 위생, 난방, 환기 및 공기조절기, 고체연료 (Fluid distribution equipment, sanitary, heating, ventilation and air-conditioning equipment, solid fuel)

류 및 군	물품 목록
23-01	유체공급기
	주 파이프 및 파이프용 부품을 포함한다.
23-02	[공란]
23-03	난방기기
23-04	환기 및 공기조절기
23-05	고체연료
23-06	위생용 기기
23-07	배뇨 및 배변용 장비
23-08	다른 류 및 군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위생장비 및 부품
23-99	그 밖의 유체공급기, 위생설비용품, 난방기기, 환기 및 공조기기, 고체연료

제 24 류 의료 및 실험실용 기구 (Medical and laboratory equipment)

류 및 군	물품 목록
주	“의료 기구”는 외과용, 치과용 및 수의용 기구를 포함한다.
24-01	의사, 병원 및 실험실용 기기 기구
24-02	의료 기구, 실험실용 기기 및 용구
	주 수동 기구만을 포함한다.
24-03	의료용 보철 용품

류 및 군	물품 목록
24-04	상처치료, 간호 및 의료용품
	주 상처 치료용 붕대를 포함한다.
24-05	보행보조기구
	주 보행용 지팡이(제3류-03군)는 포함하지 않는다.
24-99	그 밖의 의료 및 실험실용 기구

제 25 류 건축 유닛 및 건설 자재 (Building units and construction elements)

류 및 군	물품 목록
25-01	건축재료
	주 벽돌, 들보, 성형판, 타일, 슬레이트 및 패널을 포함한다.
25-02	조립식 또는 사전 조립된 건축 부자재
	주 가. 창, 문, 옥외 셔터, 격벽 및 격자를 포함한다. 나. 계단(제25류-04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5-03	가옥, 차고 및 그 밖의 건축물
25-04	층계, 사다리 및 비계
25-99	그 밖의 건축 유닛 및 부자재

제 26 류 조명기기 (Lighting apparatus)

류 및 군	물품 목록
26-01	촛대 및 나뭇가지형 촛대
26-02	햇불, 손전등, 랜턴
26-03	공공 조명기기, 옥외 조명, 무대조명
	주 실외등, 무대조명 및 탐조등을 포함한다.
26-04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광원
	주 전기 램프의 전구, 발광식 장식판, 양초를 포함한다.
26-05	램프, 전기스탠드, 샹들리에, 벽 부착등 및 천장 부착등, 사진 및 영사기 투광 램프
26-06	차량용 조명기기

류 및 군	물품 목록
26-07	다른 류나 군에 포함되지 않는 조명기기 부품 및 부속품
	주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광원(제26류-04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26-99	그 밖의 조명기기

제 27 류 담배 및 흡연용품 (Tobacco and smokers' supplies)

류 및 군	물품 목록
27-01	담배, 시가, 쥘런
27-02	파이프, 시가 및 쥘런대
27-03	재떨이
27-04	성냥
27-05	라이터
27-06	시가케이스, 쥘런 케이스, 담배 단지 및 주머니
	주 가. 포장(제9류)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전자담배용품용 케이스를 포함한다.
27-07	전자 담배 및 전자담배용품
27-99	그 밖의 담배 및 흡연용품

제 28 류 의약품 및 화장품, 욕실·미용용품 및 기기 (Pharmaceutical and cosmetic products, toilet articles and apparatus)

류 및 군	물품 목록
28-01	의약품
	주 가. 동물용 약품을 포함한다. 나. 약용 오블라토(chemicals in cachet), 캡슐형 약품, 캔디형 약품, 환약 및 알약 및 식물 등을 포함한다. 다. 상처 처치 및 간호용품(제24류-04군)은 포함하지 않는다.
28-02	화장품
	주 동물용 물품을 포함한다.
28-03	욕실용품 및 미용기구
	주 가. 면도기, 제모기기, 마사지 도구 및 기기를 포함한다.

류 및 군	물품 목록
	나. 욕실용 브러시와 메이크업용 브러시(제04류-02군), 동물용 털 손질기기(제30류-10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헤어 스타일링 기기 및 기구(제28류-06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8-04	가발, 인조미용용품
28-05	방향제
	헤어 스타일링 기기 및 기구
28-06	가. 이발용 기기 및 기구를 포함한다. 주 나. 부분가발(제28류-04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동물용 털 손질기기(제30류-10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8-99	그 밖의 의약품 및 화장품, 욕실·미용용품 및 기기

제 29 류 소방, 사고방지 및 구조용 장치 및 장비 (Devices and equipment against fire hazards, for accident prevention and for rescue)

류 및 군	물품 목록
	소방장치 및 기구
29-01	가. 소화기를 포함한다. 주 나. 소방차(차량)(제12류-13군), 소방 호스 및 소방 호스용 노즐(제23류-01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사고방지 및 구조용 장비
29-02	가. 동물용 장치 및 기구를 포함한다. 주 나. 사고방지 보호용 헬멧(제2류-03군) 및 의류(제2류-02군, 제2류-04군, 제2류-06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9-99	그 밖의 소방, 사고방지 및 구조용 장치 및 장비

제 30 류 동물 관리 및 사육용품 (Articles for the care and handling of animals)

류 및 군	물품 목록
주	동물용 사료(제1류) 또는 동물용 의약품 및 화장품(제28류-01군 또는 제28류-02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0-01	동물용 의류
30-02	동물 우리, 새장, 개집 및 유사한 물품
주	건축물(제25류)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류 및 군	물품 목록
30-03	사료 공급기 및 물 공급기
30-04	마구
	주 동물용 목줄을 포함한다.
30-05	채찍 및 가축 물이용 막대
30-06	동물용 침대, 동지 및 가구
	주 고양이 스크래처 기둥을 포함한다.
30-07	헛대 및 새장 부속품
30-08	표식, 식별표 및 족쇄
30-09	말 등을 매는 말뚝
30-10	동물용 털 손질기기
30-11	동물 배설물 제거용 기기 및 변기
30-12	동물용 장난감 및 훈련용 장비
30-99	그 밖의 동물 관리 및 사육용품

제 31 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음식 또는 음료조리용 기계 및 기구 (Machines and appliances for preparing food or drink, not elsewhere specified)

류 및 군	물품 목록
주	수동식 조리용구, 음식·음료조리 및 서빙용 기기 및 기구(제7류), 주방용 칼, 고기뼈용 칼(제8류-03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1-00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음식 또는 음료조리용 기계 및 기구

제 32 류 그래픽 심벌, 로고, 표면 문양 및 장식, 실내·실외 배치 (Graphic symbols and logos, surface patterns, ornamentation, arrangement of interiors and exteriors)

류 및 군	물품 목록
32-00	그래픽 심벌, 로고, 표면 문양 및 장식
32-02	실내·실외 배치
	주 물체의 고정된 배치도 포함된다.

4 Section

Hague guide

헤이그 국제출원제도 FAQ

1. 헤이그협정 일반사항

1. 헤이그 국제출원제도는 무엇인가?

디자인의 국제등록을 위한 헤이그 국제출원제도는 헤이그협정의 계약당사자간에 적용되는 국제디자인출원시스템이다.

이 국제출원제도는 디자인의 권리자가 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언어로 작성한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고 하나의 통화(스위스 프랑)로 수수료를 내면서 다수의 계약당사자 영역에서 보호를 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헤이그협정은 3개의 개별 협정으로 구성되었다. 2010. 1. 1. 동결된 런던 개정협정(1934 Act), 헤이그 개정협정(1960 Act)과 제네바 개정협정(1999 Act)이다.

원칙적으로, 국가는 1960년 개정협정과 1999년 개정협정 모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정부간 기구(EU, OAPI)는 1999년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와 관련성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국제등록을 위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을 할 수 있고, 이 출원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4. 4. 1. 제네바 개정협정(1999 Act)에 가입하여 2014. 7. 1. 부터 협정이 발효되었다.

2. 헤이그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국제출원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출원인은 아래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국제출원인 자격).

- 1) 계약당사자의 국민
- 2) 계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의 소속 국가의 국민
- 3) 계약당사자 영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4) 계약당사자 영역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

5) 계약당사자 영역에 거소가 있는 자(1999년 협정에만 해당)

3. 헤이그 국제출원제도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커버하는가?

아니다.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제도는 협정의 계약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만을 지정할 수 있다. 2023년 8월 현재 1999년 개정협정의 계약당사자는 71개이며, 가입된 국가를 기준으로 96개국이다.

* 계약당사자 목록 : <https://www.wipo.int/hague/memberprofiles/selectmember>

다만, 국제출원인이 1960년 개정협정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질 때는 1960년 개정협정의 가입국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헤이그 국제출원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국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1960년 계약당사자도 또한 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국제출원에서 유럽연합(EM)을 지정하면 유럽연합의 소속국가는 모두 포함되는가?

아래 유럽연합의 27개 소속국가에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The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and Sweden

5. 국제출원에서 아프리카지식재산연합(OAPI)을 지정하면 소속국가는 모두 포함되는가?

아래 아프리카지식재산연합 17개 소속국가에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Benin; Burkina Faso;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ngo; Comoro Islands; Cote d'Ivoire; Equatorial Guinea; Gabon; Guinea; Guinea Bissau; Mali; Mauritanie; Niger; Senegal; Togo

2.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6.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는가?

헤이그 국제출원은 자국 관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허용하는지에 대해 선언을 통하여 국제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한다. 대한민국은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서의 제출을 허용한다고 선언하였으므로 가능하다.

7. 전자출원(eHague)이 서면출원보다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 1) 서면출원에서 1페이지 이상의 도면이 포함되면 초과하는 페이지당 150 CHF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비용이 전자출원 비용이 저렴
- 2) 실시간으로 데이터와 형식을 검사하므로 하자 있는 출원서 제출이 방지됨
- 3) 여러 장의 도면을 업로드할 수 있고, 높은 품질의 도면이 공개됨
- 4) 자동화된 수수료 계산기를 제공함
- 5)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 가능
- 6) 출원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음
- 7) 기존의 출원서를 템플릿처럼 사용하여 기존 데이터의 재사용 가능

8. 국제출원에서 국제출원인의 계약당사자를 지정(자기지정)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계약당사자 중 선언으로 자기지정을 금지하면 지정할 수 없으나 현재 1999년 협정의 가입국 중 선언으로 자기지정을 금지한 계약당사자는 없다. 대한민국 또한 자기지정이 가능하다.

9.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무엇인가?

보호범위는 출원서를 제출할 때 제공되는 디자인의 도면에 의해 정해진다. 최대한 보호받기를 원하면 디자인이 완전히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다양한 각도에서 물품을 표현하고 여러 다른 각도에서 표현된 도면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10. 국제출원에서 디자인의 분류는 어떻게 하는가?

디자인은 로카르노 국제분류에 따라 분류된다. 하나의 국제출원에 둘 이상의 디자인을 출원할수 있으나 모든 디자인은 로카르노 분류의 같은 분류에 속해야 한다.

* 로카르노 분류 조회 : <https://www.wipo.int/classifications/locarno/en/>

11. 국제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선출원의 우선권 주장(파리협약 4조에 따라 파리협약의 당사국이거나 WTO 멤버인 국가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국내 또는 지역디자인을 기초로)은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이 제출될 때 할 수 있다. 지정관청은 선출원일로부터 국제출원의 출원일 사이에 선출원이 공개되었으면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권리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

12. 우선권 주장시 DAS 코드를 통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교환할 수 있는가?

DAS는 WIPO에서 운영하는 Digital Access Service(전자파일 교환서비스)의 줄임말로 참여국간 서류를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DAS 시스템에 참가한 국가만 DAS코드를 사용하여 우선권 증명서류를 기재할

수 있으며, 원활한 교환을 위해서는 국가별 출원번호 형태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 국가는 국제사무국 홈페이지(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Depositing office(선출원국 or 1국)은 national industrial design

applications을, Accessing office(후출원국 or 2국)은 Hague international applications) 선택하여 조회하면 DAS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류를 교환할 수 있는 국가를 확인할 수 있다.



13. 국제출원에서 공개연기는 언제 신청할 수 있는가?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만 공개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출원인은 국제출원에서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최대 30개월(1999년 협정) 이내의 기간에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협정에 따르면 연기의 최장 기간은 각 체약당사자 국내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제출원서 서식(DM/1)에 공개연기와 관련된 국가와 조건이 표시되어 있다. 국제출원인은 공개연기 기간 중 언제라도 국제등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기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14. 국제출원서가 제출된 이후의 절차는?

국제등록을 위한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국제사무국은 형식적인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심사한다.

출원서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를 생성하고 이를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국제사무국은 디자인의 도면을 포함한 국제등록의 모든 관련 데이터를 WIPO 웹사이트의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한다.

만약, 출원서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국제사무국은 하자통지를 발송하고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자를 보정할 것을 요청한다.

15. 즉시공개의 이점은 무엇인가?

디자인의 국제등록을 즉시 공개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있다. 일부 국가나 지역 법률에 따르면 디자인의 권리는 공개된 이후에만 손실보상 청구권 등 공개에 따른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6. 국제등록일이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국제등록일은 국제출원일이다. 즉, 국제출원을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모든 E-filing 출원 및 대부분 서면출원)하고 출원일의 연기를 가져오는 하자가 없으면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이 국제출원일이면서 국제등록일이 된다. 간접출원의 경우 수리관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경우 중대하자가 없으면 수리관청 접수일이 국제등록일이 된다.

3. 수리관청 및 지정관청 절차

17.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은 온라인 출원과 서면 출원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출원은 특허청 서류 제출을 위한 사전절차(인증서 발급 등), 서식 작성기(통합서식작성기, KIPO-Editor 등) 설치, 국제출원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의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 서면 출원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서식기 또는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서식(DM/1)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한다. 다만, 전자적 기록매체(CD 등)를 이용한 서면 출원은 불가하다.

18. 국제출원서 제출 및 국내절차 진행을 위한 대리인 선임 방법은?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서 제출과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의 국내절차 진행을 위한 대리인 선임은 디자인보호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 제출하는 서류에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포괄위임 등록을 한 대리인은 헤이그 국제출원에 관한 포괄위임코드(F00)를 기재함으로써 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9. 국제출원의 견본 제출 방법은?

2차원 디자인이면서 공개연기를 신청한 국제출원인은 도면 대신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견본의 규격 등에 대하여는 가이드의 해당 부분과 국제사무국 관련 문서를 참고한다. 견본을 제출하고자 하는 국제출원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전자문서 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를 이용하여 국제사무국용 1개와 지정국가 수만큼의 견본을 제출한다.

20. 대체서류 제출요청서를 받고 대체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의 효과는?

대체서류 제출요청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특허청은 그 국제출원을 무효처분하거나 국제출원인이 최초 제출한 국제출원서 원본을 국제사무국에 보낸다. 대체서류의 제출 없이 국제출원서를 보내면 국제사무국 방식심사 결과에 따라 하자통지를 받을 수 있고 이 하자가 국제출원일의 연기를 수반하는 하자이면 보정서 접수일이 국제출원일이 될 수도 있다.

21. 국내출원의 심사, 일부심사 대상 물품의 구분이 국제출원에도 적용되는지?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이 심사 대상인지는 국내출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즉,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이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이면 일부심사 대상으로 취급한다.

22. 1960년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국가를 지정할 수 없는지?

원칙적으로 국제출원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국가가 기속되는 협정의 가입국만을 지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 1999년 협정에 기속되는 국제출원 자격을 가지게 되므로 1999년 협정에 기속되는 국가만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국제출원인은 해당 자격을 기재하고 1960년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국가를 지정할 수 있다.

4. 국제출원 수수료

23. 국제출원서의 제출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국제출원의 수수료 체계는 아래와 같다(단, 수수료 금액은 조약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최초(첫 번째) 디자인에 대한 397CHF의 기본료와 추가(두 번째부터) 디자인당 19CHF 추가수수가 적용된다.
- 2) 도면당 17CHF의 공개 수수료가 적용된다. 서면출원 시에는 도면이 1페이지 이상이 되면 초과하는 페이지당 150CHF의 공개 수수료가 추가로 적용된다. (전자출원(eHague)을 이용한 출원시에는 페이지 당 공개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는다.)
- 3) 지정관청이 수행하는 심사수준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 1수준: 지정관청이 실체심사를 수행하지 않으면 1디자인당 42CHF + 추가 디자인 당 2CHF
 - 2수준: 지정관청이 신규성 이외의 실체심사를 하면 1디자인당 60CHF + 추가 디자인 당 20CHF
 - 3수준: 지정관청이 신규성 심사를 포함한 실체심사를 하면 1디자인당 90CHF + 추가 디자인 당 50CHF
- 4) 지정관청이 심사관청이거나 정부간 기구이면 표준지정수수료 대신 개별지정 수수료를 선언할 수 있다. 개별 지정수수료는 DM/1 서식의 수수료 계산서를 참조하면 된다.
- 5) 도면의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면 초과된 단어당 2CHF 추가수수가 적용된다.

24. 국제사무국(WIPO)에 수수료를 직접 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국제출원 수수료는 WIPO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과 간접출원 한 관청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WIPO 직접 납부하는 방법만을 채택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다.

- 1)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당좌계좌 입금

- * WIPO에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내는 고객이 스위스 통화(CHF)로 직접 내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최초 예치금액 2,000CHF 이상)
- * WIPO 개설 당좌계좌번호를 전자출원 및 갱신 시 입력하거나 제출 서식에 적어 제출함.
- * 자세한 설명은
WIPO홈페이지(https://www.wipo.int/finance/en/current_account/) 참조

2) 신용카드(Visa, Master, American Express)를 이용하여 WIPO 전자출원시 혹은 하자통지서 등 국제사무국 통지서에 기재된 코드를 이용하여 전자납부(E-payment)가 가능하다.

3) WIPO 은행계좌 이체를 이용한 방법

- * Account name: WIPO / OMPI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IBAN: CH51 0483 5048 7080 8100 0
Swift: CRESCHZZ80A

4) 우편환을 이용한 납부(유럽에서만 가능)

- * Account name : WIPO/OMPI
SWISS POST/Postfinance, Enghaldenstrasse 37, CH-3030 Bern
IBAN : CH03 0900 0000 1200 5000 8
Swift : POFICHBE

25. 컬러도면이 흑백도면보다 공개료가 비싼가?

도면의 컬러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수수료 차이는 없다.

26. 즉시공개를 신청하면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하는가?

즉시공개 신청은 추가 수수료가 없다.

27. 지정관청이 국제등록의 보호를 거절하면 수수료가 반환되는가?

지정관청에서 심사를 거쳐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4. 국제출원 심사

28. 국제등록의 보호기간은 무엇인가?

국제등록의 보호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추가적인 5년의 기간 단위로 계약당사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장 보호기간까지 갱신할 수 있다.

* 각 계약당사자의 최장 보호기간은 WIPO 홈페이지

(<https://www.wipo.int/hague/en/declarations/index.html#protection>) 참조

29. 지정관청이 국제등록의 보호를 거절한 때에 조치사항은 무엇인가?

각 계약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 국제등록의 보호를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지정관청은 거절통지가 가능한 기간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의 효력을 부인한다는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절통지는 국제등록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999년 협정에 따른 심사관청이거나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관청이면 12개월 이내에(계약당사자의 선언 필요) 국제사무국에 통지된다.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에 관하여 지정관청이 통지한 모든 거절사유를 국제등록부에 기재하고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하며 국제등록 권리자에게 그 사본을 발송한다.

국제등록 권리자는 관련 지정계약당사자의 거절에 대항하여 보정, 재심사 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국제등록의 권리자는 디자인이 거절통지를 발행한 관청에 직접 출원된 것과 같이 거절통지에 대응할 권리를 가진다. 그 후속 절차는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 가능하며 관련 계약당사자 국내 법령에 의한 요건에 따라야 한다(기한, 대리인 선임 등).

30. 거절통지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부터 개시되는가?

원칙적으로 거절통지가 가능한 기간은 WIPO 웹사이트의 국제디자인공보에 국제등록이 공개된 날부터이다.

5. 국제등록에 관한 정보의 변경신청 등

31. 소유권 변경이 있을 때 국제등록의 소유권 변경신청(DM/2)는 누가 제출하여야 하는가?

소유권 변경은 계약(양도), 판결, 법률의 규정(상속 또는 파산) 또는 법인의

합병 등으로 발생한다. 일부 국가에 대한 또는 일부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의 부분적 변경이 가능하다. 소유권 변경 기록은 새로운 소유자(양수인) 또는 국제등록의 권리자(양도인)가 신청할 수 있다. 새로운 소유자는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국제출원인 자격) 즉, 헤이그 협정의 체약당사자와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관련성 또는 자격”은 국제등록에서 지정된 소유권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각 체약당사자에 대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32. 국제등록의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이 기록될 수 있는가?

갱신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국제등록의 만료일 이후에는 어떠한 변경도 기록되지 않는다. 국제등록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는 수수료표에 정한 갱신 수수료(가산료 포함)를 내고 국제등록의 갱신이 가능하고, 국제등록의 갱신 이후 각종 정보의 변경신청이 기록된다.

33. 헤이그 국제출원제도에 따라 설정등록이 가능한가?

지정체약당사자가 국제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보호 여부를 결정하므로 WIPO 국제사무국에 의해 설정등록될 수 없다.

34. 국제등록의 권리자(또는 대리인)는 국제등록의 만기일 이전에 통지를 받을 수 있는가?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의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에 권리자(또는 대리인)에게 국제등록의 갱신을 알리는 만료일에 관한 비공식적인 통지를 발송한다. 그러나 권리자(또는 대리인)가 이러한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수수료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국제등록이 소멸된 것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하지 못한다.

35. 갱신을 위한 수수료를 국제등록의 만기일에 낼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국제등록의 갱신을 위한 수수료는 국제등록의 만기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그 만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36. 갱신수수료의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갱신수수료를 납부기한(국제등록의 만료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의 유예기간(국제등록의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 계좌 또는 우편환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료(기본 수수료의 50%)가 추가된다. 이러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국제등록은 더는 갱신될 수 없다.

37. 국제등록이 갱신된 이후 갱신증명이 발급되는가?

갱신 국제등록에 기록되면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의 권리자 또는 대리인에게 갱신 사실을 통지한다.

38. 우선권 주장을 위해 국제출원의 증명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가?

국제출원의 증명사본은 국제출원인의 성명, 국제출원의 참조번호(국제등록 번호), 서류의 수령인에 관한 정보(성명,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를 명시하여 국제사무국 사이트 Contact Hague(<https://www3.wipo.int/contact/en/hague/>)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39. 국제등록의 내용에 관한 초본 또는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가?

국제등록의 초본 및 (증명 또는 미증명) 사본은 원하는 정보의 종류를 명시하여 국제사무국 사이트 Contact Hague(<https://www3.wipo.int/contact/en/hague/>)로 요청할 수 있다. 관련 국제등록번호와 서류의 수령인에 관한 정보(성명,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40. 수수료 변경, 새로운 가입국 또는 헤이그 국제출원제도의 법률적 변경 등 최신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최신 정보는 WIPO 메일 서비스(Hague News) 구독을 이용할 수 있다.

41. 좀 더 상세한 사항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국제사무국은 개인 또는 회사 등의 질문에 법률적 조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 법률적 사항에 대한 사항은 WIPO 홈페이지의 법률정보 메뉴(<http://www.wipo.int/wipolex/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Section

Hague guide

헤이그협정 가입국 목록

1. 계약당사자 목록

계약당사자 목록(국가코드/국가명)		가입 협정 및 수수료	
		1999 Act	1960 Act
(AL)	Albania	1	1
(AM)	Armenia	2	
(AZ)	Azerbaijan	1	
(BA)	Bosnia and Herzegovina	1	
(BG)	Bulgaria	2	2
(BJ)	Benin		1
(BN)	Brunei Darussalam	3	
(BR)	Brazil	2	
(BW)	Botswana	1	
(BX)	Benelux	1	1
(BY)	Belarus	2	
(BZ)	Belize	1	1
(CA)	Canada	IF	
(CH)	Switzerland	2	2
(CI)	Côte d'Ivoire		1
(CN)	China	IF	
(DE)	Germany	2	2
(DK)	Denmark	2	
(EE)	Estonia	2	
(EG)	Egypt	1	
(EM)	European Union	IF	
(ES)	Spain	1	
(FI)	Finland	3	
(FR)	France	1	1
(GA)	Gabon		1
(GB)	United Kingdom	1	
(GE)	Georgia	3	3
(GH)	Ghana	3	
(GR)	Greece		1
(HR)	Croatia	2	2
(HU)	Hungary	IF	IF
(IL)	Israel	IF	
(IS)	Iceland	3	
(IT)	Italy		1

체약당사자 목록(국가코드/국가명)		가입 협정 및 수수료	
		1999 Act	1960 Act
(JM)	Jamaica	3	
(JP)	Japan	IF	
(KG)	Kyrgyzstan	IF	IF
(KH)	Cambodia	2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3	3
(KR)	Republic of Korea	IF/3	
(LI)	Liechtenstein	1	1
(LT)	Lithuania	3	
(LV)	Latvia	2	
(MA)	Morocco		2
(MC)	Monaco	1	1
(MD)	Republic of Moldova	IF	IF
(ME)	Montenegro	1	1
(MK)	North Macedonia	1	1
(ML)	Mali		1
(MN)	Mongolia	1	1
(MU)	Mauritius	2	
(MX)	Mexico	IF	
(NA)	Namibia	1	
(NE)	Niger		1
(NO)	Norway	2	
(OA)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IF	
(OM)	Oman	1	
(PL)	Poland	2	
(RO)	Romania	3	3
(RS)	Serbia	3	3
(RU)	Russian Federation	IF	
(RW)	Rwanda	1	
(SG)	Singapore	1	
(SI)	Slovenia	1	1
(SM)	San Marino	1	
(SN)	Senegal		1
(SR)	Suriname		1
(ST)	Sao Tome and Principe	1	
(SY)	Syrian Arab Republic	3	
(TJ)	Tajikistan	3	
(TM)	Turkmenistan	1	
(TN)	Tunisia	2	

체약당사자 목록(국가코드/국가명)		가입 협정 및 수수료	
		1999 Act	1960 Act
(TR)	Türkiye	1	
(UA)	Ukraine	2	2
(US)	United States of America	IF	
(VN)	Viet Nam	3	
(WS)	Samoa	1	

* 우리나라에서 국제출원할 때는 1999 Act에 가입한 체약당사자만을 지정할 수 있다.

2. 정부 간 기구 가입국 현황

① 유럽연합 가입국(27개국)

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The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and Sweden

② 아프리카지식재산연합 가입국(17개국)

Benin; Burkina Faso;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ngo; Comoro Islands; Côte d'Ivoire; Equatorial Guinea; Gabon; Guinea; Guinea Bissau; Mali; Mauritanie; Niger; Senegal; To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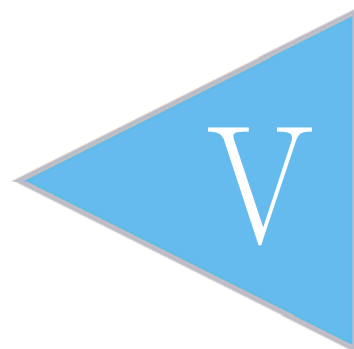
3. 헤이그협정 가입국의 선언사항 * 2023년 8월 현재

구분		선언국가
간접출원 금지 Article 4(1)(b)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Belarus, Belize, Benelux, Brazil, Canada, Croatia, European Union, France, Israel, Latvia, Monaco, Montenegro, North Macedonia, San Marino, Slovenia, Ukraine, United Kingdom
국제출원의 추가적인 필수사항		
1	창작자 신원 Article 5(2)(b)(i)	Romania
2	간단한 디자인 설명 Article 5(2)(b) (ii)	China, Romania, Syrian Arab Republic, Viet Nam

구분		선언국가	
3	청구범위 Article 5(2)(b)(iii)	United States of America, Viet Nam	
개별 지정수수료			
1	1999년 협정에 따른 개별 지정수수료 Article 7(2)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Canada, China, European Union, Hungary, Israel, Japan, Kyrgyzstan, Mexico,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ussian Federation, Turkmenistan, United States of America	
2	1960년 협정에 따른 개별 지정수수료 Rule 36(1)	Hungary, Kyrgyzstan, Republic of Moldova	
3	2단계 구분 개별지정수수료 Rule 12(3)	Mexico, United States of America	
공개연기			
1	최장 30개월 공개 연기 Article 11(1)(a)	6개월	Denmark, Finland, Israel, Norway
		12개월	OAPI, Belize, Benelux, Brunei Darussalam,, Cambodia, Croatia, Estonia, Jamaica, Samoa, Slovenia, Suriname, Syrian Arab Republic, United Kingdom
		18개월	Singapore
2	공개연기 불허 Article 11(1)(b)	Belarus, Brazil, Hungary, Iceland, Mexico, Monaco, Poland, Russian Federation, Ukraine, United States of America, Viet Nam	
디자인의 단일성 Article 13(1)		Brazil, China, Estonia, Kyrgyzstan, Mexico, Romania, Russian Federation,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United States of America, Viet Nam	
자기지정 금지 Article 14(3)(a)		None	
명의변경 효력금지 Article 16(2)		OAPI, Brazil, China, Denmark, Jamaica, Mexico, Republic of Korea, Russian Federation, United States of America	
지역관청의 심사 Article 19(1)		Belgium, Luxembourg, Netherlands	
창작자에 관한 특별요건 Rule 8(1)(a)(i)		Brazil, Finland, Ghana, Hungary, Iceland, Mauritius, Mexico	

구분		선언국가
창작자에 관한 선언 Rule 8(1)(a)(ii)		United States of America
특별한 도면의 요구 Rule 9(3)(a)		China, Republic of Korea, Viet Nam
표준지정수수료 (Rule 12(1)(c)(ii))	1수준	1수준 적용국가는 별도의 선언이 필요 없으므로 아래 선언국가를 제외한 계약당사자는 1수준에 해당함
	2수준	Armenia, Belarus, Brazil, Bulgaria, Cambodia, Croatia, Denmark, Estonia, Germany, Latvia, Mauritius, Morocco, Norway, Poland, Switzerland, Tunisia, Ukraine
	3수준	Brunei Darussalam,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nland, Georgia, Ghana, Iceland, Jamaica, Lithuania, Namibia, Republic of Korea, Romania, Serbia,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Viet Nam
비밀취급인가 Rule 13(4)		Russian Federation, United States of America
국제등록 효력 발생일(거절통지기간)		
1	12개월 내 거절통지기간 Rule 18(1)(b)	Canada, Chin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nland, Iceland, Israel, Jamaica, Japan, Kyrgyzstan, Lithuania, Mexico,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Russian Federation, Spain, Syrian Arab Republic, Türkiye, United States of America
2	선언일에서 6개월 초과 금지 Rule 18(1)(c)(i)	선언에 명기된 시기보다 늦을 수 있지만 그 언급일로부터 6개월 초과 금지 China, Mexico, Russian Federation, United States of America
3	거절통지 선언일 이후 신속한 통지 Rule 18(1)(c)(ii)	의도치 않은 결정연기 시 China, Jamaica, Japan,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디자인권의 최장 존속기간 (Article 17(3)(c))		15년 OAPI, Azerbaijan, Belarus, Belize, Benin, Botswana, Brunei Darussalam, Cambodia, Canada, China, Côte d'Ivoir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구분	선언국가	
		Egypt, Gabon, Ghana, Jamaica, Kyrgyzstan, Mali, Mongolia(1999년 협정), Namibia, Niger, Oman, Rwanda,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ingapore, Suriname,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unisia, Turkmenistan, United States of America, Viet Nam
	20년	Mauritius, Republic of Korea
	25년	Albania, Armenia, Benelux, Bosnia and Herzegovina, Brazil, Bulgaria, Croatia, Denmark, Estonia, European Union,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srael, Italy, Japan,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Mexico, Montenegro, Morocco, North Macedonia, Norway, Poland, Republic of Moldova, Romania, Russian Federation, San Marino, Serbia, Slovenia, Spain, Switzerland, Türkiye, Ukraine, United Kingdom
	50년	Monaco



헤이그협정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관련 서식

1. 국제출원서(DM/1)
2.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신청(DM/2)
3. 국제등록의 감축 신청(DM/3)
4. 국제등록의 갱신 신청(DM/4)
5. 국제등록의 포기 신청(DM/5)
6. 국제등록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신청(DM/6)
7. 대리인 선임 신청(DM/7)
8. 대리인의 성명/주소 변경 신청(DM/8)
9. 대리인 선임의 취소(DM/9)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국제출원서

(DM/1)

DM/1 (E)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IMPORTANT

We strongly recommend that you file your international application online using [eHague](#).

Warning: When using form DM/1, an extra publication fee of 150 Swiss francs applies per additional page of reproductions.

If using this form:

1. All fields are **mandatory** unless indicated otherwise.
2. Complete this form electronically; WIPO does not accept handwritten forms.
3. Avoid printing and scanning this form. Upload the completed and signed form directly to WIPO through [Contact Hague](#).
4. One international application may contain **up to 100 designs** in the same class of the [Locarno Classification](#).
5. **Reproductions** must be prepared according to [standard requirements](#).
6. **Security clearance** is required by certain domestic laws:
 - designs created in the **Russian Federation**, by **Russian legal entities or nationals**, are subject to a security clearance procedure by the [national Office](#) to ensure that they do not contain state secrets; and
 - for designs crea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applicant must obtain a license from the [national Office](#) before filing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7. Use the [Hague System Fee Calculator](#) to calculate the cost of your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consult [Hague System Fees and Payments](#).
8. For more information on Contracting Parties and their Offices, refer to [Hague System Member Profiles](#). For more information on the completion of this form,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ANNEXES

Annex I – submit a Declaration of Inventorship, or, if not possible, a *Substitute Statement in Lieu of a Declaration of Inventorship* (mandatory if designat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nex II – submit documentation concerning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designation of **China,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refer to item 15).

Annex III – identify information known to be material to the eligibility for protection of the design(s) concerned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nex IV – submit a micro entity certification in order to benefit from a reduction of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fer to item 18).

Annex V – submit documentation in support of a priority claim (designation of **China,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refer to item 13).

DM/1 (E)

국제등록 출원서

출원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헤이그 사용자 가이드 참조(<http://www.wipo.int/hague/en/guide/ia.html>)

중요

우리는 eHague 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당신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고 : DM/1 서면서식을 사용할 때, 제출된 도면의 추가 페이지당 150스위스프랑의 추가공개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만약 이 서식을 사용한다면

1.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한,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2. 이 서식은 전자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WIPO는 수기로 작성된 서식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출원서는 반드시 인쇄되거나 타자된 문서로 해야 합니다.
3. 이 서식을 인쇄하거나 스캔하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완전하고 서명된 서식을 contact Hague를 통해 WIPO에 직접 제출하여 주십시오.
4. 하나의 국제출원서에는 로카르노 분류의 같은 분류에 속하는 최대 100개의 디자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도면은 반드시 표준 요구사항에 따라 준비되어야 합니다.
6. 일부 국내법에 따라 비밀정보 취급허가가 요구됩니다.
러시아 법인 또는 개인이 러시아연방 내에서 창작한 디자인은 러시아특허청의 비밀정보 취급허가 절차에 따른다는 러시아연방 국내법의 요건으로, 이는 해당 디자인이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국내법에 따라, 미국에서 창작된 디자인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출원되기 전에 미국특허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합니다.
7. 국제출원서의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헤이그 시스템 수수료 계산기를 사용하거나 Hague System Fees and payments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8. 계약당사자 및 관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헤이그 멤버프로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식의 작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헤이그시스템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별첨 1은 미국을 계약당사자로 지정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발명자에 관한 선언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발명자 선언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발명자 선언서를 대신하는 대체기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첨 2는 중국, 일본, 대한민국 지정 시,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항목 15 참조)

별첨 3은 미국을 계약당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디자인 보호를 위해 알게 된 중요한 정보들제공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별첨 4는 미국을 계약당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극소기업(micro entity)증명을 제출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항목 18 참조)

별첨 5는 중국, 일본, 대한민국을 지정하는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을 위한 서식입니다. (항목 13 참조)

DM/1(E)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u>For use by the applicant</u> Your reference :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tains the following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Annexes: ☐ I ☐ II ☐ III ☐ IV ☐ V	<u>For use by the Office of indirect filing</u> OFFICE TRANSMITT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f applicable) Name of the Office : Office reference : Date of receip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y the Office : Signature and/or seal of the Office :
--	--

1

Applicant

(a) Applicant is a :

☐ Natural person – Family (last) name: Given (first) name:☐ Legal entity – Official designation:

(b) Address:

Postal code: City: Region/state(optional)..... Country:

(c) E-mail address: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to this email address, unless an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is indicated in Item 4 (only for multiple applicants), or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Please ensure that the email address is accurate and kept up to date.

Telephone:

Include the country and area code, e.g. +41 22 338 7575

2

Entitlement to File

The applicant must be a national of, or have a domicile, habitual residence or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commercial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Party. You must indicate the corresponding Contracting Party(ies) in each field. If a field is not applicable, write "None". For Contracting Parties that are also members of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GO) (European Union or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ndicate both entities (example: "France, European Union") in all relevant fields. As regards member states of IGOs that are themselves not Contracting Parties, only indicate the name of the IGO.

(a) Nationality:

(b) Domicile:

(c)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d) Habitual residence:

3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only if the 1999 Act applies)

Indicate the Contracting Party or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bound by the 1999 Act and provided in item 2 above, to be considered as the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If no Contracting Party is indicated in the box, and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s filed through the Office of a Contracting Party indicated in item 2, that Contracting Party is deemed to be the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

☐ If there are several applicants, check this box and provide the information required under item 1, 2 and 3 below, for each additional applicant on a continuation sheet

DM/1(E)

국제등록 출원서

출원인이 사용합니다

참조번호 :

이 국제출원에는 다음 수의 연속용지를 포함합니다.

.....

이 국제출원은 다음의 별첨서류가 첨부됩니다.

☐ I ☐ II ☐ III ☐ IV ☐ V

간접출원의 관청이 사용합니다

국제출원을 전송하는 관청(해당되는 경우)

관청명 :

관청 참조번호 :

관청의 국제출원의 접수일 :

관청의 서명 :

1

출원인

(a) 출원인

☐ 자연인 - 성: 이름:☐ 법인 - 공식명칭:

(b) 주소:

우편번호: 도시명: 광역명(선택사항): 국가명:

(c) 이메일주소:

국제사무국은 4번 항목에 대체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거나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이 이메일 주소로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정확하고 최신주소로 유지하십시오.

전화번호:

국가 및 지역 번호를 포함하십시오. (예시. +41 22 338 7575)

2

출원 적격

출원인은 반드시 계약당사자에 국적, 주소, 거주지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출원인은 반드시 각 항목에 해당되는 계약당사자(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적용되는 사항이 없는 항목이 있으면 "None"으로 기재하십시오. 정부간 기구(유럽연합,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OAPI))의 회원국인 계약당사자와 관련되는 경우, 해당하는 조건 각각에 관하여 회원국과 정부간 기구가 모두 표시합니다(예, 프랑스, 유럽연합) ; 적격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과 관련되는 경우, 그 정부간 기구만이 표시합니다.

(a) 국적 :

(b) 주소 :

(c) 실제의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 :

.....

(d) 거소(1999개정협정 계약당사자인 경우) :

3

출원인의 계약당사자 (1999년 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출원인의 계약당사자로 간주되는 국가로서, 1999년 협정에 기속되면서 항목 2에서 언급된 계약당사자 또는 계약당사자 중 하나를 기재하십시오. 만약 출원인의 계약당사자가 표시되지 않은 채 국제 출원서가 항목 2에 표시된 계약당사자의 관청을 통해 출원되었다면, 2번에 표시된 계약당사자가 출원인의 계약당사자로 간주됩니다.

출원인의 계약 당사자 :

☐ 출원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자에 체크하고 각 출원인에 대한 1,2,3에서 요구된 정보를 연속용지에 기재하십시오.

4**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for Multiple Applicants (if applicable)**

complete this item if there are multiple applicants, and no representative is appointed.

Note : if there is only one applicant or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the information provided under this item will be disregarded.

Email Address :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to this email address only. please ensure that it is accurate and kept up to date

5**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optional)**

The person identified below is hereby appointed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applicant.

Only one representative may be appointed. Note : a legal firm is regarded as one representative. If both a natural person and legal entity are indicated, the representative will be recorded with the name of the legal entity preceding the name of the natural person.

(a) Representative is a :

☐ Natural person – Family name: Given name:☐ Legal entity – Official designation:.....

(b) Address:

Postal code: City: Region/state(optional): Country:

E-mail address:

If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to this email address. Please ensure that the email address is accurate and kept up to date.

Telephone(optional):

Include the country and area code, e.g. +41 22 338 7575

6**Number of Designs, Reproductions and/or specimens]**

Unity of design is a requirement in Brazil, China, Estonia, Kyrgyzstan, Mexico, Romania, the Russian Federation, the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Viet Nam. If this application includes more than one design and designates any of these Contracting Parties, WIPO strongly recommends that you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International Application – Item 6 and the Guidance on multiple designs. If designating China, also refer to item 16.

(a) Total number of designs (maximum of 100):

(b) Total number of reproductions:

(c) Total number of A4 pages comprising reproductions:

(d) Total number of specimens (if any):

4

복수 출원인을 위한 연락 이메일 주소

만약 복수의 출원인이면서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이 항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만약 출원인이 한명이거나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이 항목에 기재된 정보는 무시됩니다.

이메일 주소 :

WIPO는 오직 이 이메일 주소로 모든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정확하고 최신정보를 유지하십시오.

5

대리인 선임 (선택사항)

아래 표시된 자를 출원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한명의 대리인만 선임될 수 있습니다. 주의: 법인도 하나의 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자연인과 법인이 기재된다면 대리인은 자연인에 앞서서 법인의 이름으로 기재될 것입니다.

(a) 대리인:

☐ 자연인 - 성: 이름:

☐ 법인 - 공식명칭:

(b) 주소:

우편번호: 도시명: 광역명(선택사항): 국가명:

이메일주소:

만약 대리인이 선임된다면 WIPO는 모든 통지서를 이 이메일주소로 보낼 것입니다. 정확하고 최신정보를 유지하십시오.

전화번호:

국가 및 지역 번호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41 22 338 7575)

6

디자인, 도면 및/또는 견본의 수

디자인의 단일성은 브라질, 중국, 에스토니아, 키르기스스탄, 멕시코, 루마니아, 러시아, 시리아, 타지키스탄, 미국, 베트남에서 요구된다. 만약 이 출원서에 하나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고 이 체약당사자가 지정된 경우 WIPO는 헤이그시스템 가이드 국제출원서 6번 항목 및 복수디자인 가이드를 참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중국이 지정된 경우 또한 16번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a) 디자인의 총 수 (최대 100개) :

(b) 도면의 총 수 :

(c) 도면이 인쇄된 A4 용지의 총 수 :

(d) 견본의 총수 (견본이 있을 경우) :

7**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Select all Contracting Parties where you seek protection. Each designated Contracting Party must be bound by an Act (the 1999 Act and/or the 1960 Act) to which at least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dicated in item 2 is also bound (a list of Contracting Parties is annexed to this form).

Important: Additional Contracting Parties cannot be designated in the same application after filing.

- | | | | |
|---|--|---|--|
| ☐ AL Albania | ☐ EG Egypt | ☐ KR Republic of Korea | ☐ RO Romania |
| ☐ AM Armenia | ☐ EM European Union | ☐ LI Liechtenstein | ☐ RS Serbia |
| ☐ AZ Azerbaijan | ☐ ES Spain | ☐ LT Lithuania | ☐ RU Russian Federation |
| ☐ BA Bosnia and Herzegovina | ☐ FI Finland | ☐ LV Latvia | ☐ RW Rwanda |
| ☐ BG Bulgaria | ☐ FR France | ☐ MA Morocco | ☐ SG Singapore |
| ☐ BJ Benin | ☐ GA Gabon | ☐ MC Monaco | ☐ SI Slovenia |
| ☐ BN Brunei Darussalam | ☐ GB United Kingdom | ☐ MD Republic of Moldova | ☐ SM San Marino |
| ☐ BR Brazil | ☐ GE Georgia | ☐ ME Montenegro | ☐ SN Senegal |
| ☐ BW Botswana | ☐ GH Ghana | ☐ MK North Macedonia | ☐ SR Suriname |
| ☐ BX Benelux | ☐ GR Greece | ☐ ML Mali | ☐ ST Sao Tome and Principe |
| ☐ BY Belarus | ☐ HR Croatia | ☐ MN Mongolia | ☐ SY Syrian Arab Republic |
| ☐ BZ Belize | ☐ HU Hungary | ☐ MU Mauritius | ☐ TJ Tajikistan |
| ☐ CA Canada | ☐ IL Israel | ☐ MX Mexico | ☐ TM Turkmenistan |
| ☐ CH Switzerland | ☐ IS Iceland | ☐ NA Namibia | ☐ TN Tunisia |
| ☐ CI Côte d'Ivoire | ☐ IT Italy | ☐ NE Niger | ☐ TR Türkiye |
| ☐ CN China | ☐ JM Jamaica | ☐ NO Norway | ☐ UA Ukraine |
| ☐ DE Germany | ☐ JP Japan | ☐ OA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 US United States of America ⁵ |
| ☐ DK Denmark | ☐ KG Kyrgyzstan | ☐ OM Oman | ☐ VN Viet Nam |
| ☐ EE Estonia | ☐ KH Cambodia | ☐ PL Poland | ☐ WS Samoa |
| | ☐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 |

8**Product Indication**

Indicate for each design the product which constitutes the design or in relation to which the design is to be used.

Special note: Products belonging to class 32 of the Locarno Classification are not eligible for protection under the national laws of Canada, China (only 32-01)

Locarno Class to which the design(s) belong(s) (optional):

No. of the design (in numerical order)	Total number of reproductions	Product(s)	Subclass (optional)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9**Description (if applicable)**

General note: Only describe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designs that appear in the reproductions. Matter shown in a reproduction but for which protection is not sought may also be indicated here (and/or in the reproduction by means of dotted or broken lines or coloring). The description can disclose the operation or possible use of the design so long as it is not technical. Furthermore, omission of a specific view may be indicated. If the description exceeds 100 words, an additional fee of two Swiss francs per word exceeding 100 applies.

Special note for some Contracting Parties: If designating the Syrian Arab Republic, you must inclu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reproduction or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design. If designating China, Romania or Viet Nam, you must inclu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design. If designating the Russian Federation, the Office recommends that you inclu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design.

.....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7

제약당사자 지정

보호 받기를 원하는 모든 제약당사자를 표시하십시오. 각각의 지정 제약당사자는 항목 2에 표시된 제약당사자 중 하나가 기록되는 협정 -1999년 및/또는 1960년 개정협정-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중요 : 출원서가 제출된 이후에 같은 출원에 추가적인 제약당사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AL 알바니아 | ☐ ES 스페인 | ☐ LI 리히텐슈타인 | ☐ RU 러시아 |
| ☐ AM 아르메니아 | ☐ FI 핀란드 | ☐ LT 리투아니아 | ☐ RW 르완다 |
| ☐ AZ 아제르바이잔 | ☐ FR 프랑스 | ☐ LV 라트비아 | ☐ SG 싱가포르 |
| ☐ B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 GA 가봉 | ☐ MA 모로코 | ☐ SI 슬로베니아 |
| ☐ BG 불가리아 | ☐ GB 영국 | ☐ MC 모나코 | ☐ SM 산마리노 |
| ☐ BJ 베냉 | ☐ GE 조지아 | ☐ MD 몰도바 | ☐ SN 세네갈 |
| ☐ BN 브루나이 다루살람 | ☐ GH 가나 | ☐ ME 몬테네그로 | ☐ SR 수리남 |
| ☐ BR 브라질 | ☐ GR 그리스 | ☐ MK 마케도니아 | ☐ ST 상토메 프린스페 |
| ☐ BW 보츠와나 | ☐ HR 크로아티아 | ☐ ML 말리 | ☐ SY 시리아 |
| ☐ BX 베네룩스 | ☐ HU 헝가리 | ☐ MN 몽골 | ☐ TJ 타지키스탄 |
| ☐ BY 벨라루스 | ☐ IL 이스라엘 | ☐ MU 모리셔스 | ☐ TM 투르크메니스탄 |
| ☐ BZ 벨리제 | ☐ IS 아이슬란드 | ☐ MX 멕시코 | ☐ TN 튀니지 |
| ☐ CA 캐나다 | ☐ IT 이탈리아 | ☐ NA 나미비아 | ☐ TR 튀르키예 |
| ☐ CH 스위스 | ☐ JM 자메이카 | ☐ NE 니제르 | ☐ UA 우크라이나 |
| ☐ CI 코트디부아르 | ☐ JP 일본 | ☐ NO 노르웨이 | ☐ US 미국 |
| ☐ CN 중국 | ☐ KG 키르기스스탄 | ☐ OA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국 | ☐ VN 베트남 |
| ☐ DE 독일 | ☐ KH 캄보디아 | ☐ OM 오만 | ☐ WS 사모아 |
| ☐ DK 덴마크 | ☐ KP 북한 | ☐ PL 폴란드 | |
| ☐ EE 에스토니아 | ☐ KR 대한민국 | ☐ RO 루마니아 | |
| ☐ EG 이집트 | | ☐ RS 세르비아 | |
| ☐ EM 유럽연합 | | | |

8

물품 표시

각 디자인별로 디자인을 구성하거나 디자인을 사용할 물품을 표시합니다.

주의 : 로카르노 분류 32류에 속하는 물품은 캐나다, 중국(32-01류는 제외), 이스라엘, 멕시코, 대한민국의 국내법에 따라 보호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디자인이 속하는 로카르노 분류류 :

디자인 번호 (번호순)	도면 수	물품	소분류 (선택사항)

☐ 공간이 부족한 경우, 상자에 체크하고 연속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9

디자인 설명

주의 : 도면에 나타나는 디자인의 고유한 특징만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외에 도면에는 보이지만 보호를 구하지 않는 사항은 설명(및/또는 도면에서 점선, 파선 또는 컬러로)에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설명이 기술적(technical)이지 않은 한도에서 디자인의 작용이나 가능한 용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정 시점의 도면이 누락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면 100단어를 초과하는 각 단어 당 2스위스 프랑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제약당사자에 대한 주의 : 시리아를 지정한 경우 도면의 간단한 설명 또는 디자인의 특징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중국, 루마니아, 베트남을 지정한 경우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러시아를 지정한 경우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는 것을 권장합니다.

.....

.....

.....

.....

☐ 공간이 부족한 경우, 상자에 체크하고 연속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0**Legends (optional)**

Recommended, especially when designating China, Japan and/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Guidance on Reproductions.

Associate the number in the margin of the reproduction with the corresponding code:

1 Perspective; 2 Front; 3 Back; 4 Top; 5 Bottom; 6 Left; 7 Right; 8 Reference;

9 Unfolded; 10 Exploded; 11 Cross-sectional; 12 Enlarged; 00 Other (limited to 50 characters)

No (e.g. 1.1)	Code (e.g. 2)	Legend (indicate only when code 00 is selected)	No (e.g. 1.1)	Code (e.g. 2)	Legend (indicate only when code 00 is selected)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11**Identity of the Creator (if applicable)**

If Brazil, Finland, Ghana, Hungary, Iceland, Mauritius, Mexico, Romania and/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designated in item 7, you must indicate the identity of the creator. In respect of the designation of Brazil, Finland, Ghana, Hungary, Iceland, Mauritius and/or Mexico, the person indicated in item 11 declares to be the creator of the design. Where the person identified as the creator is a person other than the applicant, it is hereby stated that the present international application has been assigned by the creator to the applicant. I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designated in item 7, you must also submit an oath or declaration of inventorship using Annex I. If Bulgaria, Chin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Serbia, Tajikistan and/or Türkiye are designated in item 7,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you indicate the identity of the creator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Identity of the creator").

No. of the design (in numerical order)	Family name	Given name	Address (street, house number, postal code)	City	Region/state (optional)	Country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12**Claim (if applicable)**

applicable only when designat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or Viet Nam.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ornamental design foras shown and described.

Indicate the article in which the design is embodied in or applied to. If multiple designs for the same article are contained in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article should be written in singular form.

Viet Nam: By designating Viet Nam in item 7, the applicant is making the following claim: "Application for overall protection for design(s) as shown and described."

10 범례

특히 중국, 일본 또는 미국을 지정하는 경우 기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도면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도면의 여백에 표시되는 숫자는 해당코드를 참고하십시오.

1 사시도 ; 2 정면도 ; 3 배면도 ; 4 평면도 ; 5 저면도 ; 6 좌측면도 ; 7 우측면도 ;
9 전개도 ; 10 분해조립도 ; 11 단면도 ; 12 확대도 ; 00 기타 (50자로 제한됨)

번호 (예시 1,1)	코드 (예시 2)	범례(코드번호가 00으로 기재된 경우)	번호 (예시 1,1)	코드 (예시 2)	범례(코드번호가 00으로 기재된 경우)

☐ 공간이 부족한 경우, 상자에 체크하고 연속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1 창작자 신원

브라질, 핀란드, 가나, 헝가리, 아이슬란드, 모리셔스, 멕시코, 루마니아 또는 미국을 지정한 경우 창작자의 신원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브라질, 핀란드, 가나, 헝가리, 아이슬란드 모리셔스 또는 멕시코를 지어한 경우 11번 항목에 기재된 사람이 디자인의 창작자로 선언되며, 창작자와 출원인이 다른 경우 현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창작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미국을 지정한 경우 별첨1을 사용하여 발명자 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가리아, 중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세르비아, 타지키스탄 또는 튀르키예를 지정한 경우 창작자 신원을 기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헤이그 시스템 가이드 “창작자신원”참고).

디자인번호 (번호순)	창작자 성명 (성, 이름)	주소 (도로명, 건물번호, 우편번호)	도시	광역시 (선택사항)	국가

☐ 공간이 부족하면, 상자에 체크하고 연속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2 청구범위

미국이나 베트남을 지정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미국: 표현되고 설명된 것과 같이을 위한 장식적 디자인

디자인이 구현되거나 적용된 물품을 기재합니다. 같은 물품에 대한 복수디자인을 출원한 경우 물품은 단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항목 7에서 지정을 표시함으로써, 해당 출원인은 다음과 같은 청구범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표현되고 설명된 디자인 전체의 보호를 위한 출원.”

13 Priority Claim (if applicable)

- ☐ The applicant claims the priority of the earlier filing mentioned below.

Indicate the number of each design for which the priority is claimed. If no industrial design is indicated, when the priority claim will relate to all designs included in this application.

Brazil, China, Japan, Mexico,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Türkiy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quire submission of priority documents directly to their Offices.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International Application – Item 13.

Office or country of earlier filing	No. of earlier filing (if available)	Date of earlier filing (dd/mm/yyyy)	DAS Code (if available) ¹	No. of the design (in numerical order)	Annex V provide (only if China, Japan or the republic of Korea is designated)
					☐
					☐
					☐

By providing this information, the applicant claims the priority of the earlier filings indicated above.

-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14 International Exhibition (if applicable)

You may benefit from temporary protection for designs exhibited at an international exhibition under Article 11 of the Paris Convention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the Database on Temporary Protection for Designs Shown at International Exhibitions). By providing this information, the applicant claims that one or more designs were shown at an official, or offici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exhibition

Place where exhibition was held	Name of the exhibition	Date on which products were first exhibited (dd/mm/yyyy)	No. of the design (in numerical order)

Indicate the number of each design shown at the exhibition in numerical order. If no design is indicated, it is understood that all designs were shown

-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15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f applicable)

If designating China,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you may benefit from an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due to prior disclosure.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International Application – Item 15.

(a) Contracting Party(ies) concerned: ☐ China ☐ Japan ☐ Republic of Korea

(b) The applicant claims to benefit from exceptional treatment provided for in the design law of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ed, for the following designs concerned in the present application.

☐ all designs, or

☐ the following designs (e.g. design 1, design 2) :

.....

.....

You must submit supporting documentation via Annex II (see check box below) or directly to the Office concerned.

- ☐ check this box if Annex II is attached.

13 우선권 주장 (가능한 경우)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각각의 디자인의 번호에 표시합니다. 어떠한 디자인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권 주장은 현재 출원에 포함된 모든 디자인에 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브라질, 중국, 일본, 멕시코, 대한민국, 러시아, 튀르키예 및/또는 미국은 그들의 관청에 직접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헤이그 시스템 가이드' 국제출원서 - 항목 13을 참조하십시오.

선출원 국가 또는 관청	선출원번호 (가능한 경우)	선출원일자 (일/월/연도)	접근코드 (가능한 경우)	디자인 번호 (번호순)	별첨 V (중국, 일본, 대한민국을 지정한 경우에만 적용)
					☐
					☐
					☐

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원인을 위에 기재된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 공간이 부족하면 상자에 체크하고, 연속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국제전시회 우선권 (가능한 경우)

파리협약 11조에 따라 국제 전시회에 전시된 디자인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국제전시회에 출품된 디자인에 대한 일시적 보호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원인은 하나 또는 그이상의 디자인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전시회에 출품되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원인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디자인이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국제 전시회에서 공개되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전시회 장소	전시회 명칭	물품이 최초 전시된 날짜(일/월/연도)	디자인번호(번호순)

전시회에서 공개된 각각의 디자인 번호를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디자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 현재 출원에 포함된 모든 디자인이 해당 전시회에서 공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간이 부족하면, 상자에 체크하고 연속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5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가능한 경우)

중국, 일본, 대한민국을 지정한 경우 선행 공개에 대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는 헤이그 시스템 가이드- 국제출원서 15번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a) 해당 계약당사자 : ☐ 중국 ☐ 일본 ☐ 대한민국

(b) 출원인은 현재 출원에 포함된 다음 디자인에 대하여 관련된 계약당사자의 디자인법에서 제공하는 예외처리 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장합니다.

☐ 모든 디자인 또는

☐ 해당 디자인 (예시 디자인1, 디자인 2)

.....

.....

증명서류는 별첨II를 이용해 제출하거나 직접 관련 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첨II를 첨부한 경우, 이 상자에 체크하십시오.

16**Main or Principal Design (if applicable)**

If designating China,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WIPO strongly recommends to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International Application-Item 16.

China : main design

If designating china, you may include a maximum of 10 similar designs for the same product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f more than one design is included, you must indicate one of them as the main design.

The applicant indicates the following design as the main design (e.g.design 1) :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 principal and related design

If designating Japan and/or the Republic of Korea, designs may be registered as related to a principal design.

(a) Contracting Party(ies) concerned: ☐ Japan ☐ Republic of Korea

(b) The applicant requests that the following designs contained in the present application be registered as related designs

☐ **all** designs, or

☐ **the following** designs (e.g. design 1, design 2):

Indicate the number(s) of the industrial design(s) concerned.

.....
.....

(c) Information concerning the principal design to which the design(s) indicated under item (b) are related (Note : The principal design must be subject of an application or a registration with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

(i) The principal design is the subject of:

☐ The present international application

☐ a prior international application designating Japan and/or Republic of Korea

WIPO reference:

☐ a pri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designating Japan and/or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Registration No.:

☐ a prior national application filed with the Office of Japan and/or Republic of Korea

Application No./Applicant's reference:

☐ a prior national registration at the Office of Japan and/or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gistration No.:

(ii) If the above national or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registration contains several industrial designs, indicate the number of the industrial design to be considered as the principal design.

Design number of the principal design: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16 주요 또는 기본디자인 (선택적 사항)

중국, 일본 및/또는 대한민국을 지정하는 경우 WIPO는 헤이그 시스템 가이드, 국제출원-16항목을 참조할 것을 권장합니다.

중국 : 주요 디자인

중국을 지정하는 경우 국제 출원에 동일한 물품에 대해 최대 10개의 유사한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주요디자인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은 주요 디자인으로 다음 디자인을 지정합니다. (예시, 디자인 1):

일본 및 /또는 대한민국 : 기본 및 관련 디자인

일본 및/또는 대한민국을 지정한 경우, 기본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a) 해당 계약당사자 : ☐ 일본 ☐ 대한민국

(b) 출원인은 본 출원에 포함된 다음 디자인이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되기를 요청합니다.

☐ 모든 디자인, 또는

☐ 아래 기재된 디자인 (예시 디자인 1, 디자인 2)

.....
.....

(c) 항목 (b)에 표시된 디자인과 관련된 기본 디자인에 관한 정보

(참고: 기본 디자인은 해당 계약당사자 관청에 출원 또는 등록되어야 함):

(i) 기본디자인은 아래 표시된 건의 대상입니다 :

☐ 현재 국제출원

☐ 일본 및/또는 대한민국을 지정한 선 국제출원

국제사무국 참조번호:.....

☐ 일본 및/또는 대한민국을 지정한 선 국제등록

국제디자인 등록번호:

☐ 일본 및/또는 대한민국 관청에 제출된 선 국내출원

출원번호 / 출원인 참조번호 :

☐ 일본 및/또는 대한민국 관청에 제출된 선 국내등록

국내 등록번호 :

(ii) 위에 표시한 국내(국제) 출원(등록)이 여러 개의 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 기본디자인으로 간주되는 디자인의 번호를 표시하십시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 번호 :

☐ 공간이 부족하면, 상자에 체크하고 연속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7**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ptional)**

Publication will take place 12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unless the applicant selects one of the options below :

- ☐ immediate publication (upon recording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 ☐ publication at a chosen time : months from the filing date

Important: International registrations must be published within 30 months of the filing date or where priority is claimed, of the priority date.

- If you designate Belarus, Belize, Benelux, Brazil, Brunei Darussalam, Cambodia, Croatia, Denmark, Estonia, Finland, Hungary, Iceland, Israel, Jamaica, Mexico, Monaco, Norway, OAPI, Poland, the Russian Federation, Samoa, Slovenia, Suriname, Syrian Arab Republic, Ukrain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iet Nam (1999 Act), or any Contracting Party under the 1960 Act, the chosen time cannot exceed 12 months.
- If Singapore is designated, the chosen time cannot exceed 18 months from the filing date.

18**REDUCTION OF INDIVIDUAL DESIGNATION FEE (if applicable)**

Applicable only when designating Israel, Mexico and/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heck the applicable boxes.

Israel

- ☐ The applicant is a natural person, a small entity whose yearly revenue does not exceed the amount set in the Israeli Design Regulations, or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recognized by Israeli law, and no priority is claimed under item 13.

Important: For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a fee reduction, visit the Israel Patent Office website

Mexico

- ☐ The applicant declares under oath to fall into one of the categories (a creator who is a natural person, a micro or small entity, a public or 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or a public scientific or technological research institute) referred to in the first paragraph of the Fourth General Provision of the Agreement setting forth the fees for services provided by the Mexican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MPI); 50 percent reduction of the corresponding amount applies.

Important: Applicants who wish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entitled to micro or small enterprise status should consult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classification of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Spanish).

United States of America

- ☐ The applicant asserts **small entity**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41(h) of Title 35 of the United States Code and Section 3 of the Small Business Act, and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 ☐ The applicant certifies **micro entity**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23 of Title 35 of the United States Code and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USPTO.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micro entity certification** form PTO/SB/15A or PTO/SB/15B using Annex IV.

Important: For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micro or small entity status, please visit the USPTO website.

19**Signature**

The signatory is the :

- ☐ Holder ☐ Representative of the holder
(if signed by the representative, item 5 above must be completed.)

Full name.....

Date (dd/mm/yyyy):.....

Signature

Text string signatures (e.g. /John Doe/) are recommended. Signatures may be handwritten, printed, stamped, typed or in another electronic form (image, digital or computer generated).

17

국제등록의 공개

출원인이 아래 선택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국제등록일로부터 12개월 후에 공개될 것입니다.

☐ 즉시공개를 (국제등록을 기록할 때)

☐ 선택한 시기에 공개 : 출원일로부터..... 개월

주의 : 국제등록은 국제출원일로부터, 혹은 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 벨로루스, 벨리즈, 베네룩스, 브라질, 브루나이, 캄보디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자메이카, 멕시코, 모나코, 노르웨이, OAPI, 폴란드, 러시아 연방, 사모아, 슬로베니아, 수리남, 시리아,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베트남(1999년 협정) 또는 1960년 협정에 따른 어떤 계약당사국을 지정한 경우 선택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싱가포르를 지정한 경우 선택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8

개별지정수수료의 감면 (선택적 사항)

이스라엘, 멕시코 및/또는 미국을 지정한 경우에만 선택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상자에 체크하십시오.

이스라엘

- ☐ 출원인은 자연인, 연간 수익이 이스라엘 디자인 규정에 설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 또는 이스라엘 법에서 인정하는 고등 교육 기관이며, 13번 항목에 우선권이 주장되지 않았습니다.

주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격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특허청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멕시코

- ☐ 신청인은 멕시코 산업재산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한 규정의 제4 일반조항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범주(자연인, 소규모 또는 소규모 단체, 공립 또는 사립 고등 교육 기관, 공공 과학 또는 기술 연구 기관인 창작자) 중 하나에 속함을 선서합니다. 해당 금액의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주의: 극소 기업 또는 중소기업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는 출원인은 "극소, 중소기업 분류 설정 규정"(스페인어)을 참조해야 합니다.

주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격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특허청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미국

- ☐ 출원인은 미국 특허법 section 41(h) 및 소기업법 section 3, 미국특허청의 관련 규정의 의미 내에서 소기업 지위를 주장합니다.
- ☐ 출원인은 미국 특허법 Section 123 및 미국특허청의 관련 규정의 의미에 해당하는 극소기업(micro entity)임을 증명합니다. 출원인은 별첨 IV를 이용하여 극소기업 증명서 서식(미국특허청 서식 PTO/SB/15A 또는 PTO/SB/15B)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극소 또는 소기업 지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USPTO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19

서명

서명인은 :

☐ 출원인

☐ 출원인의 대리인

(대리인이 서명한다면 5번 항목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성명:.....

서명일자(일/월/연도):.....

서명.....

Text string 서명(예시 /홍길동/)을 권장합니다. 서명은 수기, 인쇄, 날인, 또는 기타 전자형식(이미지, 디지털 또는 컴퓨터 생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PAYMENT OF FEES

- ☐ The applicant has requested deferred publication (more than 12 months indicated under item 17) and wishes to pay the publication fees at a later date. (Note : The publication fee must be paid no later than three weeks prior to the expiry of deferment period.)

1. Total in Swiss francs (use the Fee Calculator or the Fee Calculation sheet) :

2.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at WIPO

WIPO is hereby instructed to debit the required amount of fees from the following Current Account at WIPO (if this item is completed, it is not necessary to complete items 3 or 4 below)

Holder of the account : Account number :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instruction (Full name or authorized use name) :

3. Payment received and acknowledged by WIPO

This must refer to a payment which you have previously sent to WIPO and wish to use for this application.

Identity of the party which made the payment(Full name of the bank account holder)
:.....

WIPO receipt number (Receipt number of your previous payment(s)) :.....

4. Bank transfer

Identity of the party making the payment (Full name of the bank account holder) :

- ☐ Payment made to WIPO bank account
WIPO,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IBAN No. CH51 0483 5048 7080 8100 0
Swift/BIC: CRESCHZZ80A

Payment identification
(as indicated in the payment,
e.g. Hague user reference)

dd/mm/yyyy.

- ☐ Payment made to WIPO postal account
(within Europe only)
WIPO, SWISS POST/Postfinance,
Engelhaldenstrasse 37, CH-30230 Bern
IBAN No. CH03 0900 0000 1200 5000 8
Swift/BIC: POFICHBE

Payment identification
(as indicated in the payment,
e.g. Hague user reference)

dd/mm/yyyy

5. Payment made to the Office (applicable to indirect filings only)

- ☐ Payment made to the USPTO

수수료 납부

- ☐ 출원인은 공개 연기(17항에 명시된 12개월 이상)를 요청했으며 나중에 공개 수수료를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참고: 공개 수수료는 연기기간 만료 3주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1. 스위스프랑으로 계산된 총 수수료(Fee calculator를 사용하거나 수수료 계산용지 사용)

:

2. 당좌계좌에서 인출 지시

국제사무국이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아래 당좌 계좌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항목을 기재하면 아래 항목 3 또는 4를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계좌의 소유자 : 계좌번호 :

지시를 하는 사람의 신원 :

3. 국제사무국이 수령하고 승인한 납부

이는 이전에 WIPO에 납부한 금액을 이 출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납부한 사람의 신원(계좌 소유자 전체이름) :

국제사무국 영수증번호(이전 납부시 받은 영수증 번호) :

4. 은행 송금

납부 당사자 신원 :

- | | | | |
|--------------------------|--|-----------------|---------------|
| ☐ | WIPO 은행계좌로 납부
WIPO,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IBAN No. CH51 0483 5048 7080 8100 0
Swift/BIC: CRESCHZZ80A | 납부자 신원
..... | 납부일자
..... |
| ☐ | WIPO 우편계좌로 납부(유럽내에서만 가능)
WIPO, SWISS POST/Postfinance,
Engelhaldenstrasse 37, CH-3030 Bern
IBAN No. CH03 0900 0000 1200 5000 8
Swift/BIC: POFICHBE | 납부자 신원
..... | 납부일자
..... |

5. 관청 납부 (간접출원의 경우만 가능)

- ☐ 미국 특허청에 납부

FEE CALCULATION SHEET(all amounts in Swiss Francs)

This sheet is provided for the convenience of users. It is recommended to use the Fee Calculator.
Applicants from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may benefit from a 90% reduction in fees.

(a) <u>Basic fee</u>		
for one design		= 397
for each additional design : 19 Swiss francs x	designs	=
(b) <u>Publication fees</u>		
17 Swiss francs x	reproductions	=
150 Swiss francs x	pages showing reproductions (counting from page 2)	=
(c) <u>Additional fee where the description exceeds 100 words</u>		
2 Swiss francs x	words exceeding 100	=
(d) <u>Standard Designation fee</u>		
Level 1:		
<i>(Albania, Azerbaijan, Belize, Benelux, Benin,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Côte d'Ivoire, Egypt, France, Gabon, Greece, Italy, Liechtenstein, Mali, Monaco, Mongolia, Montenegro, Niger, North Macedonia, Oman, Rwanda, Samoa, San Marino,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ingapore, Slovenia, Spain, Suriname, Türkiye, United Kingdom)</i>		
for the first design : 42 Swiss francs x	Contracting Parties	=
for each additional design : 2 Swiss francs x	designs x Contracting Parties.	=
Level 2:		
<i>(Armenia, Belarus, Brazil, Bulgaria, Cambodia, Croatia, Denmark, Estonia, Germany, Latvia, Mauritius, Morocco, Norway, Poland, Switzerland, Tunisia, Ukraine)</i>		
for the first design : 60 Swiss francs x	Contracting Parties	=
for each additional design : 20 Swiss francs x	designs x Contracting Parties	=
Level 3:		
<i>(Brunei Darussalam,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nland, Georgia, Ghana, Iceland, Jamaica, Lithuania, Namibia, Republic of Korea (designs belonging to Locarno class 1, 2, 3, 5, 9, 11 or 19), Romania, Serbia,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Viet Nam)</i>		
for the first design : 90 Swiss francs x	Contracting Parties	=
for each additional design : 50 Swiss francs x	designs x Contracting Parties	=
(ii) <u>Individual designation fee</u>		
Canada:	316 Swiss francs x	designs =
China	603 Swiss francs	=
European Union:	67 Swiss francs (first design) + 67 Swiss francs (per additional design) x	designs =
Hungary:	47 Swiss francs (first design) + 11 Swiss francs (per additional design) x	designs =
Israel:	117 Swiss francs (standard amount) x	designs. =
	70 Swiss francs (reduced amount (item 18)) x	designs. =
Japan:	507 Swiss francs x	designs =
Kyrgyzstan:	129 Swiss francs (first design) + 64 Swiss francs (per additional design) x	designs =
Mexico	<i>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for Mexico comprises two parts, the first part to be paid at the time of filing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the second part upon notification by IMPI)</i>	
	98 Swiss francs (first design)(standard amount) + 3 Swiss francs (per additional design) x	designs. =
	49 Swiss francs (first design)(reduced amount (item 18)) + 1 Swiss francs (per additional design) x	designs =
OAPI:	single design : 83 Swiss francs (standard amount) or 8 Swiss francs (applicants from least developed countries)	=
	multiple designs : 124 Swiss francs (standard amount) or 12 Swiss francs (applicants from least developed countries)	=
Republic of Korea:	(designs belonging to locarno class 4, 5, 7, 8, 10, 12 to 18, or 20 to 32)	
	184 Swiss francs x	designs =
Republic of Moldova:	73 Swiss francs (first design) + 7 Swiss francs (per additional design) x	designs =
Russian Federation:	138 Swiss francs (first design) + 29 Swiss francs (per additional design) x	designs =
Turkmenistan	589 Swiss francs (first design) + 36 Swiss francs (per additional design) x	designs =
United States of America :	<i>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mprises two parts, the first part to be paid at the time of filing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the second part upon invitation by the USPTO)</i>	
	941 Swiss francs (standard amount or 37 Swiss francs (a small entity(item 18)) or 188 Swiss francs (micro entity (item 18))	=
Grand total (Swiss francs)		

수수료 계산서

이 용지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됩니다. Fee Calculator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빈개도국의 신청자는 90%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기본 수수료		
하나의 디자인.....		397
추가되는 각 디자인 : 19 스위스 프랑 ×디자인.		=
(b) 공개수수료		
17 스위스 프랑 x 도면수		=
150 스위스 프랑 x 도면을 나타내는 페이지 수(2페이지부터 계산).		=
(c) 설명이 100단어를 넘는 경우 초과 수수료		
2 스위스 프랑 x 100글자 초과 글자 수		=
(d) 표준 지정수수료		
1단계: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리즈, 베네룩스, 베냉,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프랑스, 가봉, 그리스,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말리,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니제르, 북마케도니아, 오만, 르완다, 사모아, 산마리노, 사오 토메와 프린시페, 세네갈,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스페인, 수리남, 튀르키예, 영국		
첫 디자인 : 42 스위스 프랑 x	계약당사자	=
추가 디자인 : 2 스위스 프랑 x	추가되는 디자인 수 x 계약당사자.....	=
2단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브라질, 불가리아, 캄보디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라트비아, 모리셔스, 모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 튀니지, 우크라이나		
첫 디자인 : 60 스위스 프랑 x	계약당사자	=
추가 디자인 : 20 스위스 프랑 x	추가되는 디자인 수 x 계약당사자	=
3단계: 브루나이 다루살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핀란드, 조지아, 가나, 아이슬란드, 자메이카, 리투아니아, 나미비아, 대한민국(로카르노 1, 2, 3, 5, 9, 11 또는 19류에 속하는 디자인), 루마니아, 세르비아, 시리아 아랍 공화국, 타지키스탄, 베트남		
첫 디자인 : 90 스위스 프랑 x	계약당사자	=
추가 디자인 : 50 스위스 프랑 x	추가되는 디자인 수 x 계약당사자	=
(e) 개별 지정수수료		
캐나다:	316 스위스 프랑 x 디자인 수	=
중국	603 스위스 프랑	=
유럽연합:	67 스위스 프랑(첫 디자인) + 67 스위스 프랑(추가 디자인 당) x 디자인 수	=
헝가리:	47 스위스 프랑(첫 디자인) + 11 스위스 프랑(추가 디자인 당) x 디자인 수	=
	117 스위스 프랑 x 디자인 수	=
이스라엘:	70 스위스 프랑 (항목 18 적용 시 감면금액) x 디자인 수	=
일본:	507 스위스 프랑 x 디자인 수	=
키르기스스탄	129 스위스 프랑(첫 디자인) + 64 스위스 프랑(추가 디자인 당) x 디자인 수	=
멕시코	멕시코의 개별 지정 수수료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첫 번째 부분은 국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불해야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IMPI에 의해 통지될 때 지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98 스위스 프랑(첫 디자인) + 3스위스 프랑(추가 디자인 당) x 디자인 수 49 스위스 프랑(첫 디자인) (항목 18 적용 시 감면금액) + 3스위스 프랑(추가 디자인 당) x 디자인 수	= =
OAPI:	단일 디자인 : 83 스위스 프랑 또는 8스위스 프랑(최빈개도국 출신 출원인)	=
	복수 디자인 : 124 스위스 프랑 또는 12스위스 프랑(최빈개도국 출신 출원인)	=
대한민국	로카르노 분류 4,6,7,8,10,12류 부터 18류, 20류부터 32류에 속하는 디자인) 184스위스 프랑 x 디자인 수	=
몰도바:	73 스위스 프랑(첫 디자인) + 7 스위스 프랑(추가 디자인 당) x디자인 수	=
러시아:	138 스위스 프랑(첫 디자인) + 29 스위스 프랑(추가 디자인 당) x 디자인 수	=
투르크메니스탄	589 스위스 프랑(첫 디자인) + 36 스위스 프랑(추가 디자인 당) x디자인 수	=
미국:	미국의 개별 지정 비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첫 번째 부분은 국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불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USPTO가 요청할 때 지불하는 것입니다. 941 스위스 프랑 또는 항목 18 적용 시, small entity인 경우 377 스위스 프랑, micro entity인 경우 188 스위스 프랑)	=
총계 (스위스 프랑)		

Contracting Parties of the Hague Agreement

The table below provides indications of the Act or Acts binding each Contracting Party and the kind of designation fees payable. A numeral (1, 2 or 3) indicates the applicable level of standard designation fee and the letters "IF" indicate that individual designation fees are applicable (amounts of all these fees are indicated in the Fee Calculation Sheet). If left blank, then the Contracting Party is not bound by the corresponding Act.

Contracting Parties of the Hague Agreement		Acts of the Hague Agreement	
		1999 Act	1960 Act
(AL)	Albania	1	1
(AM)	Armenia	2	
(AZ)	Azerbaijan	1	
(BA)	Bosnia and Herzegovina	1	
(BG)	Bulgaria	2	2
(BJ)	Benin		1
(BN)	Brunei Darussalam	3	
(BR)	Brazil	2	
(BW)	Botswana	1	
(BX)	Benelux	1	1
(BY)	Belarus	2	
(BZ)	Belize	1	1
(CA)	Canada	IF	
(CH)	Switzerland	2	2
(CI)	Côte d'Ivoire		1
(CN)	China	IF	
(DE)	Germany	2	2
(DK)	Denmark	2	
(EE)	Estonia	2	
(EG)	Egypt	1	
(EM)	European Union	IF	
(ES)	Spain	1	
(FI)	Finland	3	
(FR)	France	1	1
(GA)	Gabon		1
(GB)	United Kingdom	1	
(GE)	Georgia	3	3
(GH)	Ghana	3	
(GR)	Greece		1
(HR)	Croatia	2	2
(HU)	Hungary	IF	IF
(IL)	Israel	IF	
(IS)	Iceland	3	
(IT)	Italy		1
(JM)	Jamaica	3	
(JP)	Japan	IF	
(KG)	Kyrgyzstan	IF	IF
(KH)	Cambodia	2	

헤이그 협정의 계약당사자

아래의 표는, 각 계약당사자에 대해, 해당 계약당사자가 기속되는 협정(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를 지정하는 경우 어떤 종류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표시합니다.

숫자(1, 2, 3)는 표준지정수수료의 적용단계를 표시하고, 문자 'IF'는 개별지정수수료(수수료 계산서에 표시된 모든 개별지정수수료 금액)가 적용될 수 있음을 표시합니다. 아무런 표시(숫자 또는 문자)가 없는 경우, 해당 계약당사자가 상기 협정에 기속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계약당사자 목록(국가코드/국가명)		가입 협정 및 수수료	
		1999 Act	1960 Act
(AL)	알바니아	1	1
(AM)	아르메니아	2	
(AZ)	아제르바이잔	1	
(BA)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1	
(BG)	불가리아	2	2
(BJ)	베냉		1
(BN)	브루나이	3	
(BR)	브라질	2	
(BW)	보츠와나	1	
(BX)	베네룩스	1	1
(BY)	벨라루스	2	
(BZ)	벨리즈	1	1
(CA)	캐나다	IF	
(CH)	스위스	2	2
(CI)	코트 디부아르		1
(CN)	중국	IF	
(DE)	독일	2	2
(DK)	덴마크	2	
(EE)	에스토니아	2	
(EG)	이집트	1	
(EM)	유럽연합	IF	
(ES)	스페인	1	
(FI)	핀란드	3	
(FR)	프랑스	1	1
(GA)	가봉		1
(GB)	영국	1	
(GE)	조지아	3	3
(GH)	가나	3	
(GR)	그리스		1
(HR)	크로아티아	2	2
(HU)	헝가리	IF	IF
(IL)	이스라엘	IF	
(IS)	아이스란드	3	
(IT)	이탈리아		1
(JM)	자메이카	3	
(JP)	일본	IF	
(KG)	키르기스스탄	IF	IF
(KH)	캄보디아	2	

Contracting Parties of the Hague Agreement		Acts of the Hague Agreement	
		<i>1999 Act</i>	<i>1960 Act</i>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3	3
(KR)	Republic of Korea	IF/3	
(LI)	Liechtenstein	1	1
(LT)	Lithuania	3	
(LV)	Latvia	2	
(MA)	Morocco		2
(MC)	Monaco	1	1
(MD)	Republic of Moldova	IF	IF
(ME)	Montenegro	1	1
(MK)	North Macedonia	1	1
(ML)	Mali		1
(MN)	Mongolia	1	1
(MU)	Mauritius	2	
(MX)	Mexico	IF	
(NA)	Namibia	1	
(NE)	Niger		1
(NO)	Norway	2	
(OA)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IF	
(OM)	Oman	1	
(PL)	Poland	2	
(RO)	Romania	3	3
(RS)	Serbia	3	3
(RU)	Russian Federation	IF	
(RW)	Rwanda	1	
(SG)	Singapore	1	
(SI)	Slovenia	1	1
(SM)	San Marino	1	
(SN)	Senegal		1
(SR)	Suriname		1
(ST)	Sao Tome and Principe	1	
(SY)	Syrian Arab Republic	3	
(TJ)	Tajikistan	3	
(TM)	Turkmenistan	1	
(TN)	Tunisia	2	
(TR)	Türkiye	1	
(UA)	Ukraine	2	2
(US)	United States of America	IF	
(VN)	Viet Nam	3	
(WS)	Samoa	1	

체약당사자 목록(국가코드/국가명)		가입 협정 및 수수료	
		1999 Act	1960 Act
(KP)	북한	3	3
(KR)	대한민국	IF/3	
(LI)	리히텐슈타인	1	1
(LT)	리투아니아	3	
(LV)	라트비아	2	
(MA)	모로코		2
(MC)	모나코	1	1
(MD)	몰도바	IF	IF
(ME)	몬테네그로	1	1
(MK)	북마케도니아	1	1
(ML)	말리		1
(MN)	몽골	1	1
(MU)	모리셔스	2	
(MX)	멕시코	IF	
(NA)	나미비아	1	
(NE)	니제르		1
(NO)	노르웨이	2	
(OA)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IF	
(OM)	오만	1	
(PL)	폴란드	2	
(RO)	루마니아	3	3
(RS)	세르비아	3	3
(RU)	러시아	IF	
(RW)	르와다	1	
(SG)	싱가포르	1	
(SI)	슬로베니아	1	1
(SM)	산마리노	1	
(SN)	세네갈		1
(SR)	수리남		1
(ST)	상투메 프린시페	1	
(SY)	시리아	3	
(TJ)	타지키스탄	3	
(TM)	투르크메니스탄	1	
(TN)	튀니지	2	
(TR)	튀르키예	1	
(UA)	우크라이나	2	2
(US)	미국	IF	
(VN)	베트남	3	
(WS)	사모아	1	

DM/1/I (E)**ANNEX I:**

Oath or Declaration of the Creator
under Rule 8(1)(a)(ii) of the Common Regulations

IMPORTANT

1. This annex is mandatory content for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designat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 This annex can be used to submit a Declaration of Inventorship (Declaration), following Rule 8(1)(a)(ii) OR, in the impossibility to provide such declaration, a Substitute Statement in Lieu of a Declaration of Inventorship (Substitute Statement). Please provide a Declaration OR a Substitute Statement for each creator indicated under item 11 of the DM/1 form.
3. The Declaration and Substitute Statement require the signer to declare inventorship with respect to a "claimed invention". For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a "claimed invention", refer to the Hague Guide for Users, International Application –Item12.
4. This annex may also be used by applicants who wish to submit an alternative document that they know is deemed a valid inventor's oath or declaration und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ational requirements.
5.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inventor's oath or declaration, visit the USPTO website: http://www.uspto.gov/site/default/files/forms/aia_oathdecl_guide.pdf.
6. This annex must be submitted with form DM/1 at the time of filing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together with the Declaration/Substitute Statement/alternative Document referred to above.
7. Please number your pages.

For use by the applicant

This Annex concerns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referenced by the applicant as below :

Reference:

For use by the International Bureau

Document type: DDO

Contracting Party: US

I**DECLARATION UNDER RULE 8(1)(a)(ii) OF THE COMMON REGULATIONS**

Number of pages (including this cover page):

DM/1/I (E)

별첨 I:
창작자 선언서
공통규칙 8(1)(a)(ii)

중 요

1. 이 서식은 미국을 지정하는 국제출원에 대해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2. 이 서식은 공통규칙 8(1)(a)(ii)에 따른 발명자 선언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는 선언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발명자 선언서를 대신한 대체기술서(a Substitute Statement in Lieu of a Declaration of Inventorship)를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DM/1 서식의 항목 11에 표시된 각각의 창작자들에 대하여 선언서 또는 대체기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선언 및 대체기술서는 서명자가 "청구된 발명품"과 관련하여 발명가임을 선언하도록 요구합니다. "청구된 발명"에 관한 추가 정보는 헤이그 사용자 가이드, 국제 출원 - 항목 12를 참조하십시오.
4. 이 서식은 또한 출원인이 미국의 국내요건에 따른 유효한 발명자 서약서 또는 선언서로 간주되는 대체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창작자 선언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USPTO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6. 이 표지는 위에서 언급된 선언서/대체기술서/대체서류를 첨부해, 국제출원 시 DM/1서식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7. 페이지 수를 기재하십시오.

출원인이 사용합니다

이 별첨서류는 출원인이 아래에 참조 표시한 국제출원서에 관한 것입니다.
 참조번호:

국제사무국이 사용합니다

문서형식 : DDO
 계약당사자 : 미국(US)

I

공통규칙 8(1)(a)(ii)에 의거한 선언

페이지 수 (표지 포함) :

DM/1/ I (E)

ANNEX I – DECLARATION OF INVENTORSHIP (Page 1 of 1)



Declaration of Inventorship
for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hereby declare that I believe I am the original inventor or an original joint inventor of a claimed invention in the application.

This declaration is directed to the attached international application (if filing declaration with application).

This declaration is directed to international application

(if furnishing declaration after filing the application, the declaration must identify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y the application reference number assign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or the office of indirect filing, or by applicant's reference number which was on the application as filed).

I hereby declare that the above-identified international application was made or authorized to be made by me.

I hereby acknowledge that any willful false statement made in this declaration is punishable under 18 U.S.C. 1001 by fine or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five (5) years, or both.

Name of Inventor:

Inventor's Signature: Date (optional):

(The signature must be that of the inventor, not that of the agent.)

Residence: (required only if the inventor lives at a location different from the mailing addres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
(city and either U.S. state, if applicable, or country)

DM/1/ I (E)

별첨 I - 발명자 선언서 (1 중 1 페이지)

I 미국 지정을 위한 발명자 선언

본인은, 본 선언을 통해 본인이 출원서에 청구된 발명의 최초 발명자 혹은 최초의 공동 발명자임을 주장합니다.

이 선언은 첨부된 국제출원(출원서와 함께 선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선언은 국제출원.....에 대한 것입니다.

(출원 이후에 선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선언서는 국제사무국 또는 간접출원관청이 부여한 출원참조번호 또는 출원서에 기재된 출원인참조번호로 해당 국제출원을 식별해야 합니다.)

본인은, 상기 국제출원서가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본인에 의해 작성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본인은, 본 선언서에 의도적인 허위진술이 기재되었을 경우 18 U.S.C. 1001에 의해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발명자 성명:

발명자 서명 :..... 서명일자 (선택사항) :
(이 서명은 대리인이 아닌 발명자 서명이어야 합니다.)

거주지: (발명자가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우편주소와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기재)

.....
(도시명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미국의 주, 또는 국가명)

DM/1/ I (E)**ANNEX I – SUBSTITUTE STATEMENT (Page 1 of 2)**
**Substitute Statement in Lieu of a Declaration of Inventorship
for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is statement is directed to:

- ☐ The attached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 ☐ international application.....
(if furnishing statement after filing the application, the statement must identify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y the application reference number assign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 or the office of indirect filing, or by applicant's reference number which was on the application as filed).

Legal name of inventor to whom this substitute statement applies:
.....

Residence: (not required if the inventor lives at the same location as the mailing addres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the inventor is deceased or legally incapacitated)

City:.....U.S. State:Country:.....
(if applicable)

I believe the above-named inventor or joint inventor to be the original inventor or an original joint inventor of a claimed invention in the application.

The above-identified application was made or authorized to be made by me.

I hereby acknowledge that any willful false statement made in this statement is punishable under 18 U.S.C. 1001 by fine or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five (5) years, or both.

Relationship to the inventor to whom this substitute statement applies:

- ☐ Legal Representative (for deceased or legally incapacitated inventor only)
- ☐ Assignee
- ☐ Person to whom the inventor is under an obligation to assign
- ☐ Person who otherwise shows a sufficient proprietary interest in the matter (a petition under 37 CFR 1.46 is required and should be submitted directly to the USPTO after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r
- ☐ Joint inventor

DM/1/ I (E)

별첨 1 - 대체기술서 (2 중 1 페이지)

I

미국 지정을 위한 발명자 선언을 대신하는 대체기술서

이 기술서는 다음 출원에 관한 것입니다 :

☐ 첨부된 국제출원서

또는

☐ 국제출원.....

(출원 이후에 선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대체기술서는 국제사무국 또는 간접출원관청이 부여한 출원참조번호 또는 출원서에 기재된 출원인참조번호로 해당 국제출원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 대체기술서가 적용되는 발명자 성명 :

거주지: (발명자가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우편주소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혹은 발명자가 사망자 또는 법적 금치산자(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인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시명 : 미국의 주 : 국가 :
(해당하는 경우)

본인은 상기 기명된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가 해당 출원서에 청구된 발명의 최초 발명자 또는 최초의 공동발명자라고 믿습니다.

상기 출원은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작성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본인은 본 기술서에 의도적인 허위진술이 기재되었을 경우 18 U.S.C. 1001에 의해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체기술서가 적용되는 발명자와의 관계 :

☐ 법적 대리인 (사망자 또는 법적 금치산자인 경우에만 해당)☐ 양수인☐ 발명자가 양도할 의무가 있는 자☐ 기타 이 건에 대해 충분한 재산적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자(37 CFR 1.46에 따른 신청이 요구되며, 국제등록 공개 후 USPTO에 직접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는☐ 공동 발명자

DM/1/ I (E)**ANNEX I – SUBSTITUTE STATEMENT (Page 2 of 2)****Circumstances permitting execution of this substitute statement**

- ☐ Inventor is deceased
- ☐ Inventor is under legal incapacity
- ☐ Inventor cannot be found or reached after diligent effort, or
- ☐ Inventor has refused to execute the oath or declaration under 37 CFR 1.63.

Person executing this Substitute Statement

Name: Date (optional):

Signature:

The party who is signing the substitute statement must be an applicant. If the applicant is a juristic entity (legal entity), list the applicant name and the title of the signer below.

Applicant name:

Title of person executing this Substitute Statement:

The signer, whose title is supplied above, is authorized to act on behalf of the applicant.

Residence of the signer : *(not required if the signer's mailing address i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or indicated below and the signer lives at the same location as the mailing address)*

City: U.S. State:..... Country:
(if applicable)

Mailing address of the signer: *(not required if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City: U.S. State:..... Zip :..... Country:.....
(if applicable)

DM/1/ I (E)

별첨 1 - 대체기술서 (2 중 2 페이지)

이 대체기술서의 작성을 허용하는 상황

- ☐ 발명자의 사망
- ☐ 발명자의 법적 금치산자(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 판정
- ☐ 발명자의 행방불명 또는 부당한 노력에도 연락 불가, 또는
- ☐ 발명자가 37 CFR 1.63에 따른 서약 또는 선언을 거절하는 경우

이 대체기술서를 작성한 자

성명: 일자 (선택사항):

서명:

대체기술서에 서명하는 자는 출원인이여야 합니다.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출원인 성명과 서명인의 직책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출원인 성명 :

대체기술서를 작성한 자의 직책 :

서명인은, 위에서 직책이 기재된 자로, 출원인을 대신한 대행자의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서명인의 거주지: (서명인의 우편주소가 국제출원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아래에 표시되어 있고 서명인이 그 우편주소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시명 : 미국의 주명 : 국가명 :
(해당하는 경우)

서명인의 우편주소 :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시명 : 미국의 주명 : 국가명 :
(해당하는 경우)

DM/1/II (E)**ANNEX II:**

**Supporting Document(s)
Concerning a Declaration to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under Section 408(c)(ii) of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IMPORTANT

1. This Annex can be used to submit documents in support of a declaration concerning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to the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CNIPA), the Japan Patent Office (JPO) and/o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refer to form DM/1, item 15). The submitted document(s) will be transmitted by WIPO to the Office(s) concerned.
2. This Annex must be submitted with form DM/1 at the time of filing.
3. Submit only one Annex II per declaration to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regardless of how many Contracting Parties you have designated.
4. Please note that a declaration concerning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might affect the applicant's rights in other jurisdiction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applicant to ensure that their rights are preserved.
5.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procedure when designating Japan, please visit the JPO website.
6. Please number your pages.

For use by the applicant

This Annex concerns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referenced by the applicant as below :

Reference:

For use by the International Bureau

Document type: DDD

DM/1/II (E)**별첨 II:****신규성 상실 예외 선언에 관한 증명서류****시행세칙 408(c)(ii)****중 요**

1. 이 서류는 신규성 상실 예외에 관한 선언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중국 특허청(CNIPA), 일본 특허청(JPO) 및/또는 대한민국 특허청(KIPO)에 제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DM/1 서식, 15항목 참조) 제출된 문서는 WIPO를 통해 관련 관청으로 전송됩니다.
2. 이 서류는 출원 시 DM/1 서식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3. 얼마나 많은 계약당사국을 지정했는지에 관계없이 신규성 상실예외 주장시 하나의 별첨서류 I만 제출하십시오.
4. 신규성 상실 예외에 관한 주장은 다른 관할권에서 출원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5. 일본을 지정한 경우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페이지에 번호를 매기십시오.

출원인이 사용합니다

이 별첨서류는 아래의 출원인에 의해서 참조되는
국제출원서에 관한 것입니다.

참조번호:

국제사무국이 사용합니다

서류유형 : DDD

DM/1/II (E)**II**

Supporting Document(s) Concerning a Declaration to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The supporting document(s) concern(s) the following design(s), for which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s claimed in item 15 of form DM/1 :

☐ All designs,

OR

☐ the following designs :

(Indicate the design numbers),

Number of pages(including the cover page) : :

DM/1/II (E)**II**

신규성 상실 예외 선언에 관한 증명서류

이 증명서류는 DM/1서식 15번 항목에서 주장한 신규성상실 예외주장을 위한 것으로 아래 디자인에 관련됩니다.

☐ 모든 디자인

또는

☐ 아래에 기재된 디자인

.....
디자인 번호를 표시하십시오,

페이지 수 (표지포함) :

]

DM/1/III (E)

ANNEX III:

Information on Eligibility for Protection

under Rule 7(5)(g) and Section 408(d) of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IMPORTANT

1. This annex is optional and can be used to submit a statement under Rule 7(5)(g) that identifies information known by the applicant to be material to the eligibility for protection of the industrial design concerned.
2. This annex is only relevant for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an be used to submit a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and relevant accompanying documentation. Please note that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may also be submitted directly to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3.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forms (SB08a/SB08b/SB08a-EFS-web) are available on the USPTO web site: http://www.uspto.gov/forms/aia_forms.jsp
4.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please visit the USPTO web site: <http://www.uspto.gov/web/offices/pac/mpep/s609.html>.
5. This annex must be submitted with form DM/1 at the time of filing. It cannot be submitted separately.
6. Please number your pages.

For use by the applicant

This Annex concerns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referenced by the applicant as below :

Reference:

For use by the International Bureau

Document type: DDP

Contracting Party: US

III

Information on Eligibility for Protection

Number of pages (including this cover page):

DM/1/III (E)**별첨 III:****보호적격에 관한 정보****공통규칙 Rule 7(5)(g)과 시행세칙 Section 408(d)****중 요**

1. 이 서류는 선택사항이며, 출원인 본인을 통해 알려진 정보가 관련된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적격증명 자료임을 확인하는 공통규칙 Rule 7(5)(g)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이 서류는 미국을 지정한 건에 대해서만 관련되며, 정보공개진술서(a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위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진술서는 미국 특허/상표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3. 정보공개진술서 서식은 다음의 USPTO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http://www.uspto.gov/forms/aia_forms.jsp
4. 정보공개진술서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 다음의 USPTO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http://www.uspto.gov/web/offices/pac/mpep/s609.html>.
5. 이 서류는 국제출원서 (DM/1)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만 단독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페이지 수를 기재하십시오.

출원인이 사용합니다

이 별첨서류는 아래의 출원인에 의해서 참조되는 국제출원서에 관한 것입니다.

참조번호:

국제사무국이 사용합니다

서류유형: DDP

계약당사자: US

III**보호적격에 관한 정보**

페이지 수(표지 포함) :

DM/1/IV (E)

ANNEX IV:**Reduction of United States Individual Designation Fee****under Section 408(b) of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IMPORTANT**

1. This Annex is only relevant for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s mandatory content if the applicant claims **micro entity status** in form DM/1. It cannot be submitted separately.
2. This document is to submit a **certification** following Section 408(b) of the Administrative Instructions.
3. The certification form (PTO/SB/15A or PTO/SB/15B), along with the instructions for its completion and signature, is available on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web site : http://www.uspto.gov/forms/aia_forms.jsp.
4. Please number your pages.

For use by the applicant

This Annex concerns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referenced by the applicant as below :

Reference:

For use by the International Bureau

Document type: DDE

Contracting Party: US

III**REDUCTION OF INDIVIDUAL DESIGNATION FEES**

Number of pages(including this cover page):

DM/1/IV (E)

별첨 IV:

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

시행세칙 Section 408(b)

중 요

1. 이 서식은 **미국**을 지정한 건에 대해서만 관련되고, 출원인이 국제출원서(DM/1)에서 **극소기업 (Micro entity status)**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이 서류만 단독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이 서류는 시행세칙 Section 408(b)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증명서 서식(PTO/SB/15AorPTO/SB/15B)은, 작성 및 서명에 대한 지침과 함께, 미국특허상표청 웹사이트(http://www.uspto.gov/forms/aia_forms.jsp)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페이지 수를 기재하십시오.

출원인이 사용합니다

이 별첨서류는 아래의 출원인에 의해서 참조되는 국제출원서에 관한 것입니다.

참조번호:

국제사무국이 사용합니다

서류유형: DDE

체약당사자: US

III

개별지정수수료의 감면

페이지 수 (표지 포함) :

DM/1/V (E)

ANNEX V:
Supporting Document(s) Concerning Priority Claim
under Article 4 of the Paris Convention

IMPORTANT

1. This Annex can be used to submit a document in support of a priority claim (priority document) to the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CNIPA), the Japan Patent Office (JPO) and/o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refer to DM/1 form, item 13). The submitted document(s) will be transmitted by WIPO to the Office(s) concerned.
2. This Annex must be submitted with form DM/1 form at the time of filing.
3. Submit only one Annex V per priority claim, regardless of how many Contracting Parties you have designated.
4. Where the priority document is not submitted using this Annex, it should be submitted directly to the CNIPA, JPO and/or KIPO. In such a case, the priority document must be submitted to the Office concerned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 the International Designs Bulletin. If the holder resides outside the country, it must be submitted through a local representative. The right of priority will be lost if the priority document is not submitted within this period.
5. For detailed information on the procedure when designating Japan, please visit the JPO website.
6. Please number your pages.

For use by the applicant

This Annex concerns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with the following reference number :
Reference:

For use by the International Bureau

Document type: DDY

DM/1/V (E)

별첨 V:
파리조약 Article 4에 따른
우선권 증명서류

중 요

1. 이 부속서는 중국 특허청(CNIPA), 일본 특허청(JPO) 및/또는 대한민국 특허청(KIPO)에 우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우선권 문서)를 제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DM/1 양식, 항목 13 참조) 제출된 문서는 WIPO를 통해 관련 관청으로 전송됩니다.
2. 이 서식은 반드시 출원 시에 DM/1 양식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3. 귀하가 지정한 계약당사자 수에 관계없이 우선권 주장당 하나의 부속서류만 제출하십시오.
4. 우선권 문서가 이 부속서를 사용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CNIPA, JPO 및/또는 KIPO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우선권 문서는 국제 디자인 회보에 국제 등록이 게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관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유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현지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우선권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권은 상실됩니다.
5. 일본 지정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페이지에 번호를 매기십시오.

출원인이 사용합니다

이 별첨서류는 아래의 출원인에 의해서 참조되는 국제출원서에 관한 것입니다.

참조번호:

국제사무국이 사용합니다

서류유형: DDY

DM/1/V (E)**Priority DOCUMENT**

The document concerns the following design(s), for which priority is claimed in item 13 of form DM/1 :

☐ All designs,

OR

☐ the following designs :

(Indicate the design numbers),

Number of pages(including the cover page) : :

DM/1/V (E)

V

우선권주장에 관한 증명서류

이 서류는 출원서(DM/1 form)의 항목 13에서 주장하는 우선권을 위한 것으로 아래 디자인에 관련됩니다.

☐ 모든 디자인

또는

☐ 아래에 기재된 디자인

.....
디자인 번호를 표시하십시오,

페이지 수 (표지포함) :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신청 (DM/2)

DM/2(E)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IMPORTANT

1. You may use this form to request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for multiple international registrations in the name of the same holder(s), provided that all registrations are the subject of a total change in ownership. If you wish to request a partial change in ownership, you can only indicate one international registration per form.
2. If this request concerns Brazil, China, Denmark, Mexico, OAPI,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must send all required documents as stipulated in their individual declarations directly to the relevant Office(s) in order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to take effect in these Contracting Parties.
3. The recording of a partial change in ownership is not possible under certain national/regional laws:
 - under certain jurisdictions, a set of designs is viewed as a single design so legal protection is granted to the set as a whole;
 - where the law provides for a “similar design” or a “related design” system, you must transfer all designs together.
4. A change in ownership may be refused by individual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if the request does not comply with their specific domestic legal requirements(Rule 21bis(1) of the Common Regulations).
5. For more information on the domestic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Contracting Parties, refer to Hague System Member Profiles.
6. All fields are mandatory, unless indicated otherwise.
7. Complete this form electronically; WIPO does not accept handwritten forms.
8. Avoid printing and scanning this form. Upload the completed and signed form directly to WIPO through Contact Hague.
9. For more information on the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DM/2(E)

명의변경 등재 신청

중 요

1. 소유권 전체 변경의 대상인 경우, 이 양식을 사용하여 동일한 보유자 이름으로 된 여러 국제 등록에 대한 소유권 변경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부분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 서식 당 하나의 국제 등록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이 요청이 브라질, 중국, 덴마크, 멕시코, OAPI,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또는 미국에 관한 경우, 소유권 변경 기록이 해당 계약당사자에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선언에 규정된 모든 필수 서류를 관련 관청으로 직접 보내야 합니다. .
3. 특정 국가/지역 법률에 따라 소유권의 부분 변경 기록이 불가능합니다.
 - 특정 관할권에서는 디자인 세트가 단일 디자인으로 간주되어 세트 전체에 법적 보호가 부여되는 경우;
 - "유사 디자인" 또는 "관련 디자인" 체계를 제공하는 경우 모든 디자인을 함께 명의 이전해야 합니다.
4. 소유권 변경 요청이 특정 국내법적 요건(공통 규정 제21조의(1))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별 지정 계약당사자는 소유권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당사자의 국내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헤이그 시스템 회원 프로필을 참조하십시오.
6.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필드는 필수입니다.
7. 이 양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십시오. WIPO는 수기 양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이 양식을 인쇄하거나 스캔하지 마십시오. 작성 및 서명된 양식을 Contact Hague를 통해 WIPO에 직접 업로드하십시오.
9. 소유권 변경 기록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헤이그 시스템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DM/2(E)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u>For use by the holder</u> Reference(optional).....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if any)...	<u>For use by WIPO</u>
--	--

1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s)

.....

You may indicate multiple international registrations in the name of the same holder so long as they are all subject of a total change in ownership. For a partial change in ownership, indicate only one international registration. Provide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or each international registration concerned (e.g. DM/123456). Separate multiple registration numbers with a semicolon.

2 Current Holder(s)

.....

indicate the full name of each current holder,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3 NEW OWNER(s)

The new owner is a :

☐ Natural person – Family name: Given name:

☐ Legal entity – Official designation:

Address:

Postal code: City: Region/state(optional)..... Country:

E-mail address: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to this email address, unless an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is indicated in item 4(only for multiple applicants) or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Please ensure that the email address is accurate and kept up to date.

Telephone(optional):

Include the country and area code, e.g. +41 22 338 757

If there are multiple new owners or if there are remaining holders,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to provide the above information for each new owner and each remaining holder, as to be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4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for Multiple New Owners (if applicable)

Complete this item if there are multiple new owners and no representative is appointed.

Note: If there is only one new owner or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the information provided under this item will be disregarded.

Email address : :

DM/2(E)

명의변경의 등재 신청

관리자가 작성합니다 참조번호: 연속용지:	국제사무국이 사용합니다
--	--------------

1

국제등록번호

.....

.....

모두 소유권이 모든 대상에 대해 변경되는 한, 동일한 보유자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국제 등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국제 등록을 하나만 표시하십시오. 해당 국제등록마다 국제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예: DM/123456). 여러 개의 등록 번호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십시오.

☐ 연속용지를 사용한 경우 상자에 체크하십시오

2

현재 관리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대로, 각각의 현재 관리자의 전체 이름을 기재하십시오)

.....

3

새로운 관리자

새로운 관리자는

☐ 자연인 - 성: 이름:

☐ 법인 - 공식명칭:

주소:

우편번호: 도시명: 광역명(선택사항)..... 국가명:

이메일주소:

국제사무국은 4번 항목에 연락주소가 기재되어 있거나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이 이메일 주소로 모든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고 최신주소로 유지하십시오.

전화번호(선택사항):

☐ 새로운 소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유지되는 관리자가 있는 경우 이 사자에 체크하고 각각의 소유자와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대로 유지되는 관리자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속용지를 사용하십시오.

4

새로운 소유자의 연락주소

새 소유자가 여러 명이고 대리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이 항목을 작성하세요.

참고: 새로운 소유자가 한 명뿐이거나 대리인이 임명되는 경우 이 항목에 제공된 정보는 무시됩니다.

이메일주소:

5

Entitlement of the New Owner(s)

The new owner must be a national of, or have a domicile, habitual residence or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commercial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Party. You must indicate the corresponding Contracting Party(ies) in each field. If a field is not applicable, type "None". For Contracting Parties that are also members of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GO) (European Union or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ndicate both entities (e.g. "France, European Union") in all relevant fields. For member states of IGOs that are not individual Contracting Parties, indicate the name of the IGO only.

(a) Nationality:

(b) Domicile:

(c)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d) Habitual residence:

6

Scope of the Change in Ownership

Select 'Total change' to request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for all designs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s) indicated in item 1, and for all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To request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for only some/all designs for only some/all Contracting Parties, check 'Partial change' and complete items (a) and (b). (Safeguard: In the case of partial change, if no design or no Contracting Party is indicated, the change will be recorded for all designs and/or all Contracting Parties respectively.)

☐ TOTAL CHANGE☐ PARTIAL CHANGE

(a) for the following designs :

.....

(b) for the following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 :

.....

7

Preferred Language for Correspondence of the New Owner (optional)

☐ English☐ French☐ Spanish**8**

Signature

The signatory is the :

☐ Holder (transferor)☐ Representative of the holder (transferor)☐ New owner (transferee)☐ Representative of the new owner (transferee)

If the signatory is the holder or the new owner, all holders or all new owners (including remaining holders) must sign. If signed by the new owner or their representative, proof of change in ownership is required. If sign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new owner, then form DM/7 or a power of attorney must also be attached to this form.

Full name.....

Date (dd/mm/yyyy):.....

Signature

Text string signatures (e.g. /John Doe/) are recommended. Signatures may be handwritten, printed, stamped, typed or in another electronic form (image, digital or computer generated).

9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of the New Owner (optional)

Check one box :

☐ form DM/7 is attached to this form☐ a power of attorney is attached to this form

5

새로운 소유자의 자격

(새로운 소유자는 계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주소, 거소 또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상업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각 항목에 해당 계약 당사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 필드가 없으면 "없음"을 입력합니다. 정부간 기구(IGO)(유럽 연합 또는 아프리카 지적 재산권 기구)의 회원이기도 한 계약 당사자의 경우 모든 관련 항목에서 두 계약당사자(예: "프랑스, 유럽 연합")를 모두 표시하십시오. 개별 계약당사자가 아닌 IGO 회원국의 경우 IGO 이름만 표시합니다.)

- (a) 국적:
- (b) 주소:
- (c) 실제의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 영업소:
- (d) 거소:

6

명의변경의 범위

1번 항목에 표시된 국제등록에 포함된 모든 디자인과 지정된 모든 계약당사자에 대한 소유권 변경 기록을 요청하려면 '전체 변경'을 선택하십시오. 일부/전체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만 일부/전체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 변경 기록을 요청하려면 '부분 변경'을 선택하고 (a) 및 (b) 항목을 작성하십시오. (보호장치: 부분 변경의 경우 디자인이 없거나 계약 당사자가 표시되지 않으면 변경 사항은 모든 디자인 및/또는 모든 계약 당사자에 대해 각각 기록됩니다.)

☐ 전부에 대한 명의변경

☐ 부분에 대한 명의변경

(a) 대상이 되는 디자인

.....

(b) 대상이 되는 계약 당사자

.....

7

새로운 권리자의 교신을 위한 선호 언어

- ☐ 영어 ☐ 프랑스어 ☐ 스페인어

8

서명

서명인은 :

- ☐ 권리자 ☐ 권리자의 대리인
- ☐ 새로운 소유자 ☐ 새로운 권리자의 대리인

서명인이 권리자이거나 새 소유자인 경우 모든 권리자 또는 모든 새 소유자(나머지 보유자 포함)가 서명해야 합니다. 새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경우 소유권 변경 증명이 필요합니다. 새 소유자의 대리인이 서명한 경우 DM/7 양식 또는 위임장도 이 양식에 첨부해야 합니다.

성명:.....

서명일자(일/월/연도):.....

서명.....

Text string 서명(예시 /홍길동/)을 권장합니다. 서명은 수기, 인쇄, 날인, 또는 기타 전자형식(이미지, 디지털 또는 컴퓨터 생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9

새로운 소유자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상자에 체크 :

- ☐ 서식 DM/7을 이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 위임장을 이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FEE CALCULATION SHEET

1. Amount of fees (in Swiss francs)

144 swiss francs Xper international registration mentioned in item 1

Total =

.....

2.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at WIPO

WIPO is hereby instructed to debit the required amount of fees from the following Current Account at WIPO (if this item is completed, it is not necessary to complete items 3 or 4 below)

Holder of the account : Account number :

.....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instruction (Full name or authorized use name) :

3. Payment received and acknowledged by WIPO

This must refer to a payment which you have previously sent to WIPO and wish to use for this application.

Identity of the party which made the payment(Full name of the bank account holder)

:.....

WIPO receipt number (Receipt number of your previous payment(s) :.....

4. Bank transfer

Identity of the party making the payment (Full name of the bank account holder) :

☐ Payment made to WIPO bank account
WIPO,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IBAN No. CH51 0483 5048 7080 8100 0
Swift/BIC: CRESCHZZ80A

Payment identification
(as indicated in the payment,
e.g. Hague user reference)

dd/mm/yyyy.

.....

.....

☐ Payment made to WIPO postal account
(within Europe only)
WIPO, SWISS POST/Postfinance,
Engelhaldenstrasse 37, CH-30230 Bern
IBAN No. CH03 0900 0000 1200 5000 8
Swift/BIC: POFICHBE

Payment identification
(as indicated in the payment,
e.g. Hague user reference)

dd/mm/yyyy.

.....

.....

수수료 계산서

1. 총 수수료(스위스프랑으로 표시)

144 스위스프랑 X 항목 1에 기재된 국제등록 수

총 합계 :

2. 당좌계좌에서 인출 지시

국제사무국이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아래 당좌 계좌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항목을 기재하면 아래 항목 3 또는 4를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계좌의 소유자 : 계좌번호 :

지시를 하는 사람의 신원 :

3. 국제사무국이 수령하고 승인한 납부

이는 이전에 WIPO에 납부한 금액을 이 출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납부한 사람의 신원(계좌 소유자 전체이름) :

국제사무국 영수증번호(이전 납부시 받은 영수증 번호) :

4. 은행 송금

납부 당사자 신원 :

- | | | | |
|--------------------------|--|--------|-------|
| ☐ | WIPO 은행계좌로 납부 | 납부자 신원 | 납부일자 |
| | WIPO,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 | |
| | IBAN No. CH51 0483 5048 7080 8100 0 | | |
| | Swift/BIC: CRESCHZZ80A | | |
| | | | |
| ☐ | WIPO 우편계좌로 납부(유럽내에서만 가능) | 납부자 신원 | 납부일자 |
| | WIPO, SWISS POST/Postfinance, | | |
| | Engelhaldenstrasse 37, CH-3030 Bern | | |
| | IBAN No. CH03 0900 0000 1200 5000 8 | | |
| | Swift/BIC: POFICHBE | | |

국제등록의 감축 신청 (DM/3)

DM/3(E)**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LIMITATION****IMPORTANT**

1. You can request the recording of a limitation for one international registration per form.
2. The request must relate to only some of the designs covered by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f the request concerns all designs covered by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use form DM/5 (renunciation).
3. The limitation to the designs can only be recorded for the sam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4. All fields are mandatory unless indicated otherwise.
5. Complete this form electronically; WIPO cannot accept handwritten forms.
6. Avoid printing and scanning this form. Upload the completed and signed form directly to WIPO through Contact Hague.
7. For more information on the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limitation,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DM/3(E)**감축 등재 신청****중요**

1. 한 서식당 하나의 국제등록에 대한 제한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감축은 국제등록에 포함된 디자인 중 일부에만 관련되어야 합니다. 요청이 국제 등록에 포함된 모든 디자인에 관한 경우 양식 DM/5(포기)를 사용하십시오.
3. 디자인의 감축은 동일한 지정된 계약당사자에 대해서만 기록될 수 있습니다.
4.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필드는 필수입니다.
5. 이 양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십시오. WIPO는 수기 양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이 양식을 인쇄하거나 스캔하지 마십시오. 작성 및 서명된 양식을 Contact Hague를 통해 WIPO에 직접 업로드하십시오.
7. 감축사항 기록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헤이그 시스템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DM/3(E)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LIMITATION

<u>For use by the holder</u> Reference(optional).....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if any)...	<u>For use by WIPO</u>
--	--

1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You can renew only one international registration per form(e.g. DM/123456).

2

Name of the Holder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3

Industrial Designs

Specify the number of each industrial design for which you seek limitation (no more protection):

.....

.....

.....

.....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4

Contracting Parties

select the scope from one of the following two options :

☐ The limitation of the designs indicated in item 3 is to be recorded for **all**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 The limitation of the designs indicated in item 3 is to be recorded only for the following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 AL Albania	☐ EG Egypt	☐ KR Republic of Korea	☐ RO Romania
☐ AM Armenia	☐ EM European Union	☐ LI Liechtenstein	☐ RS Serbia
☐ AZ Azerbaijan	☐ ES Spain	☐ LT Lithuania	☐ RU Russian Federation
☐ BA Bosnia and Herzegovina	☐ FI Finland	☐ LV Latvia	☐ RW Rwanda
☐ BG Bulgaria	☐ FR France	☐ MA Morocco	☐ SG Singapore
☐ BJ Benin	☐ GA Gabon	☐ MC Monaco	☐ SI Slovenia
☐ BN Brunei Darussalam	☐ GB United Kingdom	☐ MD Republic of Moldova	☐ SM San Marino
☐ BR Brazil	☐ GE Georgia	☐ ME Montenegro	☐ SN Senegal
☐ BW Botswana	☐ GH Ghana	☐ MK North Macedonia	☐ SR Suriname
☐ BX Benelux	☐ GR Greece	☐ ML Mali	☐ ST Sao Tome and Principe
☐ BY Belarus	☐ HR Croatia	☐ MN Mongolia	☐ SY Syrian Arab Republic
☐ BZ Belize	☐ HU Hungary	☐ MU Mauritius	☐ TJ Tajikistan
☐ CA Canada	☐ IL Israel	☐ MX Mexico	☐ TM Turkmenistan
☐ CH Switzerland	☐ IS Iceland	☐ NA Namibia	☐ TN Tunisia
☐ CI Côte d'Ivoire	☐ IT Italy	☐ NE Niger	☐ TR Türkiye
☐ CN China	☐ JM Jamaica	☐ NO Norway	☐ UA Ukraine
☐ DE Germany	☐ JP Japan	☐ OA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US United States of America
☐ DK Denmark	☐ KG Kyrgyzstan	☐ OM Oman	☐ VN Viet Nam
☐ EE Estonia	☐ KH Cambodia	☐ PL Poland	☐ WS Samoa
	☐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M/3(E)

감축 등재 신청

권리자가 작성합니다 참조번호: 연속용지:	국제사무국이 사용합니다
--	--------------

1

국제등록번호

.....

2
 권리자의 성명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대로)

.....

3

디자인

감축할(보호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각 디자인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			
.....			
.....			
.....			

4

체약당사자

다음 두 개의 선택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 항목 4에 표시된 디자인의 감축을 모든 지정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등재합니다;
- ☐ 항목 4에 표시된 디자인의 감축을 다음 지정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등재합니다:

- | | | | |
|---|------------------------------------|---|--------------------------------------|
| ☐ AL 알바니아 | ☐ ES 스페인 | ☐ LI 리히텐슈타인 | ☐ RU 러시아 |
| ☐ AM 아르메니아 | ☐ FI 핀란드 | ☐ LT 리투아니아 | ☐ RW 르완다 |
| ☐ AZ 아제르바이잔 | ☐ FR 프랑스 | ☐ LV 라트비아 | ☐ SG 싱가포르 |
| ☐ B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 GA 가봉 | ☐ MA 모로코 | ☐ SI 슬로베니아 |
| ☐ BG 불가리아 | ☐ GB 영국 | ☐ MC 모나코 | ☐ SM 산마리노 |
| ☐ BJ 베냉 | ☐ GE 조지아 | ☐ MD 몰도바 | ☐ SN 세네갈 |
| ☐ BN 브루나이 다루살람 | ☐ GH 가나 | ☐ ME 몬테네그로 | ☐ SR 수리남 |
| ☐ BR 브라질 | ☐ GR 그리스 | ☐ MK 마케도니아 | ☐ ST 상토메 프린스페 |
| ☐ BW 보츠와나 | ☐ HR 크로아티아 | ☐ ML 말리 | ☐ SY 시리아 |
| ☐ BX 베네룩스 | ☐ HU 헝가리 | ☐ MN 몽골 | ☐ TJ 타지키스탄 |
| ☐ BY 벨라루스 | ☐ IL 이스라엘 | ☐ MU 모리셔스 | ☐ TM 투르크메니스탄 |
| ☐ BZ 벨리제 | ☐ IS 아이슬란드 | ☐ MX 멕시코 | ☐ TN 튀니지 |
| ☐ CA 캐나다 | ☐ IT 이탈리아 | ☐ NA 나미비아 | ☐ TR 튀르키예 |
| ☐ CH 스위스 | ☐ JM 자메이카 | ☐ NE 니제르 | ☐ UA 우크라이나 |
| ☐ CI 코트디부아르 | ☐ JP 일본 | ☐ NO 노르웨이 | ☐ US 미국 |
| ☐ CN 중국 | ☐ KG 키르기스스탄 | ☐ OA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 | ☐ VN 베트남 |
| ☐ DE 독일 | ☐ KH 캄보디아 | ☐ OM 오만 | ☐ WS 사모아 |
| ☐ DK 덴마크 | ☐ KP 북한 | ☐ PL 폴란드 | |
| ☐ EE 에스토니아 | ☐ KR 대한민국 | ☐ RO 루마니아 | |
| ☐ EG 이집트 | | ☐ RS 세르비아 | |
| ☐ EM 유럽연합 | | | |

5**Signature**

The signatory is the :

☐ Holder☐ Representative of the holder

Full name.....

Date (dd/mm/yyyy):.....

Signature

Text string signatures (e.g. /John Doe/) are recommended. Signatures may be handwritten, printed, stamped, typed or in another electronic form (image, digital or computer generated).

PAYMENT OF FEES

1. Total amount of fees (in Swiss francs) : 144

2.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at WIPO

WIPO is hereby instructed to debit the required amount of fees from the following Current Account at WIPO (if this item is completed, it is not necessary to complete items 3 or 4 below)

Holder of the account : Account number :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instruction (Full name or authorized use name) :

3. Payment received and acknowledged by WIPO

This must refer to a payment which you have previously sent to WIPO and wish to use for this application.

Identity of the party which made the payment(Full name of the bank account holder) :.....

WIPO receipt number (Receipt number of your previous payment(s) :.....

4. Bank transfer

Identity of the party making the payment (Full name of the bank account holder) :

- | | | |
|---|--|----------------------|
| ☐ Payment made to WIPO bank account
WIPO,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IBAN No. CH51 0483 5048 7080 8100 0
Swift/BIC: CRESCHZZ80A | Payment identification
(as indicated in the payment,
e.g. Hague user reference)
..... | dd/mm/yyyy.
..... |
| ☐ Payment made to WIPO postal account
(within Europe only)
WIPO, SWISS POST/Postfinance,
Engelhaldenstrasse 37, CH-30230 Bern
IBAN No. CH03 0900 0000 1200 5000 8
Swift/BIC: POFICHBE | Payment identification
(as indicated in the payment,
e.g. Hague user reference)
..... | dd/mm/yyyy.
..... |

5

서명

서명인은 :

☐ 권리자☐ 법인 - 공식명칭

성명:.....

서명일자(일/월/연도):.....

서명.....

Text string 서명(예시 /홍길동/)을 권장합니다. 서명은 수기, 인쇄, 날인, 또는 기타 전자형식(이미지, 디지털 또는 컴퓨터 생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수수료의 납부

1. 총 수수료(스위스프랑으로 표시)

: 144

2. 당좌계좌에서 인출 지시

국제사무국이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아래 당좌 계좌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항목을 기재하면 아래 항목 3 또는 4를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계좌의 소유자 :..... 계좌번호 :.....

지시를 하는 사람의 신원 :.....

3. 국제사무국이 수령하고 승인한 납부

이는 이전에 WIPO에 납부한 금액을 이 출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납부한 사람의 신원(계좌 소유자 전체이름) :.....

국제사무국 영수증번호(이전 납부시 받은 영수증 번호) :.....

4. 은행 송금

납부 당사자 신원 :.....

- ☐ WIPO 은행계좌로 납부
- | | | |
|--|--------|-------|
| WIPO,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 납부자 신원 | 납부일자 |
| IBAN No. CH51 0483 5048 7080 8100 0 | | |
| Swift/BIC: CRESCHZZ80A | | |
- ☐ WIPO 우편계좌로 납부(유럽내에서만 가능)
- | | | |
|-------------------------------------|--------|-------|
| WIPO, SWISS POST/Postfinance, | 납부자 신원 | 납부일자 |
| Engelhaldenstrasse 37, CH-3030 Bern | | |
| IBAN No. CH03 0900 0000 1200 5000 8 | | |
| Swift/BIC: POFICHBE | | |

국제등록의 갱신 신청 (DM/4)

DM/4(E)**RENEWAL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IMPORTANT**

We strongly recommend that you renew your international registration through eHague.

If using form DM/4:

1. You can renew only one international registration per form.
2. Special note on the design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US national law provides for a single 15-year term of protection, counted from the date of grant of protection. If you wish to continue to benefit from centralized management of your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cluding the US, you must renew the designation of the US. While there is no renewal designation fee for the US, the basic fee applies.
3. Use the Hague System Fee Calculator to calculate the cost of renewing your international registration or consult Hague System Fees and Payments.
4. All fields are mandatory unless indicated otherwise.
5. Complete this form electronically; WIPO does not accept handwritten forms.
6. Avoid printing and scanning this form. Upload the completed and signed form directly to WIPO through Contact Hague.
7. For more information on the renewal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DM/4(E)**국제등록의 갱신****중요**

eHague를 통해 국제 등록을 갱신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DM/4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1. 한 개의 서식에 한 개의 국제등록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미국(US) 지정에 관한 특별 참고사항: 미국 국내법은 보호 부여일로부터 계산하여 15년의 단일 보호 기간을 규정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등록의 중앙집중관리 혜택을 계속 누리시려면 미국지정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갱신지정수수료가 없으나 기본수수료가 적용됩니다.
3. 헤이그 시스템 수수료 계산기를 사용하여 국제 등록 갱신 비용을 계산하거나 Hague System Fees and Payments에 문의하십시오.
4.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필드는 필수입니다.
5. 이 양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십시오. WIPO는 수기 양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이 양식을 인쇄하거나 스캔하지 마십시오. 작성 및 서명된 양식을 Contact Hague를 통해 WIPO에 직접 업로드하십시오.
7. 국제등록 갱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헤이그 시스템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DM/4(E)

RENEWAL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u>For use by the holder</u> Reference(optional).....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if any)...	<u>For use by WIPO</u>
---	---

1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You can renew only one international registration per form(e.g. DM/123456).

2 Name of the Holder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3 Email Address of the Holder

.....

WIPO strongly recommends that you provide the email address of the holder to enable electronic communication. Email addresses must be accurate and kept up to date. Note: to provide or update the email address of a representative, use Contact Hague.

4 Scope of the Renewal

Note: The renewal will be recorded for all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selected in this item – including those for which a total refusal w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and/or the maximum period of protection expired.

Select “Total renewal”, to renew all designs in all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To renew only some/all designs in only some/all Contracting Parties, select “Partial renewal” and complete item (a) or item (b). (Safeguard: In the case of partial renewal, if no design or no Contracting Party is indicated, the renewal will be recorded for all designs and all Contracting Parties.)

☐ TOTAL RENEWAL: ☐ PARTIAL RENEWAL

(a) for the following designs

☐ Check this box to renew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for all designs; or indicate below the designs for which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to be renewed:

.....

.....

and for the following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 Check this box to renew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for all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or indicate below the contracting Parties for which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to be renewed:

DM/4(E)

국제등록의 갱신

권리자가 작성합니다

참조번호:

연속용지:

국제사무국이 사용합니다

1

국제등록번호

.....

하나의 서식 당 하나의 국제등록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권리자의 성명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대로)

.....

3

권리자의 이메일 주소

.....

WIPO는 전자 통신이 가능하도록 보유자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참고: 대리인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거나 업데이트하려면 Contact Hague를 이용하십시오.

4

갱신의 범위

참고: 국제 등록부에 완전한 거부가 기록되거나 최대 보호 기간이 만료된 국가를 포함하여 이 항목에서 선택한 모든 지정된 계약당사자에 대해 갱신이 기록됩니다.

지정된 모든 계약 당사자의 모든 디자인을 갱신하려면 "전체 갱신"을 선택하십시오. 일부/전체 계약 당사자의 일부/전체 디자인만 갱신하려면 "부분 갱신"을 선택하고 항목 (a) 또는 항목 (b)를 완료하십시오. (보호장치: 부분 갱신의 경우 디자인이 없거나 계약 당사자가 표시되지 않으면 모든 디자인 및 모든 계약 당사자에 대해 갱신이 기록됩니다.)

☐ 전부 갱신: (b) ☐ 부분 갱신

(a) 관련 디자인

☐ 모든 디자인에 대해 국제등록을 갱신하는 경우 이 박스를 체크하십시오 또는 국제등록이 갱신될 디자인을 아래에 기재하십시오:

.....

관련 지정 계약당사자

☐ 모든 지정 계약당사자에 대해 국제등록을 갱신할 경우 이 박스를 체크하십시오. 또는 국제등록이 갱신될 아래의 계약당사자를 표시하십시오.

☐ AL Albania	☐ EG Egypt	☐ KR Republic of Korea	☐ RO Romania
☐ AM Armenia	☐ EM European Union	☐ LI Liechtenstein	☐ RS Serbia
☐ AZ Azerbaijan	☐ ES Spain	☐ LT Lithuania	☐ RU Russian Federation
☐ BA Bosnia and Herzegovina	☐ FI Finland	☐ LV Latvia	☐ RW Rwanda
☐ BG Bulgaria	☐ FR France	☐ MA Morocco	☐ SG Singapore
☐ BJ Benin	☐ GA Gabon	☐ MC Monaco	☐ SI Slovenia
☐ BN Brunei Darussalam	☐ GB United Kingdom	☐ MD Republic of Moldova	☐ SM San Marino
☐ BR Brazil	☐ GE Georgia	☐ ME Montenegro	☐ SN Senegal
☐ BW Botswana	☐ GH Ghana	☐ MK North Macedonia	☐ SR Suriname
☐ BX Benelux	☐ GR Greece	☐ ML Mali	☐ ST Sao Tome and Principe
☐ BY Belarus	☐ HR Croatia	☐ MN Mongolia	☐ SY Syrian Arab Republic
☐ BZ Belize	☐ HU Hungary	☐ MU Mauritius	☐ TJ Tajikistan
☐ CA Canada	☐ IL Israel	☐ MX Mexico	☐ TM Turkmenistan
☐ CH Switzerland	☐ IS Iceland	☐ NA Namibia	☐ TN Tunisia
☐ CI Côte d'Ivoire	☐ IT Italy	☐ NE Niger	☐ TR Türkiye
☐ CN China	☐ JM Jamaica	☐ NO Norway	☐ UA Ukraine
☐ DE Germany	☐ JP Japan	☐ OA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US United States of America
☐ DK Denmark	☐ KG Kyrgyzstan	☐ OM Oman	☐ VN Viet Nam
☐ EE Estonia	☐ KH Cambodia	☐ PL Poland	☐ WS Samoa
	☐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 for certain designs in certain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as follows :

designs

contracting parties

.....

.....

.....

.....

5

Signature

The signatory is the :

☐ Holder

☐ Representative of the holder

Full name

Date (dd/mm/yyyy):

Signature

Text string signatures (e.g. /John Doe/) are recommended. Signatures may be handwritten, printed, stamped, typed or in another electronic form (image, digital or computer generated).

- | | | | |
|---|------------------------------------|---|--------------------------------------|
| ☐ AL 알바니아 | ☐ ES 스페인 | ☐ LI 리히텐슈타인 | ☐ RU 러시아 |
| ☐ AM 아르메니아 | ☐ FI 핀란드 | ☐ LT 리투아니아 | ☐ RW 르완다 |
| ☐ AZ 아제르바이잔 | ☐ FR 프랑스 | ☐ LV 라트비아 | ☐ SG 싱가포르 |
| ☐ B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 GA 가봉 | ☐ MA 모로코 | ☐ SI 슬로베니아 |
| ☐ BG 불가리아 | ☐ GB 영국 | ☐ MC 모나코 | ☐ SM 산마리노 |
| ☐ BJ 베냉 | ☐ GE 조지아 | ☐ MD 몰도바 | ☐ SN 세네갈 |
| ☐ BN 브루나이 다루살람 | ☐ GH 가나 | ☐ ME 몬테네그로 | ☐ SR 수리남 |
| ☐ BR 브라질 | ☐ GR 그리스 | ☐ MK 마케도니아 | ☐ ST 상토메 프린스페 |
| ☐ BW 보츠와나 | ☐ HR 크로아티아 | ☐ ML 말리 | ☐ SY 시리아 |
| ☐ BX 베네룩스 | ☐ HU 헝가리 | ☐ MN 몽골 | ☐ TJ 타지키스탄 |
| ☐ BY 벨라루스 | ☐ IL 이스라엘 | ☐ MU 모리셔스 | ☐ TM 투르크메니스탄 |
| ☐ BZ 벨리제 | ☐ IS 아이슬란드 | ☐ MX 멕시코 | ☐ TN 튀니지 |
| ☐ CA 캐나다 | ☐ IT 이탈리아 | ☐ NA 나미비아 | ☐ TR 튀르키예 |
| ☐ CH 스위스 | ☐ JM 자메이카 | ☐ NE 니제르 | ☐ UA 우크라이나 |
| ☐ CI 코트디부아르 | ☐ JP 일본 | ☐ NO 노르웨이 | ☐ US 미국 |
| ☐ CN 중국 | ☐ KG 키르기스스탄 | ☐ OA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 | ☐ VN 베트남 |
| ☐ DE 독일 | ☐ KH 캄보디아 | ☐ OM 오만 | ☐ WS 사모아 |
| ☐ DK 덴마크 | ☐ KP 북한 | ☐ PL 폴란드 | |
| ☐ EE 에스토니아 | ☐ KR 대한민국 | ☐ RO 루마니아 | |
| ☐ EG 이집트 | | ☐ RS 세르비아 | |
| ☐ EM 유럽연합 | | | |

(b) 특정 지정 계약당사자에 대해 특정 디자인을 갱신하는 경우

디자인

계약 당사자

.....

.....

.....

.....

5

서명

서명인은 :

☐ 권리자

☐ 법인 - 공식명칭

성명:.....

서명일자(일/월/연도):.....

서명.....

Text string 서명(예시 /홍길동/)을 권장합니다. 서명은 수기, 인쇄, 날인, 또는 기타 전자형식(이미지, 디지털 또는 컴퓨터 생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FEE CALCULATION SHEET(all amounts in Swiss Francs)

Note : This sheet is provided for the convenience of users. It is recommended to use the Fee Calculator.

(a) Basic fees		
for one design		200.-
for each additional design : 17 Swiss francs ×	designs	=
(b) Standard designation fee		
Albania, Armenia, Azerbaijan, Belarus, Belize, Benelux, Benin,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lgaria, Cambodia, Côte d'Ivoire, Croati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nmark, Egypt, Estonia, Finland, France, Gabon,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Iceland, Italy, Jamaica,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Mali, Mauritius, Monaco, Mongolia, Montenegro, Morocco, Namibia, Niger, North Macedonia, Norway, Oman, Poland, Republic of Korea (i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date is before December 1, 2020: designs belonging to Locarno class 2, 5 or 19, i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date is on or after December 1, 2020: designs belonging to Locarno class 1, 2, 3, 5, 9, 11 or 19), Romania, Rwanda, Samoa, San Marino,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erbia, Singapore, Slovenia, Spain, Suriname,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unisia, Türkiye, Turkmenista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s with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date before December 11, 2020), Ukraine, United Kingdom, Viet Nam)		
first design : 21 Swiss francs ×	Contracting Parties	=
additional design : 1 Swiss franc ×	designs × Contracting Parties	=
(c) Individual designation fee		
Canada: First renewal: 276 Swiss francs ×	design	=
subsequent renewals: 0		
China: First renewal: 1,117	Second renewals: 2,205	=
European Union: 34 Swiss francs ×	design	=
Hungary: 47 Swiss francs (first design) + 11 Swiss francs (per additional design) ×	designs	=
Israel: First renewal: 146 Swiss francs ×	design.	=
Second renewal: 175 Swiss francs ×	design	=
Third renewal: 204 Swiss francs ×	design	=
Fourth renewal: 234 Swiss francs ×	design	=
Japan: 574 Swiss francs ×	design	=
Kyrgyzstan: 64 Swiss francs (first design) + 6 Swiss francs(per additional design) ×	design.	=
Mexico: 290 Swiss francs ×	design	=
145Swiss francs(entitled for fee reduction) ×	design	=
OAPI: 190 Swiss francs ×	design	=
Republic of Korea: <i>i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date is before December 1, 2020: designs belonging to Locarno class 1, 3, 4, 6 to 18, or 20 to 32; i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date is on or after December 1, 2020: designs belonging to 4, 6 to 8, 10, 12 to 18 or 20 to 32)</i>		
First renewal : 296 Swiss francs ×	design	=
Second renewal : 699 Swiss francs ×	design	=
Third renewal : 806 Swiss francs ×	design	=
Republic of Moldova: 105 Swiss francs (first design) + 10 Swiss francs(per additional design) ×	... designs	=
Russian Federation:		
First renewal: 219 Swiss francs	Second renewal: 538 Swiss francs	=
Third renewal: 800 Swiss francs	Fourth renewal: 1392 Swiss francs	=
Turkmenistan: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s with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date on or after December 11,2020)		
First renewal: 1010 Swiss francs	Second renewal: 1586 Swiss francs	=
(d) Surcharge (payable only if the payment of renewal fees is made after the date of expiry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50% of the renewal basic fee		=
Grand total (Swiss francs)		=

수수료 계산

이 항목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합니다. 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 기본 수수료

첫 번째 디자인 : 200 스위스 프랑

추가되는 각 디자인 : 17 스위스 프랑 × 추가 디자인 수

(b) 표준 지정수수료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벨리즈, 베네룩스, 베냉,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다루살람, 불가리아,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덴마크,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자메이카,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말리, 모리셔스,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나미비아, 니제르,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오만, 폴란드, 대한민국(국제등록일이 2020년 12월 1일 이전인 경우: 로카르노 분류 2, 5, 19에 속하는 디자인, 국제등록일이 2020년 12월 1일 이후인 경우: 로카르노 분류 1, 2, 3, 5, 9, 11, 19에 속하는 디자인), 루마니아, 르완다,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스페인, 수리남, 스위스, 시리아 아랍 공화국, 타지키스탄, 튀니지,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국제 등록일이 2020년 12월 11일 이전인 국제 등록의 경우), 우크라이나, 영국, 베트남)

첫 디자인 : 21 스위스 프랑 × 계약당사자

추가 디자인 : 1 스위스 프랑 × 추가 디자인 수 × 계약당사자

(c) 개별 지정수수료

캐나다: 첫 번째 갱신 : 276 스위스 프랑 × 디자인 수

사후 갱신 : 0 스위스 프랑

중국 : 첫 번째 갱신: 1,117 스위스 프랑

두 번째 갱신 : 2,205 스위스 프랑

유럽연합: 34 스위스 프랑 × 디자인 수

헝가리 : 47 스위스 프랑(첫 디자인) + 11 스위스 프랑 × 추가 디자인 수.

이스라엘: 첫 번째 갱신: 146 스위스 프랑 × 디자인 수

두 번째 갱신: 175 스위스 프랑 × 디자인 수

세 번째 갱신: 204 스위스 프랑 × 디자인 수

네 번째 갱신: 234 스위스 프랑 × 디자인 수

일본: 574 스위스 프랑 × 디자인 수

키르기스스탄 : 64 스위스 프랑(첫 디자인) + 6 스위스 프랑 × 추가 디자인 수

멕시코 : 290 스위스 프랑 × 디자인 수

145 스위스 프랑(수수료 감면시) × 디자인 수

OAPI: 190스위스 프랑 × 디자인 수

대한민국: (국제등록일이 2020년 12월 1일 이전인 경우: 로카르노 분류 1, 3, 4, 6~18, 20~32에 속하는 디자인, 국제등록일이 2020년 12월 1일 이후인 경우: 로카르노 분류 4, 6~8, 10, 12~18, 20~32에 속하는 디자인)

첫 번째 갱신 : 296 스위스 프랑 × 디자인 수

두 번째 갱신 : 699 스위스 프랑 × 디자인 수

세 번째 갱신 : 806 스위스 프랑 × 디자인 수

몰도바 : 105 스위스 프랑(첫 디자인) + 10 스위스 프랑 × 추가 디자인 수.

러시아: 첫 번째 갱신: 219 스위스 프랑

두 번째 갱신: 538 스위스 프랑

세 번째 갱신: 800 스위스 프랑

네 번째 갱신: 1,392 스위스 프랑]

투르크메니스탄 : 국제등록일이 2020년 12월 11일 이후인 경우

첫 번째 갱신: 1,019 스위스 프랑

두 번째 갱신: 1,586 스위스 프랑

(d) 할증액 - 국제등록의 갱신만료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

갱신 기본료의 50%

총계 (스위스 프랑)

국제등록의 포기 신청 (DM/5)

DM/5(E)**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RENUNCIATION****IMPORTANT**

1. You can request the recording of a renunciation of multiple international registrations of the same holder, if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renounced are the same for each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s concerned.
2. The request must relate to all designs covered by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s). If the request relates to only some of the designs, use form DM/3 (limitation).
3. Complete this form electronically; WIPO does not accept handwritten forms.
4. All fields are mandatory unless indicated otherwise.
5. Avoid printing and scanning the form. Upload the completed and signed form directly to WIPO through Contact Hague.
6. For more information on the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renunciation,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DM/5(E)**포기의 등재 신청****중 요**

1. 국제등록이 포기된 지정 계약당사자가 각 국제등록에 대해 동일한 경우, 동일한 권리자의 복수 국제등록 포기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요청은 국제등록에 포함된 모든 디자인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요청이 일부 디자인에만 관련된 경우 DM/3서식(감축)을 사용하세요.
3. 이 양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십시오. WIPO는 수기 양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5. 양식을 인쇄하거나 스캔하지 마십시오. 작성 및 서명된 양식을 Contact Hague를 통해 WIPO에 직접 업로드하십시오.
6. 포기 기록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헤이그 시스템 지침을 참조하세요.

DM/5(E)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RENUNCIATION

For use by the holder

Reference(optional).....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if any)...

For use by WIPO

1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S)

.....
.....

You can request the recording of a renunciation of multiple international registrations of the same holder, if the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renounced are the same for each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s concerned. Provide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or each international registration concerned (e.g. DM/123456). Separate multiple registration numbers with a semicolon.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2Name of the Holder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3

Contracting Parties

Select the scope from one of the following two options:

☐ The renunciation concerns **all**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 The renunciation concerns the following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 | | | | |
|---|--|---|---|
| ☐ AL Albania | ☐ EG Egypt | ☐ KR Republic of Korea | ☐ RO Romania |
| ☐ AM Armenia | ☐ EM European Union | ☐ LI Liechtenstein | ☐ RS Serbia |
| ☐ AZ Azerbaijan | ☐ ES Spain | ☐ LT Lithuania | ☐ RU Russian Federation |
| ☐ BA Bosnia and Herzegovina | ☐ FI Finland | ☐ LV Latvia | ☐ RW Rwanda |
| ☐ BG Bulgaria | ☐ FR France | ☐ MA Morocco | ☐ SG Singapore |
| ☐ BJ Benin | ☐ GA Gabon | ☐ MC Monaco | ☐ SI Slovenia |
| ☐ BN Brunei Darussalam | ☐ GB United Kingdom | ☐ MD Republic of Moldova | ☐ SM San Marino |
| ☐ BR Brazil | ☐ GE Georgia | ☐ ME Montenegro | ☐ SN Senegal |
| ☐ BW Botswana | ☐ GH Ghana | ☐ MK North Macedonia | ☐ SR Suriname |
| ☐ BX Benelux | ☐ GR Greece | ☐ ML Mali | ☐ ST Sao Tome and Principe |
| ☐ BY Belarus | ☐ HR Croatia | ☐ MN Mongolia | ☐ SY Syrian Arab Republic |
| ☐ BZ Belize | ☐ HU Hungary | ☐ MU Mauritius | ☐ TJ Tajikistan |
| ☐ CA Canada | ☐ IL Israel | ☐ MX Mexico | ☐ TM Turkmenistan |
| ☐ CH Switzerland | ☐ IS Iceland | ☐ NA Namibia | ☐ TN Tunisia |
| ☐ CI Côte d'Ivoire | ☐ IT Italy | ☐ NE Niger | ☐ TR Türkiye |
| ☐ CN China | ☐ JM Jamaica | ☐ NO Norway | ☐ UA Ukraine |
| ☐ DE Germany | ☐ JP Japan | ☐ OA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 US United States of America |
| ☐ DK Denmark | ☐ KG Kyrgyzstan | ☐ OM Oman | ☐ VN Viet Nam |
| ☐ EE Estonia | ☐ KH Cambodia | ☐ PL Poland | ☐ WS Samoa |
| | ☐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 |

4

Signature

The signatory is the :

☐ Holder

☐ Representative of the holder

Full name.....

Date (dd/mm/yyyy):.....

Signature

Text string signatures (e.g. /John Doe/) are recommended. Signatures may be handwritten, printed, stamped, typed or in another electronic form (image, digital or computer generated).

DM/5(E)

포기의 등재 신청

권리자가 작성합니다 참조번호: 연속용지:	국제사무국이 사용합니다
--	--------------

1

국제등록번호

.....

.....

국제등록이 포기된 지정 계약당사자가 해당 국제등록 각각에 대해 동일한 경우, 동일한 권리자의 복수 국제등록 포기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제등록마다 국제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예: DM/123456). 여러 개의 등록 번호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세요.

☐ 제공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 상자를 선택하고 연속 시트를 사용하십시오.

2

권리자의 성명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대로)

.....

3

계약당사자

다음 두 선택사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모든 지정계약당사자에 대하여 포기합니다;

☐ 아래 지정계약당사자에 관하여 포기합니다:

☐ AL 알바니아 ☐ AM 아르메니아 ☐ AZ 아제르바이잔 ☐ BA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 BG 불가리아 ☐ BJ 베냉 ☐ BN 브루나이 다루살람 ☐ BR 브라질 ☐ BW 보츠와나 ☐ BX 베네룩스 ☐ BY 벨라루스 ☐ BZ 벨리제 ☐ CA 캐나다 ☐ CH 스위스 ☐ CI 코트디부아르 ☐ CN 중국 ☐ DE 독일 ☐ DK 덴마크 ☐ EE 에스토니아 ☐ EG 이집트 ☐ EM 유럽연합	☐ ES 스페인 ☐ FI 핀란드 ☐ FR 프랑스 ☐ GA 가봉 ☐ GB 영국 ☐ GE 조지아 ☐ GH 가나 ☐ GR 그리스 ☐ HR 크로아티아 ☐ HU 헝가리 ☐ IL 이스라엘 ☐ IS 아이슬란드 ☐ IT 이탈리아 ☐ JM 자메이카 ☐ JP 일본 ☐ KG 키르기스스탄 ☐ KH 캄보디아 ☐ KP 북한 ☐ KR 대한민국	☐ LI 리히텐슈타인 ☐ LT 리투아니아 ☐ LV 라트비아 ☐ MA 모로코 ☐ MC 모나코 ☐ MD 몰도바 ☐ ME 몬테네그로 ☐ MK 마케도니아 ☐ ML 말리 ☐ MN 몽골 ☐ MU 모리셔스 ☐ MX 멕시코 ☐ NA 나미비아 ☐ NE 니제르 ☐ NO 노르웨이 ☐ OA 아프리카 ☐ OM 오만 ☐ PL 폴란드 ☐ RO 루마니아 ☐ RS 세르비아	☐ RU 러시아 ☐ RW 르완다 ☐ SG 싱가포르 ☐ SI 슬로베니아 ☐ SM 산마리노 ☐ SN 세네갈 ☐ SR 수리남 ☐ ST 상토메 프린스페 ☐ SY 시리아 ☐ TJ 타지키스탄 ☐ TM 투르크메니스탄 ☐ TN 튀니지 ☐ TR 튀르키예 ☐ UA 우크라이나 ☐ US 미국 ☐ VN 베트남 ☐ WS 사모아
---	---	---	---

4

서명

서명인은 :

☐ 권리자 ☐ 법인 - 공식명칭

성명:.....

서명일자(일/월/연도):.....

서명.....

Text string 서명(예시 /홍길동/)을 권장합니다. 서명은 수기, 인쇄, 날인, 또는 기타 전자형식(이미지, 디지털 또는 컴퓨터 생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PAYMENT OF FEES

1. Amount of fees (in Swiss francs)

144 swiss francs Xper international registration mentioned in item 1

Total =

2.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at WIPO

WIPO is hereby instructed to debit the required amount of fees from the following Current Account at WIPO
(if this item is completed, it is not necessary to complete items 3 or 4 below)

Holder of the account : Account number :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instruction (Full name or authorized use name) :

3. Payment received and acknowledged by WIPO

This must refer to a payment which you have previously sent to WIPO and wish to use for this application.

Identity of the party which made the payment(Full name of the bank account holder) :

WIPO receipt number (Receipt number of your previous payment(s) :

4. Bank transfer

Identity of the party making the payment (Full name of the bank account holder) :

- ☐ Payment made to WIPO bank account
WIPO,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IBAN No. CH51 0483 5048 7080 8100 0
Swift/BIC: CRESCHZZ80A

Payment identification
(as indicated in the payment,
e.g. Hague user reference)

dd/mm/yyyy.

- ☐ Payment made to WIPO postal account
(within Europe only)
WIPO, SWISS POST/Postfinance,
Engelhaldenstrasse 37, CH-30230 Bern
IBAN No. CH03 0900 0000 1200 5000 8
Swift/BIC: POFICHBE

Payment identification
(as indicated in the payment,
e.g. Hague user reference)

dd/mm/yyyy.

수수료의 납부

1. 총 수수료(스위스프랑으로 표시)

144 스위스프랑 X 항목 1에 기재된 국제등록 수

총 합계 :

2. 당좌계좌에서 인출 지시

국제사무국이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아래 당좌 계좌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항목을 기재하면 아래 항목 3 또는 4를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계좌의 소유자 : 계좌번호 :

지시를 하는 사람의 신원 :

3. 국제사무국이 수령하고 승인한 납부

이는 이전에 WIPO에 납부한 금액을 이 출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납부한 사람의 신원(계좌 소유자 전체이름) :

국제사무국 영수증번호(이전 납부시 받은 영수증 번호) :

4. 은행 송금

납부 당사자 신원 :

☐ WIPO 은행계좌로 납부

WIPO,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IBAN No. CH51 0483 5048 7080 8100 0
Swift/BIC: CRESCHZZ80A

납부자 신원

납부일자

.....

.....

☐ WIPO 우편계좌로 납부(유럽내에서만 가능)

WIPO, SWISS POST/Postfinance,
Engelhaldenstrasse 37, CH-3030 Bern
IBAN No. CH03 0900 0000 1200 5000 8
Swift/BIC: POFICHBE

납부자 신원

납부일자

.....

.....

국제등록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신청 (DM/6)

DM/6(E)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NAME AND/OR ADDRESS OF THE HOLDER**

IMPORTANT

1. You may use this form to request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the name and/or postal address of the recorded holder, in respect of multiple international registrations of the same holder. If the request relates to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ownership, use form DM/2. If you would like to record a new or updated email address only, use Contact Hague.
2. All fields are mandatory unless indicated otherwise.
3. Complete this form electronically; WIPO does not accept handwritten forms.
4. Avoid printing and scanning this form. Upload the completed and signed form directly to WIPO through Contact Hague.
5. For more information on the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the name and/or address of the holder,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DM/6(E)**권리자의 성명 및/또는 주소의****변경 등재 신청****중요**

1. 동일한 보유자의 여러 국제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된 보유자의 이름 및/또는 우편 주소 변경 기록을 요청하려면 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소유권 변경 기록과 관련된 경우 DM/2 서식을 사용하십시오. 새 이메일 주소나 업데이트된 이메일 주소만 기록하려면 Contact Hague를 이용하십시오.
2.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3. 이 양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십시오. WIPO는 수기 양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이 양식을 인쇄하거나 스캔하지 마십시오. 작성 및 서명된 양식을 Contact Hague를 통해 WIPO에 직접 업로드하십시오.
5. 보유자의 이름 및/또는 주소 변경 기록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헤이그 시스템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DM/6(E)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NAME AND/OR ADDRESS OF THE HOLDER

For use by the holder

Reference(optional).....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if any).....

For use by WIPO

1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s)

.....
.....Provide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or each international registration concerned (ex. DM/123456).
Separate multiple reference numbers with a semicolon.**2**

Name of the Holder

.....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If there are multiple holders, indicate only the full name of the holder with
by the change. If multiple holders are concerned by the change, submit one form for each holder.**3**

Change in Name and/or Address of the Holder

Only complete the fields for which information has changed.

holder is a :

☐ Natural person – Family name: Given name:☐ Legal entity – Official designation:

Address:

Postal code: City: Region/state(optional)..... Country:

E-mail address:

WIPO strongly recommends that you provide the email address of the holder to enable electronic communication.
Email address must be accurate and kept up to date.

Telephone(optional):

Include the country and area code, e.g. +41 22 338 757

4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for Multiple Holders

Complete this item if there are multiple holders and no representative is appointed, and you wish to:

a) maintain the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as already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otherwise,
it will be disregarded by WIPO);

b) replace the existing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already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c) indicate for the first time an email address for correspondence other than that provided in item 3.

Note: If there is only one holder or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the information provided under this item will
be disregarded.

Email address :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to this email address. Please ensure that the email address is accurate and kept
up to date.**5**

Signature

The signatory is the :

☐ Holder☐ Representative of the holder

Full name.....

Date (dd/mm/yyyy):.....

Signature

Text string signatures (e.g. /John Doe/) are recommended. Signatures may be handwritten, printed, stamped, typed or
in another electronic form (image, digital or computer generated).

DM/6(E)

권리자의 성명 및/또는 주소의 변경 등재 신청

권리자가 작성합니다 참조번호: 연속용지:	국제사무국이 사용합니다
--	--------------

1 국제등록번호

.....

.....

해당 국제등록마다 국제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예: DM/123456). 여러 참조 번호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세요.

2 권리자의 성명

.....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대로 기재하십시오. 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변경되는 권리자의 성명만 기재합니다. 여러 권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각 보유자에 대해 각각의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3 권리자 성명 및/또는 주소의 변경

오직 정보가 변경되는 항목만 표시하십시오

권리자는

☐ 자연인 - 성: 이름:.....

☐ 법인 - 공식명칭:

주소:

우편번호: 도시명: 광역명(선택사항)..... 국가명:

이메일주소:

국제사무국은 전자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권리자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정확하고 최신주소로 유지하십시오.

전화번호(선택사항):

4 연락 주소

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으며 다음을 원하는 경우 이 항목을 작성하십시오.

a) 국제 등록부에 이미 기록된 통신용 이메일 주소를 유지합니다(그렇지 않으면 WIPO가 이를 무시합니다).

b) 국제등록부에 이미 기록된 연락용 기존 이메일 주소를 대체합니다.

c) 항목 3에 제공된 것 이외의 통신용 이메일 주소를 처음으로 표시합니다.

참고: 권리자가 한명이거나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 항목에 제공된 정보는 무시됩니다.

이메일 주소:

WIPO는 오직 이 이메일 주소로 모든 통지서를 보낼것입니다.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고 최신으로 유지하십시오.

5 서명

서명인은 :

☐ 권리자 ☐ 법인 - 공식명칭

성명:.....

서명일자(일/월/연도):.....

서명.....

Text string 서명(예시 /홍길동/)을 권장합니다. 서명은 수기, 인쇄, 날인, 또는 기타 전자형식(이미지, 디지털 또는 컴퓨터 생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PAYMENT OF FEES

1. Amount of Fees (in Swiss francs)

One international registration :

each additional international registration : 72swiss francs Xinternational registrations. =

Total =

2.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at WIPO

WIPO is hereby instructed to debit the required amount of fees from the following Current Account at WIPO (if this item is completed, it is not necessary to complete items 3 or 4 below)

Holder of the account : Account number :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instruction (Full name or authorized use name) :

3. Payment received and acknowledged by WIPO

This must refer to a payment which you have previously sent to WIPO and wish to use for this application.

Identity of the party which made the payment(Full name of the bank account holder) :

WIPO receipt number (Receipt number of your previous payment(s)) :

4. Bank transfer

Identity of the party making the payment (Full name of the bank account holder) :

☐ Payment made to WIPO bank account
WIPO,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IBAN No. CH51 0483 5048 7080 8100 0
Swift/BIC: CRESCHZZ80A

Payment identification
(as indicated in the payment,
e.g. Hague user reference)

dd/mm/yyyy.

☐ Payment made to WIPO postal account
(within Europe only)
WIPO, SWISS POST/Postfinance,
Engelhaldenstrasse 37, CH-30230 Bern
IBAN No. CH03 0900 0000 1200 5000 8
Swift/BIC: POFICHBE

Payment identification
(as indicated in the payment,
e.g. Hague user reference)

dd/mm/yyyy.

수수료의 납부

1. 총 수수료 (스위스프랑으로 표시)

첫 국제등록 : 144 스위스프랑

추가 국제등록 : 72 스위스프랑 X국제등록 수 =

Total =

2. 당좌계좌에서 인출 지시

국제사무국이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아래 당좌 계좌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항목을 기재하면 아래 항목 3 또는 4를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계좌의 소유자 : 계좌번호 :

지시를 하는 사람의 신원 :

3. 국제사무국이 수령하고 승인한 납부

이는 이전에 WIPO에 납부한 금액을 이 출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납부한 사람의 신원(계좌 소유자 전체이름) :

국제사무국 영수증번호(이전 납부시 받은 영수증 번호) :

4. 은행 송금

납부 당사자 신원 :

- ☐ WIPO 은행계좌로 납부
- | | | |
|--|--------|-------|
| WIPO,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 납부자 신원 | 납부일자 |
| IBAN No. CH51 0483 5048 7080 8100 0 | | |
| Swift/BIC: CRESCHZZ80A | | |
- ☐ WIPO 우편계좌로 납부(유럽내에서만 가능)
- | | | |
|-------------------------------------|--------|-------|
| WIPO, SWISS POST/Postfinance, | 납부자 신원 | 납부일자 |
| Engelhaldenstrasse 37, CH-3030 Bern | | |
| IBAN No. CH03 0900 0000 1200 5000 8 | | |
| Swift/BIC: POFICHBE | | |

대리인 선임 신청 (DM/7)

DM/7(E)**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POWER OF ATTORNEY)****IMPORTANT**

1. You may use this form to appoint a representative to act on your behalf before WIPO or to replace a representative as previously recorded. The use of this form is not compulsory.
2. The form may be used for multiple international applications and/or registrations of the same applicant or holder.
3. There is no fee for requesting the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4. Complete this form electronically; WIPO does not accept handwritten forms.
5. All fields are mandatory unless indicated otherwise. Failure to complete all fields will result in the non-recording of this appointment.
6. Avoid printing and scanning this form. Upload the completed and signed form directly to WIPO through Contact Hague.

DM/7(E)**대리인 선임
(위임장)****중요**

1. 이 양식을 사용하여 WIPO에 출원인/권리자를 대신할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이전에 기록된 대리인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의 사용은 필수는 아닙니다.
2. 이 양식은 동일한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여러 국제출원 및/또는 등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 선임요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4. 이 양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십시오. WIPO는 수기 양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모든 항목이 기재되지 않으면 이 선임은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5. 이 양식을 인쇄하거나 스캔하지 마십시오. 작성 및 서명된 양식을 Contact Hague를 통해 WIPO에 직접 업로드하십시오.

DM/7(E)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I hereby appoint the following person/entity to represent me before WIPO with respect to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s)/registration(s) identified below.

For use by the applicant/holder

Reference(optional).....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if any):

For use by WIPO

1

Applicant/Holder

Full Name :(As recorded or to be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Email address :

Telephone (optional):.....

2

Appointed Representative

Only one representative may be appointed. Note: a legal firm is regarded as one representative. If both a natural person and a legal entity are indicated, the representative will be recorded with the name of the legal entity preceding the name of the natural person.

The representative is a :

☐ Natural person – Family name: Given name:☐ Legal entity – Official designation:.....

Address:

Postal code: City: Region/state(optional)..... Country:

E-mail address:

If a representative is appointed,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to this email address. Please ensure that the email address is accurate and kept up to date.

Telephone(optional):

Include the country and area code, e.g. +41 22 338 757

3

International Application(s) / International Registration(s)

International application(s) :

.....
Provide the application reference number (assigned by WIPO or the Office of indirect filing), or the applicant's reference number (included on the original application as filed) for each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cerned (e.g. 123456789, WIPO12345). Separate multiple reference numbers with a semicolon.

International registration(s) :

.....
Provide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or each international concerned (e.g.DM/123456). Separate multiple reference numbers with a semicolon.

4

Signature of the Applicant/Holder

Date (dd/mm/yyyy):

Signature:

Text string signatures (e.g. /John Doe/) are recommended. Signatures may also be handwritten, printed, stamped, typed or in another electronic form (image, digital or computer generated).

DM/7(E)

대리인 선임

나는 아래에 명시된 국제출원/등록과 관련하여 WIPO에서 본인을 대리할 다음 개인/법인을 임명합니다.

권리자/대리인이 작성합니다

참조번호:

연속용지:

국제사무국이 사용합니다

1

출원인/ 권리자
국제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성명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대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선택사항) :

2

선임된 대리인

대리인은 한명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률회사는 하나의 대표자로 간주됩니다.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기재된 경우, 대표자는 자연인의 이름 앞에 법인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자연인 - 성: 이름:.....

☐ 법인 - 공식명칭:

주소:

우편번호: 도시명: 광역명(선택사항)..... 국가명:

이메일주소:

국제사무국은 이 이메일 주소로 모든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정확하고 최신주소로 유지하십시오.

전화번호(선택사항):

3

국제출원/국제등록

국제출원 :
해당 국제출원 각각에 대해 출원 참조 번호(WIPO 또는 간접 출원 사무국에서 할당) 또는 출원인의 참조 번호(제출 당시 원래 출원에 포함됨)를 제공하십시오(예: 123456789, WIPO12345). 여러 참조 번호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십시오.

국제등록 :
각각의 국제등록번호(예시 DM/123456)를 제공하십시오. 여러 등록번호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십시오

4

출원인/권리자의 서명

서명일자 (일/월/연도):.....

서명:

Text string 서명(예시 /홍길동/)을 권장합니다. 서명은 수기, 인쇄, 날인, 또는 기타 전자형식(이미지, 디지털 또는 컴퓨터 생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성명/주소 변경 신청 (DM/8)

DM/8(E)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NAME AND/OR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IMPORTANT

1. You may use this form to request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the name and/or postal address of the recorded representative (use form DM/7 to appoint a new representative). If you would like to record a new or updated email address only, use Contact Hague.
2. There is no fee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the name and/or address of the recorded representative.
3. Complete this form electronically; WIPO does not accept handwritten forms.
4. All fields are mandatory unless indicated otherwise.
5. Avoid printing and scanning this form. Upload the completed and signed form directly to WIPO through Contact Hague.

DM/8(E)

대리인의 성명 및/또는 주소의
변경 등재 신청

중요

1. 이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된 대리인의 이름 및/또는 우편 주소 변경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새 대리인을 지정하려면 양식 DM/7 사용). 새 이메일 주소나 업데이트된 이메일 주소만 기록하려면 Contact Hague를 이용하십시오.
2. 기록된 대리인의 이름 및/또는 주소 변경을 기록하는 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3. 이 양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십시오. WIPO는 수기 양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5. 이 양식을 인쇄하거나 스캔하지 마십시오. 작성 및 서명된 양식을 Contact Hague를 통해 WIPO에 직접 업로드하십시오.

DM/8(E)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CHANGE
IN NAME AND/OR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u>For use by the applicant/holder</u> Reference(optional).....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if any):	<u>For use by WIPO</u>
--	--

1 International Application(s)/ International Registration(s)

.....

.....

.....

Provide the application reference number for each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cerned (ex. 123456789, WIPO12345) and/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or each international registration concerned (ex. DM/123456). Separate multiple reference numbers with a semicolon.

2 Name of the Representative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3 Change in Name and/or Address of the Representative
Only complete the fields for which information has changed.

The representative is a

☐ Natural person – Family (last) name: Given (first) name:

☐ Legal entity – Official designation:.....

(b) Address:

Postal code: City: Region/state(optional)..... Country:

(c) E-mail address:.....

WIPO will send all communications to this email address. Please ensure that the email address is accurate and kept up to date.

Telephone:

4 SIGNATURE AND/OR SEAL OF THE REPRESENTATIVE

Full Name :

Date of signature (dd/mm/yyyy) :.....

Signature:.....

Text string signatures (e.g. /John Doe/) are recommended. Signatures may be handwritten, printed, stamped, typed or in another electronic form (image, digital or computer generated).

DM/8(E)

대리인의 성명 및/또는 주소의
변경 등재 신청

권리자/대리인이 작성합니다

참조번호:

연속용지:

국제사무국이 사용합니다

1

국제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이 서식은 여러 국제등록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

.....

관련된 각 국제출원에 대한 출원참조번호(예: 123456789, WIPO12345)와 관련된 각 국제등록에 대한 국제등록번호(예: DM/123456)를 기재하십시오. 복수의 참조 번호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십시오.

☐ 제공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연속용지를 사용하십시오

2

대리인의 성명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대로)

.....

3

대리인의 성명 및/또는 주소의 변경

정보가 변경된 항목만 기재하십시오

☐ 자연인 - 성: 이름:

☐ 법인 - 공식명칭:

주소:

우편번호: 도시명: 광역명(선택사항): 국가명:

이메일주소:

국제사무국은 이 이메일 주소로 모든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정확하고 최신주소로 유지하십시오.

전화번호:

국가 및 지역 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하십시오 (예시. +41 22 338 7575)

4

대리인의 서명

성명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대로)

서명일자 (일/월/연도):

서명:

Text string 서명(예시 /홍길동/)을 권장합니다. 서명은 수기, 인쇄, 날인, 또는 기타 전자형식(이미지, 디지털 또는 컴퓨터 생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의 취소 (DM/9)

DM/9(E)**CANCELLATION OF RECORDING OF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IMPORTANT**

1. You may use this form to cancel the recording of the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in respect of multiple international applications and/or registrations of the same applicant or holder. The use of this form is not compulsory.
2. There is no fee for the recording of a cancellation of the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3. Complete this form electronically; WIPO does not accept handwritten forms.
4. All fields are mandatory unless indicated otherwise.
5. Avoid printing and scanning this form. Upload the completed and signed form directly to WIPO through Contact Hague.
6. For more information on the cancellation of the recording of the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refer to the Guide to the Hague System.

DM/9(E)**대리인 선임 등재의 취소****중요**

1. 동일한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다수의 국제출원 및/또는 등록에 대하여 이 양식을 사용하여 대리인 선임 기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의 사용은 필수는 아닙니다.
2. 대리인 선임취소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3. 이 양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십시오. WIPO는 수기 양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5. 이 양식을 인쇄하거나 스캔하지 마십시오. 작성 및 서명된 양식을 Contact Hague를 통해 WIPO에 직접 업로드하십시오.
6. 대리인 선임기록 취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헤이그 시스템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DM/9(E)

CANCELLATION OF RECORDING OF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For use by the applicant/holder

Reference: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if any):

For use by WIPO

1

person requesting the cancellation of appointment

The request is made by the ☐ applicant / Holder : ☐ Representative of the holder :

.....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2

International Application(s)/ International Registration(s)

.....

.....

.....

.....

.....

.....

.....

.....

Provide the application reference number for each international application concerned (ex. 123456789, WIPO12345) and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or each international registration concerned (ex. DM/123456). Separate multiple reference numbers with a semicolon.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is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3

SIGNATURE AND/OR SEAL

Full name:

.....

Date of signature (dd/mm/yyyy) :

.....

Signature:.....

Text string signatures (e.g. /John Doe/) are recommended. Signatures may be handwritten, printed, stamped, typed or in another electronic form (image, digital or computer generated).

DM/9(E)

대리인 선임 등재의 취소

권리자/대리인이 작성합니다

참조번호:

연속용지:

국제사무국이 사용합니다

1

대리인 선임의 취소를 신청하는 자

해당 신청은 ☐ 출원인 / 권리자 ☐ 권리자의 대리인 이 신청합니다. 요청한 것입니다.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대로)

2

국제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

.....

.....

.....

.....

.....

.....

.....

.....

.....

관련된 각 국제출원에 대한 출원참조번호(예: 123456789, WIPO12345)와 관련된 각 국제등록에 대한 국제등록번호(예: DM/123456)를 기재하십시오. 복수의 참조 번호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십시오.

☐ 제공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연속용지를 사용하십시오

3

서명

성명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대로)

서명일자 (일/월/연도):.....

서명:

Text string 서명(예시 /홍길동/)을 권장합니다. 서명은 수기, 인쇄, 날인, 또는 기타 전자형식(이미지, 디지털 또는 컴퓨터 생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헤이그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국제출원 길라잡이 (5판)

발간일 : 2023년 10월

발간처 : 특허청 산업재산국제출원과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전 화 : 042-481-5209

ISBN : 979-11-6884-117-8 13500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